#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라도삼 조윤정 이정현

Seoul Cultural Diversity Agenda and Policy Direction



#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 │ 연구책임

라도삼 서울연구원 전략연구실 선임연구위원

#### 연구진

i 도시사하<sup>다</sup> 조윤정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정현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연구원

이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 요약

####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주요 추진 방향은 소수문화 보호·공존문화 육성·정책기반 구축

#### 문화다양성, 세계화 열풍에 따른 문화 종속화 우려로 탄생한 개념

문화다양성이란 각 집단의 문화가 고루 반영돼 사회의 문화가 구성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곧 문화구성에 있어 다양한 집단성과 계층성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각 집단의 문화가 왜곡됨이 없이 드러나 문화를 구성해야 한다는 문화의 주체성과 주권성을 말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개념이 현실로 등장한 것은 우루과이라운드를 비롯해 1990년대 초반부터 불기 시작한 세계화의 바람 때문이다. 세계화의 열풍으로 영화를 포함한 많은 문화상품들이 유통되기 시작하자, 유네스코를 중심으로 반발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무엇보다 문화의 고유성과 독창성을 중시한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발전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을 발표하였고, 이 논의를 바탕으로 2001년 11월 2일 제31차 정기총회에서 '세계문화다양성선언'(Universal Declaration Diversity)을 도출하는 한편, 2005년 10월 20일 제33차 정기총회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협약'(Conversational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을 이끌어냈다. 문화다양성을하나의 국제협약으로 도출한 것이다.

#### 한국, 2000년대 중반 이후 다문화 이슈 뜨면서 문화다양성 재부각

우리나라가 문화다양성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은 1998년 진행된 한미 FTA부터다.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 영화의 보호장치였던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축소 요구가 이어지면서, 이에 대한 반발 치원에서 문화다양성이 논의되었다. 그러나 우여곡절 끝에 한미 FTA가 체결되고, 스크린 쿼터제 또한 줄어든 상영일수로 인해 예술영화보다는 상업영화를 보호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으면서 문화다양성 논의는 수면 이래로 기라앉았다.

문화다양성이 새롭게 떠오르게 된 것은 다문화 이슈가 부상하면서부터다. 이주노동자를 중심으로 외국인 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문화다양성은 다문화를 이해하는 중심언어로 부상하였고, 그 결과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하기에 이른다. 유네스코가 국외로부터 오는 상업화의 물결에 대응하는 것이었다면, 우리나라는 우리 내부에 형성되는 '타자성'에 대한 논의로 문화다양성을 이슈화한 것이다. 이어 2014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선출되었다. 문화다양성에 관한 중심국으로 부상한 것이다.

#### 문화다양성 정책, 아직 체계 못 갖춰…서울시도 조례만 제정한 상태

그러나 아직 문화다양성 정책은 핵심기구인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할 정도로 체계를 갖추지 못한 상태다.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만 하고 몇 개의 사업, 예컨대무지개다리사업이나 문화다양성의 날과 같은 이벤트 사업만 추진하고 있을 뿐, 체계적인 정책들을 갖추고 시행하지는 못하고 있다.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다. 오히려 특별한 정책이 없던 서울시는 2017년 5월 18일 시의원 발의로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되었다. 정책에 대한 준비 없이 조례가 제정되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할 상황이 된 것이다.

#### 서울시 조례, 문화다양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 내포해 개정이 불가피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는 광주광역시가 제정한 문화다양성 조례의 내용을 대부분 반영하고 있다. 문제는 광주광역시 조례가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조항은 '문화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정의한 조례 제2조다. 조례 제2조는 문화다양성을 '문화적 관용'이라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는데, 이 정의는 '문화적 관용'의 범위를 '미풍양속 내로 제한한다'고 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을 위해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5명의 자문진과 함께 총 6차례에 걸친 워크숍을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문가

대상의 델파이 조사를 설계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과 '제정된 조례의 개정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 전문가들 "조례는 정의, 보호·증진, 위원회 구성 등의 순으로 문제"

델파이 조사는 총 56명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총 56명의 대상자 중 1차 조사에 응답한 대상자는 46명(85.1%)이었고, 2차 조사에는 1차에서 응답한 46명 중 43명(93.5%)이 참여했다.

우선,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해 대부분 조항에 대해선 문제가 없다고 답한 가운데, 제2조 '정의' 와 제12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등의 순으로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중 '문화적 관용'으로 대체되어 있는 제2조 '정의' 조항은 전면 개정해 문화다양성을 실제 존중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제12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교육대상 및 교육내용 측면에서 실질적인 시민을 대상으로 '타인(사회구성원 간)에 대한 존중'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교육' 등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는점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위원회〉에 대해서는 공무원 중심에서 벗어나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중심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점과 관련 전문가가 충분히 참여할 수 있는길이 열려야 한다는점이 지적되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에 대해선 '소수자의 권익보호', '자기표현권 보호',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집단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융합 도모', '예술창작과 생산·보급·향유 권리 보호' 등의 순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정책 대상은 '장애', '민족인종국가', '성·성적지향', '나이', '지역', '종교·사상', '비주류문화' 순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제기되었다. 이어 각 집단별로 정책방향을 물었는데, '장애', '민족인종국가', '종교·사상'의 영역에선 '소수문화접촉 기회 확대'가, '나이'에서는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이, '성·성적지향'에선 '시정 내 다양성 보호증진 반영'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어 문화다양성 정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물은 결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가장 우선될 필요가 있으며, 그다음은 '시민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과 '조례개정' 등의 순으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 문화다양성 정책비전은 '차이 차별않고 다름 존중 문화시민도시 서울'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을 설계했다. '차이에 차별하지 않고, 다름을 존중 하는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정책비전으로 삼았고, 목표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문화시민도시',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시민문화 구현'으로 설정하였다.

이어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으로 델파이 조사에서 나온 것처럼 '민족인종국가', '장애', '성성적지향', '종교사상', '나이', '지역' 등 7가지 영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고, '소수문화의 보호·육성'과 '공존의 시민문화 육성', '정책기반 구축' 등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계했다. 이 각각의 정책방향에 따라 주요과제를 설계하였고, 정책의 추진원칙으로 '당사자의 참여', '시민의견 수렴', '상호존중과 차이인정' 등을 설정했다. 각 정책방향에 따라 제시된 과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소수문화의 보호·육성은 △문화적 차별과 혐오의 금지, △소수문화의 보호·육성기반 확충, △소수문화 관련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 육성 등으로 과제를 설정했다. 각 집단이 차별받지 않고 자기 (표현권)을 보호받으며, 해당 분야의 예술가나 활동가를 육성하여 제대로 된 표현권을 발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게 첫 번째 정책방향의 취지다.

둘째,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은 △시민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문화다양성 이해촉진을 위한 접촉면 강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도시 간 교류확산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시민들이 문화다양성 교육을 받으며 여러 문화와 접촉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자는 것이고, 도시정부로서 서울시 특징을 살려 다양한 도시 간 교류를 통해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근본적으로 제고해보자는 것이 과제의 제안 배경이다.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기반 구축은 △조례 개정,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했다. 이는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것으로,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반드시 선결되어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 지금은 정책 출발단계…직접적인 사업보다 정책추진 기반 다질 필요

문화다양성 차원에서 서울시는 아직 본격적인 정책추진을 위한 제반 여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다. 이는 중앙정부도 마찬가지여서, 본격적인 정책추진을 위해서는 많은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보인다. 이때 중요한 것은 관련 시스템을 갖추고, 시민들의 이해를 구하는 것이다. 직접적인소수자 보호나 관련 예술가 육성보다는 조례를 개정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추진 기반을갖추는 한편, 시민대상의 교육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수 있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은 지금 당장 사업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긴 호흡을 갖고 미래를 준비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하겠다.



## 목차

01 연구개요	2
1_연구배경 및 목적	2
2_연구내용 및 방법	7
	10
02 문화다양성 발전과정과 개념	10
1_문화다양성 등장과 발전	10
2_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책영역	16
2_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책영역  03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실태  1_문화다양성 법체계 및 내용  2_정부의 사업추진 현황	26
1_문화다양성 법체계 및 내용	26
2_정부의 사업추진 현황	30
3_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42
04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 및 정책 발굴	52
1_전문가 포럼	52
2_델파이 조사 결과	64
05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98
1_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98
2_주요과제 및 추진방안	101
참고문헌	115
	110

부록	119
Abstract	148



### 丑

[표 2-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8대 원칙	12
[표 2-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차, 2차)	15
[표 2-3]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간문화주의	18
[표 2-4]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영역분류체계 변화	23
[표 3-1]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 문화다양성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27
[표 3-2] 문화다양성법 구성	27
[표 3-3]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이행 사항	29
[표 3-4]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정책 이행현황	30
[표 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2030> 체계도	33
[표 3-6] <문화비전2030> 중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대표과제	33
[표 3-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분류와 세부지표 항목	34
[표 3-8] 2016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사업 분류	기준 36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 변천과정(2007~2018)	37
[표 3-10] 2018년 문체부 문화다양성 세부사업별 예산	38
[표 3-11] 무지개다리사업 주요내용	39
[표 3-12] 무지개다리사업 연도별 변화	39
[표 3-13] 문화다양성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41
[표 3-14]「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중 시장의 책무와 정책 이행사항	44
[표 3-15]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 제정 유형 비교	45
[표 3-16]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조례 내용 비교	46

[丑	3-17] 2018년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기관 중 서울 소재 기관	47
[丑	3-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 부서(2016년 서울시 연차보고서 기준)	49
[丑	4-1] 전문가 자문위원 명단	52
[丑	4-2]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52
[丑	4-3] 최근 5년간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혐오 발언 심의 현황	62
[丑	4-4] 델파이 조사내용	65
[丑	4-5] 서울시 문화정책 중요도 우선순위	67
[丑	4-6] 긍정적/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69
[丑	4-7]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 관련 보완·수정 의견	73
[丑	4-8]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의 부적절 이유 및 보완·수정 의견	74
[丑	4-9]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관련 보완의견	80
[丑	4-10]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시 우선 참여 고려 대상(1+2순위)	80
[丑	4-1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1차 조사 결과)	87
[丑	4-12] 문화다양성 집단별 정책방안 우선순위	93
[丑	4-13]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추가된 항목별 정책방안 우선순위	94
[丑	5-1] 「문화기본법」상 문화권과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상 시민문화권	104
[丑	5-2] 제2조(정의) 개정안	111
[丑	5-3]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개정안	111
[丑	5-4] 제9조(전문위원) 개정안	112
[丑	5-5]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정안	112
[丑	5-6]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개정안	113

### 그림

[그림	1-1]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 증가 현황	2
[그림	1-2]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수 비율	3
[그림	1-3]	문화다양정 의식 수준	4
[그림	1-4]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비전체계도	6
[그림	2-1]	유럽 문화다양성 헌장의 범주	22
[그림	2-2]	독일 문화다양성 범주	22
[그림	3-1]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 및 정책과제	32
[그림	3-2]	독일 문화다양성 범주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 및 정책과제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결과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포스터	35
[그림	3-3]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포스터	40
[그림	3-4]	2018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성북문화재단(좌), 성동문화재단(우)	48
[그림	4-1]	하나아트센터(좌), 굿잡센터(우)	57
[그림	4-2]	부천 강남시장 마을축제	58
[그림	4-3]	올리볼리 그림동화	59
[그림	4-4]	응답자 특성 - 직업	66
[그림	4-5]	응답자 특성 - 활동분야	66
[그림	4-6]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절성	68
[그림	4-7]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구성의 적절성	70
[그림	4-8]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적절성 평가	71
[그림	4-9]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 수정 필요성(좌) 및 수정 시 가장 적절한 표현(우)	72
[그림	4-10	]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 관련 수정 의견의 적절성	74

[그림 4-11]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표현 수정 필요성(좌) 및 수정 시 가장 적절한 표현(우	<del>)</del> 75
[그림 4-12] 문화다양성 교육대상 추가의견의 적절성	77
[그림 4-13] 문화다양성 교육내용 관련 제안 의견의 적절성	78
[그림 4-14]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교육내용 관련 수정제안 의견에 대한 판단	78
[그림 4-15] 가장 적절한 실태조사 주기	81
[그림 4-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내용 중 제안의견의 적절성	82
[그림 4-17]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84
[그림 4-18] 문화다양성 정책 중요성 순위의 적절성	84
[그림 4-19] 문화다양성 정책 시급성 순위의 적절성	84
[그림 4-20] 문화다양성 법적 정의의 서울시 적용에 대한 판단	86
[그림 4-21]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그림 4-22]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순위의 적절성 [그림 4-23]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시급성 순위의 적절성 [그림 4-24]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대한 항목 수정 의견의 적절성 판단	86
[그림 4-22]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순위의 적절성	88
[그림 4-23]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시급성 순위의 적절성	88
[그림 4-24]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대한 항목 수정 의견의 적절성 판단	90
[그림 4-25]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중 '신체능력(장애)' 표현 변경 시 가장 적절한 표현	₹ 91
[그림 4-26]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중 '비주류 예술' 표현 변경 시 가장 적절한 표현	91
[그림 4-27]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의 중요성(좌) 및 시급성(우)	92
[그림 4-28]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시행 우선순위	95
[그림 5-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전 체계도	100
[그림 5-2] 서울시 공공문서 작성 시 사전 검토항목	102
[그림 5-3] 서울시민들이 인식하는 차별요인 및 외국인에 대한 태도	107
[그림 5-4] 대림동 한 달 살기 기사(시사인)	109

# 01

# 연구개요

1\_연구배경 및 목적 2\_연구내용 및 방법

#### 01 연구개요

#### 1\_연구배경 및 목적

1) 인적 구성의 다원화와 삶의 방식 다양화로 인한 사회적 다양성 증대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 성(性)을 포함한 개인의 다양한 정체(正體) 표출, 장애비장애, 경제적 격차, 정치적 의제를 둘러싼 갈등 등 지금 우리 사회는 걷잡을 수 없는 다양성 사회로 나아가고 있다.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인만 해도 공식적으로 40만 명이 넘는다. 전체 인구의 4.1%를 차지하는 수치다. 구로, 금천, 영등포 등 서울 서남권은 이미 주민비율 중 외국인이 10%를 넘고 있다. 들리는 얘기론 늘어나는 이주민에 거주민이 이탈하는 '엑소더스' 현상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단일민족하의 단일문화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다양한 인구구성과 다양성의 문화가 지배하는 사회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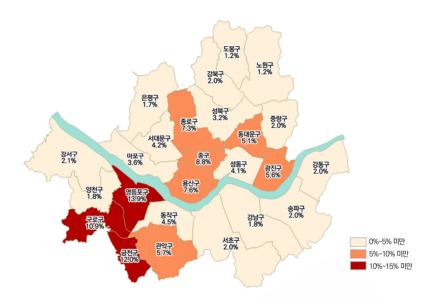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2007~2016)

주1: %는 해당연도 서울시 전체인구 수 대비 비율

주2: 외국인주민=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재외국인근로자+결혼이민자+유학생+외국국적동포+기타외국인)+ 한국국적을 취득한 재(혼인귀화자+기타사유)+외국인주민자녀

[그림 1-1] 서울시 외국인주민 수 증가 현황

<sup>1)</sup> 세계일보, 2017.11.3일자, "토박이 학생들 떠난 동네, 게토화 우려...'갈라지는 교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01005297(마지막 검색일 2018.8.9.)



자료: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외국인주민 현황(2016)

[그림 1-2] 서울시 자치구별 외국인주민 수 비율

#### 2) 다양해지는 문화, 낮은 이해도, 격해지는 사회갈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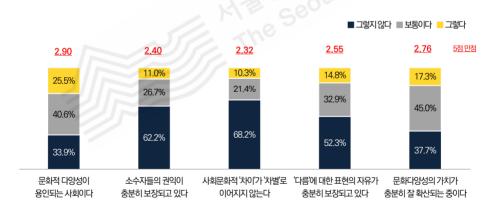
사회 구성이 다양해지고 욕망의 표출이 다양해지면 사회를 구성하는 정체 또한 다양해진다. 단일한 문화지형이 여러 집단으로 분화되고, 각 집단은 자기를 표출하며, 때론 지배적인 문화와 갈등하고 대립하기도 한다. 이때 지배적인 문화는 새로운 문화와 충돌하기도하며, 자신의 문화 체계 내로 편입시키기도 하고 배착하기도 한다.

문화다양성이란 이런 사회분화에 따라 달라지는 문화구성 원리를 말한다. 하나의 단일체가 아니라 여러 집단과 지역, 또는 다양한 관계망에서 형성되는 여러 층위의 문화가 공존되도록 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이다. 즉, 어느 특정 집단이나 지역의 문화가 전체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나 지역이 자기 문화를 표출하고, 그럼으로써 다양한 문화가공존토록 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를 구성하는 '문화민주주의'의 기본원리라 할 수 있다.<sup>2)</sup>

<sup>2)</sup> 문화를 구성하는 두 원리는 '문화의 민주화'와 '문화민주주의'다. '문화의 민주화'란 모든 사람들에 의해 문화가 공유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곧 누구도 소외됨이 없이 동등한 문화를 누리도록 하는 것이 '문화의 민주화'다. '문화민주주의'는 그 문화가

문화다양성은 쉬운 문제로 보이지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특히 '단일민족'을 우월적 가치로 제시하고, '국론통일'을 외쳤던 우리에게 있어 문화다양성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다. 우리 내에 다른 문화가 있다는 것 자체가 인정하기 어려운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주민이나 성소수자처럼 그것이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현재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사실이존재할 경우 그것은 논란에 앞서 배척하거나 사회적으로 배제하여 도태시킬 대상이 된다. 그만큼 우리는 우리 내부의 다름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실제로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펴낸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에 따르면, 이주민 중 63.2%가 혐오 피해를 경험했다고 말한다. 성소수자는 이보다 심해 92.2%가 혐오를 경험했고, 장애인도 87.5%가 혐오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3) 2017년 문화체육관광부가 발간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문화체육관광부, 2017)에 따르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62.2%),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고 있으며'(68.2%), '다름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52.3%)란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사회 곳곳에 '차이에 따른 차별'이 만연해 있는 것이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97.

[그림 1-3] 문화다양성 의식 수준

구성되는 원리를 말한다. 어떤 집단의 문화도 소외됨이 없이 당당히 사회문화를 구성토록 하는 것이 문화민주주의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민주주의 구현의 기반이라 할 수 있다.

<sup>3)</sup> 한국일보, 2017.2.19일자, "성소수자·여성이 가장 큰 혐오 피해 대상" http://www.hankookilbo.com/v/32cc5a0fffc94dee80b6fbfe36adfdeb(검색일 2018.8.9) 혐오표현 실태조사는 15~59세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1,014명을 온라인 설문 및 면접 조사한 결과임

이런 현실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사회 구성의 다양성이 커지는 만큼 문화의 다양성이 확대되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다른 집단과 공존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로부터 새로운 문화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문화다양성은 다문화 사회를 살아가는 새로운 정책철학으로 여러 문화가 융합하여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것이다. 소수문화의 보호에서부터 사회 문화를 구성하는 기본원리로서다양한 문화의 융합과 새로운 문화창출을 포함한다.

#### 2) 치유를 위한 노력, 그러나 아직은 제한적인 현재 상태

다양성 사회로 변화하고 있는 지금, 서울시 또한 이에 대한 대응을 늦추지 않고 있다. 2016년 서울시가 수립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즉 서울시 문화정책의 기본계획을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을 핵심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문화다양성은 '공동체 차원'의 과제에 포함되어 있다. '함께 나누는 공동체'와 '포용적 공동체'를 목표로 구성된 '공동체 차원'은 문화공동체육성과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은 이 두번째 과제, 즉 포용적 공동체를 목표로 한 '문화다양성의 보호·증진'이다.

주요한 정책과제로 제시된 것은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보호·육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종합계획 수립,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기반 조성, △문화다양성 예술활동 보호·육성 등이다. 4) 또한 포용적 공동체 구성을 위해 '소통과 공감의 공동체 문화 조성'을 내세우며 △권역별 예술치유센터 설치·운영, △다양한 유형의 문화치유 프로그램의 운영, △시민청 확대 조성으로 시민소통 및 공감능력 확대, △공동체 문화를 해결하는 공동체 예술 확대, △범죄예방, 인지건강 디자인 등 사회적 디자인 확대 등을 주요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중장기적 차원에서 다양성과 사회분화에 대응한 정책과제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sup>4)</sup> 서울시, 201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pp.53~62



자료: 2016년 6월 28일 서울시 기자설명회 자료,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그림 1-4]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비전체계도

#### 4) 갑자기 제정된 문화다양성 조례, 정책수행을 위한 기초적 기반 필요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 발표된 이후, 2017년 5월 18일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다. 제정된 조례에는 여러 정책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2년마다 문화다양성 실태를 조사해야 하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활동 지원과, △교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등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문화다양 성위원회를 설치(시장 소속)해야 하고,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폭 넓게 참여하는 지역협력체를 운영하며,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권고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는 표창을 해야 한다. 문화다양성 구현을 위한 다양한 사업과 정책이 제시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정책 추진체계는 형성되어 있지 않다.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위원회나 지역혐의체도 구성되어 있지 않으며, 실태조사나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

다. 기본적인 조례만 있을 뿐 실행을 위한 체계는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다.

본 연구는 이처럼 아직 구체적인 비전이나 목표. 방향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문화다양 성 정책의 기본체계를 설계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즉. 문화다양성의 기본원리 속에서 서울시가 취해야 할 정책방향을 살펴보고. 그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문화다양성의 개념 속에서 현 조례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주요한 정책방향과 시업을 제시하며, 각 사업의 우선슈위를 부석하여 필요한 정책슈위와 전략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즉.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서울 시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개념부터 조례의 현실, 그리고 문화다양성 사업추진을 위한 정책체계 등을 구상하고자 한다 를 여구·

#### 2 연구내용 및 방법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였다.

첫째,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범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정책적으로 문화다양성은 1990년대 우루과이라운드테이블과 연이은 유네스코의 정책으로 부상한다. 소수 선진국의 문화가 일방적으로 유통되는 현상을 막고자 유네스코는 문화다양성을 핵심 용어로 하여 각국의 문화(자원, 산업 등)를 보전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각국의 문화를 보호하고 보전 하기 위한 논리로 문화다양성이 활용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좀 다르다. 한미무역자유협정(FTA)의 대응차원에서 유네스코와 마찬 가지로 영화 및 문화시장을 보호하려는 노력으로 문화다양성이 논의되었으나. 본격적으 로 정책화된 것은 이주노동자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다문화주의와 우리 내부에서의 갈 등 때문이다. 곧 이주민이나 성소수자와 같은 우리 내부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전략으로서 문화다양성이 출현한 것이다. 그런 만큼 세계와 우리 사회는 다르다. 그 차이로부터 우리 의 문화다양성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를 살펴보고, 우리에게 필요한 문화다양성의 개념 과 정책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둘째, 문화다양성 구현을 목표로 현재 구성된 여러 법제도와 사업 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현재 문화다양성 증진과 관련해서는 <문화다양성법>이 제정(2014)되어 있고, 서울시 또한 2017년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더불어 2000년대 중반부터 다양한 사업을 펼쳐 오고 있다. 그런 점에서 현재 펼쳐지고 있는 문화다양성 사업을 살펴보고, 향후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셋째, 문화다양성 정책과 사업방향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총 6회에 걸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였고,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전문가 포럼은 이주민 인권관련 전문가, 장애인(예술)관련 전문가, 문화정책 전문가, 서울시 및 자치구 문화다양성 정책 담당자 등 총 6명의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문화다양성 개념부터 주요 정책방향까지 집중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델파이 조사는 주요 정책 방향을 찾고자 개괄적인 방향을 묻는 1차 조사와 조사된 결과의 적정성을 묻는 2차 조사로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연구진은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전과 목표, 주요 방향, 전략, 추진체계 등을 설계하고자 하였다. 이상이 본 연구진이 접근한 전략이다.5)

<sup>5)</sup> 본 연구는 실태조사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우선은 그 범주와 영역을 설정하고 정책방안부터 마련한 뒤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했다. 만약 그렇지 않을 경우 정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의존해야 하며, 그 경우 중복조사에 따른 불필요한 자원낭비만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서울시의 여건에 맞는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과 비전, 목표를 설정하고자 노력했으며, 이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을 미리 밝힌다.

# 02

# 문화다양성 발전과정과 개념

- 1\_문화다양성 등장과 발전
- 2\_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책영역

#### 02 문화다양성 발전과정과 개념

#### 1\_문화다양성 등장과 발전

- 1) 세계 문화다양성 등장과 발전
- (1) 문화다양성은 차이에 대한 차별과 배제를 근거로 발전한 개념

문화다양성은 반이성적 문명의 전시장이었던 제2차 세계대전으로부터 출발한 개념이다. 유태인 학살에서 보듯, '합리성'이라는 허울에 기초하여 민족인종, 성별, 장애 등의 '차이'를 근거로 삼아 집단 학살에까지 이르게 했던 제2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유네스코는 1948년 세계인권선언을 발표하였다. 이 이후 1965년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ICESCR, 1965)이 발표되었으며, 1990년대에 이르러 「소수자 권리에 관한 선언」 (1992) 등이 발표되었다.

#### (2) 문화다양성이 현재화된 것은 세계화에 대한 문화적 종속화 우려 때문

그러나 문화다양성이 현실 의제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이후 세계화와 이를 이끈 자유 무역 때문이다. 특히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정에서 문화(부문)가 주요한 시장 개방의 대상이 되면서 프랑스를 비롯한 유럽과 제3세계 나라들이 반발하였고, 이를 의제화하기 위한 용어로서 '문화다양성'이 호명된다. 당시 유네스코가 펼친 논리는 "문화란 시공간에 여러 형태로 나타나는 것으로, (문화)다양성은 인류를 구성하는 집단과 사회의 정체성과 독창성을 구현하는 것이다. 마치 생태다양성이 필요한 것처럼 문화다양성은 문화교류혁신창조성의 근원으로서 필요하며, 인류의 공동 유산으로서 현재와 미래세대를 위한 혜택으로 인식하고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유네스코, 2001).

이 입장에서 유네스코는 1995년 <세계발전위원회>를 통해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Our Creative Diversity)을 발표한다. 「우리의 창조적 다양성」은 '문화다양성을 국가, 지역.

<sup>6)</sup> 유네스코 인권선언(1948)은 개인의 문화적 권리를 인권의 중요한 요소로 포함시켰다. 모든 사람이 문화생활 참여권과 향유권을 가지며, 자신의 문화적 창작물에서 발생하는 이익을 보호받아야 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류 사회 발전의 핵심 항목으로 보고, 생물다양성처럼 문화의 종 다양성을 위해 반드시 보전되어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리고 이 논의는 2001년 11월 2일 유네스코 제31회 정기 총회에서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Cultural Diversity, 2001) 으로 구체화된다.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2001)은 좀 더 구체적인 실행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사전 정지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행동이다. 그런 만큼 선언에는 다양한 행동양식과 지침이 담겨져 있다. 우선 「세계 문화다양성 선언」은 "문화다양성이 인류의 공동유산이며 개별국가의 총체적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고, "표현의 자유, 매체다원주의, 다언어주의, 디지털 형식을 포함한 예술·과학·지식 및 표현과 배포를 위한 수단에 동등하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함을 명시하였다." 또한 "문화상품이 다른 상품들과 동일하게 취급되지 말아야 하며, 사상과 작품의 자유로운 교류를 보장하는 동시에 지역과 세계 차원에서 다양한 문화가생산배포될 수 있도록 각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강제하고 적절한 수단을 통해 문화다양성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기자국 문화 보호를 넘어 세계가 문화다양성을 지키는 데 함께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이 선언으로 인해 세계 여러 나라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에 나서게 된다. 그리고 이 흐름을 바탕으로 유네스코는 2005년 10월 20일, 제33차 정기총회를 통해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Convention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Diversity of Cultural Expressions, 이하 문화다양성 협약)을 이끌어 낸다. 선언을 넘어 각국이 실질적으로 참여하여 문화다양성을 보호·증진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낸 것이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신자유주의 형태의 국제무역 질서가 형성되는 현실에서 각국이 자국 문화를 보호하고, 각 개인의 문화보호를 위해 노력해야 할 실천사항들을 담고 있다(한건 수, 2017). 이 사항은 7대 목표, 8대 원칙으로 제시된다. 7대 목표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자유롭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여건 창출, △상호작용을 위한 문화 상호주의 강화. △이를 위한 국가적. 국제적 활동지원. △(특히) 문화가 경제적 서비스재

<sup>7)</sup> 이상 앞의 선언 제6조, 제8조, 제9조 요약

화로 취급되지 않도록 규제, △각국의 주권 확인, △국제적 연대와 협력의 강화 등이다. 이를 실행하는 8대 원칙은 [표 2-1]과 같이 ①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의 원칙, ②주권 원칙, ③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 인정과 존중 원칙, ④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⑤개발의 경제적, 문화적 측면의 상호 보완성 원칙, ⑥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⑦공평한 접근 원칙, ⑧개방과 균형 원칙 등이다.

이 협약은 2007년 6월 30개 이상의 회원국 비준을 거쳐 국제법적으로 유효한 문서가 되었으며, 2007년 10월 발표되었다.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1일 비준서를 기탁하여 110번째 비준국이 되었고,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으로 선정되었다.

[표 2-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8대 원칙

 구분	내용	다양성의 요소
1. 인권과 기본적 자유 존중의 원칙	문화다양성은 문화적 표현을 선택하는 개인들의 능력뿐만 아니라 인권 및 표현, 정보통신의 자유 등 기본적 자유가 보장될 때 비로소 보호되고 증진될 수 있다. 「세계인권선언」에 규정되어 있거나 국제법에 의하여 보장되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를침해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목적으로 이 협약의 규정을 원용할 수 없다.	개인의 '평등' 요소
2. 주권 원칙	국가는 「국제연합헌장」과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자국 영토 내에 서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조치와 정책을 채택하는 주권적 권리를 가진다.	국가별 '평등' 요소
3.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 성 인정과 존중 원칙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은 소수자와 토착민의 문화를 포함한 모든 문화에 대한 동등한 존엄성과 존중에 대한 인정을 전제로 한다.	소수집단의 평등 보장
4. 국제적 연대와 협력 원칙	국제적 협력과 연대는 국가, 특히 개발도상국으로 하여금 지방, 국가, 국제적 차원에서 초기단계에 있거나 확립되어 있는 문화 산업을 포함한 문화적 표현의 수단 마련과 강화를 목표로 한다.	상호의존적 요소
5. 개발의 경제 적, 문화적 측면 의 상호 보완성 원칙	문화는 개발의 원천이므로 개발의 문화적 측면은 경제적 측면 만큼 중요하며, 개인과 국민들은 이에 참여하고 향유할 수 있는 기본적 권리를 갖는다.	상호의존적 요소
6. 지속가능한 개발 원칙	문화다양성은 개인과 사회의 귀중한 자산이다. 문화다양성의 보호, 증진 및 유지는 현재와 미래서대의 이익을 위한 지속가능 한 개발의 필수 요건이다.	생물 종 다양성

구분	내용	다양성의 요소
7. 공평한 접근 원칙	전 세계의 풍부하고 다양한 문화적 표현에 대한 공평한 접근과 그 표현 및 보급 수단에 대한 문화의 접근은 문화다양성을 진흥 하고 상호이해를 장려하는 중요한 요소들이다.	평등, 상호의 <del>존</del> 적 요소
8. 개방과 균형 원칙	국가가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채택할 때, 세계의 다른 문화에 대한 개방성을 증진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강구하며, 그러한 조치는 이 협약이 추구하는 목표의 달성에 기여하도록 한다.	평등, 상호의 <del>존</del> 적 요소

[표 2-1 계속]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8대 원칙

자료: 박애경, 2011,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재현 의미: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29-30; 김규원, 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pp.89-90.

#### 2) 국내 문화다양성 도입과 현재

#### (1) '스크린 쿼터제 축소 요구'에 대항한 문화산업 보호논리에서 출발

국내 문화다양성 논의 또한 세계와 흐름을 같이 한다. 다만, 우루과이라운드 협상이 아닌 1998년 한미투자협상(FTA)에서 구체적인 요구로 등장하기 시작한다.

한미투자협상에서 미국이 우리에게 요구했던 것은 '스크린 쿼터제' 축소였다.<sup>8)</sup> 당시 영화 산업을 보호하고자 했던 영화계와 시민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차원에서 문화산업은 국제 무역대상에서 '예외가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폈다.

사실 스크린 쿼터제는 해외에서도 그 가치를 인정받는 제도였다. 같은 시기 프랑스 총리였던 리오넬 조스팽(Lionel Jospin, 1997~2002)은 다자간투자협정(MAI: Multilateral Agreement of Investment)에서 문화부문이 제외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스크린 쿼터제'를 그 사례로 들었다. 9 또한 2006년 열린 제59회 칸 영화제에서는 이사회 만장일치로 우

<sup>8)</sup> 스크린 쿼터제는 기본적으로 외국영화에 대한 시장잠식을 막기 위한 것으로, 연간 상영일수의 국산영화 의무상영제라고도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연간 6편 이상의 한국 영화 상영과 연간 90일 이상의 상영일 수 준수를 내세웠고, 1970년 연간 3편 이상, 총 상영일수 30일 이상을 규정하였으며, 1985년 연간 상영일수 2/5 이상과 인구 30만 이상의 시 지역은 한국영화와 외국영화를 교호상영할 것을 의무화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구체적인 스크린 쿼터제를 시행하게 된다.

<sup>9)</sup> 한국경제, 2002.2.12일자, "스크리쿼터 성공사례 프랑스 의회에서 발표"

리나라의 스크린 쿼터 축소 저지 투쟁을 공식적으로 지지하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10

그러나 이 운동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 한국과 미국의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스크린 쿼터는 146일에서 73일로 축소되었고, 자연스레 운동 동력은 상실됐다. 특히 우리나라 내에 존재하는 강자와 약자 관계, 즉 상업적인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 사이의 갈등이 중첩되어 일어나면서(한건수, 2015) 스크린 쿼터제는 우리 문화의 다양성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sup>11)</sup> 그 결과 문화다양성 논리가 체계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채 서서히 소멸되는 현상을 겪게 된다.

#### (2) 다문화정책의 확산과 문화다양성의 재부상

우리 사회에서 문화다양성이 다시 부상한 것은 다문화 사회 이슈가 강해지면서부터다(한건 수, 2014). 2000년대 이후 외국인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사회변화가 체감되기 시작됐고, 2006년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 대책'이 발표되면서 다문화정책이 본격화된다. 이후 2007년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법무부 소관)과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여성 가족부 소관) 등이 제정되고,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사회에 살 수 있도록 하는 여러 법적요건이 마련되면서 문화다양성 논의가 형성되기 위한 사회적 기반이 마련되기 시작한다.

최초의 출발은 다문화의 인정과 수용의 필요성이다. 늘어나는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 민 앞에서 우리 사회는 사회통합의 필요성을 절감했고, 그 결과 이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 정책을 펼치게 된다. 2008년도부터 수립해 추진된 「다문화가족정책기본계획」이 그 핵심이다. 동 계획은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1차, 2010~2012)과 '활기찬 다문화 가족, 함께하는 사회'(2차, 2013~2017)를 목표로 결혼이주여성 등 다문화가족을 지원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수립되었다. 문화다양성의 보전 또는 증진보다는 다문화주의를 인정하고 이를 수용하는 한편, 이들이 우리 사회에 쉽게 적응해 살아가도록 지원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한국예술위원회, 2014).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2021232008, (2017.7.31 접속)

<sup>10)</sup> 씨네21, 2006.5.22일자, "칸 영화제, 한국 스크린쿼터 공식적지지 발표"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8640(2017.7.31 접속)

<sup>11)</sup> 스크린 쿼터제 축소에 따라 한국영화 상영일수가 줄어들며 소수영화나 독립영화 등이 설 자리가 더 줄어들었다. 그 결과 소수영화나 독립영화 관계자들 속에서 스크린 쿼터제에 대한 불만이 터져 나오기 시작한다.

[표 2-2]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1차, 2차)

구분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2013~2017)
비전	열린 다문화사회로 성숙한 세계국가 구현	활기찬 다문화가족, 함께하는 사회
목표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정 착 지원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지원 강화 및 글로 벌 인재 육성	사회발전 동력으로서의 다문화가족 역량 강화 다양성이 존중되는 다문화사회 구현
정책 과제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추진체계 정비 국제결혼중개 관리 및 입국전 검증 시스템 강화 결혼이민자 정착지원 및 자립역량 강화 다문화가족 자녀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이해 제고	다양한 문화가 있는 다문화가족 구현 다문화가족 자녀의 성장과 발달지원 안정적인 가족생활 기반 구축 결혼이민자 사회경제적 진출확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수용성 제고 정책추진체계 정비

자료: 여성가족부,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

문화다양성이 본격적으로 논의된 것은 2010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을 비준하고 나서부터다. 협약 비준과 더불어 우리 사회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실천적 고민을 시작하게 됐고, 그 결과 2014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그러나 아직 세부적인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2017년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아시아태평양 그룹 위원국에 선출될 정도로 국가의 위상은 높였으나, 정부는 아직 「문화다양성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못한 상태다. 또한 <문화다양성위원회>와 같은 법정기구도 설치하지 못했다. [2] 아직은 이렇다 할 내실을 갖추고 있지 못한 상태인 것이다. 그런 점에서 아직 우리 사회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초입단계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sup>12)</sup> 법 제4조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법 제7조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위원화를 구성해 △기본계획수립 및 변경 사항,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연차보고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관계부처간 협조 및 업무조정에 관한 사항, △문화다양성 보호·증진을 위한 국가 간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운영해야 한다. 그러나현재 기본계획도 수립되어 있지 않고, 문화다양성위원회도 구성되어 있지 않다.

#### 2\_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책영역

#### 1) 문화다양성 개념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은 세계화의 진전과 더불어 시작된 자유무역주의에 대한 대응과 노동시장 이전에 따른 이주민의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발전하였다. 전자는 문화의 상품화 측면에서 자유무역주의에 대응하여 자국의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하였고, 후자는 사회의 내부에 성장하는 새로운 이질 집단의 형성과 이들의 문화를 동등한 사회문화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발전되었다. 소수문화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둘은 같다. 그러나 세계화에 대응해 자문화를 보호한다는 논리와 타자성의 증대에 새로운 문화를 받아들여야 하는 문제는 다르다. 전자의 문제는 '보호', 후자의 문제는 '공존'에 대한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문화다양성이란 단순히 소수문화 보호가 아니라는 점이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선언」에서 지적하듯, 문화는 '사회와 사회구성원이 지닌 고유한 정신적·물질적·지적·감성적 특성의 총체로, 예술 및 문학 형식뿐 아니라 생활양식, 함께 사는 방식, 가치체계, 전통과 신념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는 그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성원의 가치체계를 담는 것이어야 한다. 즉 어떠한 계층이나 집단의 문화도 왜곡됨이 없이 공존하여 당당히 한 사회의 문화를 구성해야 한다는 게 유네스코에서 정의한 '문화'의 개념이다.

그런 측면에서 문화다양성은 문화가 가진 본래적 속성에 기초해 문화를 구성하는 전략이다. 즉 그것이 소수문화이거나 사회로부터 단절 혹은 분리된 문화라 하더라도 사회의 문화를 구성하는 '동등한' 주체가 되어야 하며, 그 속에서 문화가 구성되어야함을 말한다. 곧 문화구성의 실천전략이 문화다양성인 것이다.

이를 구체화한 것이 다양성의 개념이다. 다양성이란 라틴어의 '디베르수스'(diversus)로부터 나온 말이다. 디베르수스는 여러 갈래를 의미한다. 일치되지 않고 대립하는 것이다.13)

<sup>13)</sup> 디베르수스는 여러 갈래를 의미하며, 일치하지 않고 대립한다는 의미를 내포한다. 프랑수아 드 베르나르, "'문화다양성' 개념의 재정립을 위하여", 「세계화시대의 문화논리」, 김창민 외 역, 한울, 2005;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그처럼 문화다양성은 처음부터 '조화'나 '포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서로 다른 것들이 충돌하거나 놓여 있는 '상태'를 말한다. 때문에 문화다양성은 포용이나 조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 다양한 문화체계가 충돌하며 있는 것을 말한다. <sup>14)</sup> 그 상태에서 새로운 문화가 구성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 개념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선 유사한 개념인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나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 상호문화주의(inter-culturalism)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문화다원주의(cultural pluralism)란 1970년대까지 펼쳐진 문화동화주의에 대항하여 나온 운동이다. 한마디로 말해 소수문화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문화란 각자의 환경 조건에서 형성된 것으로 우(優)와 열(劣)을 가릴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문화가 동 등하게 취급받아야 한다'는 게 문화다원주의다.

반면 다문화주의(multi-culturalism)는 단일인종민족 체계에서 다른 인종이나 민족이 유입되었을 때 발생하는 문제다. 타 인종이나 민족의 유입으로 오는 갈등과 대립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주요 관점이다. 때문에 이들은 그 어느 것보다 사회통합을 중시한다. 즉이질적인 문화가 서로 갈등하지 않고 사회 속에 통합되도록 하는 것이 다문화주의다.

다른 한편 상호문화주의 또는 간 문화주의(inter-culturalism)는 다문화주의가 갖고 있는 한계를 극복하고 포용사회로 진화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방식을 제안한다. 그것은 교육과 학습, 상호 간 체험의 강화다. 즉, 타 문화에 대한 체계적 이해를 통해 사회통합을 추진해 나가자는 게 간문화주의, 상호문화주의다.

p.45. 재인용

<sup>14)</sup> 같은 이유로 프랑스의 문화인류학자 레비스트로스는 1952년 유네스코를 위해 쓴 「종족과 역사」에서 "보존해야 할 것은 다양성 그 자체이지 각 시대가 다양성에 덧씌운 외형이나 가시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유네스코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증진」, p.3.

[표 2-3] 문화다원주의, 다문화주의, 간문화주의

구분	주요내용	핵심가치
문화다원주의	모든 문화는 생존을 위해 각각의 환경 조건에서 유효한 적응 방법으로 발달해 온 것으로 이해 우열이 없고 고유의 가치를 대등하게 지니고 있음을 인 정하며 존중하는 개념	각 문화의 고유한 가치 인정 과 존중
<u> </u>	한 사회 내 복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 우열에 의해 열등한 것이 부정되는 것이 아니라 열등하 고 소수적인 문화를 보호해야 한다는 시각	기회와 결과의 평등을 통한 소수민족(소수집단)의 소외 방지
상호문화주의	문화들 사이에서의 상호작용을 중시 상이한 민족 집단과 문화 사이에서의 상호 작용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며, 통합을 증진하자는 입장	문화들 사이의 상호작용 및 이해와 존중, 통합 증진을 위 한 실천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4, 「일반인을 위한 문화다양성 교육 가이드북, pp.8-11.

이에 반해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집단의 문화가 존재하는 그 상태를 의미한다. 하나의 사회가 하나의 문화가 아닌 여러 문화체계로 구성되어 있음을 이야기하며 보호·보전부터 통합의 필요성까지를 말한다. 때문에 문화구성의 원리로부터 문화다원주의나 다문화주의, 간문화주의 등으로 이어지는 보호와 공존, 포용의 전략을 포괄하는 것이 문화다양성이라볼 수 있다.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가치가 충돌하는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하며, 그로부터 사회는 선택적인 행동을 실천한다.

#### 2) 정책 목표와 영역, 대상 범주

#### (1) 정책 목표와 실행 전략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은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상태를 말한다. 이 말은 한 사회 내에 다양한 문화체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수용해야 함을 말하는 것인데, 이를 위해서는 각 집단이 지배문화나 주류문화에 관계없이 자신을 표출할 수 있어야 함을 의미한다. 곧 어떠한 장애 없이 자신을 드러낼 수 있어야만 문화다양성이 구현된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는 이 점을 중시한다. 제4조는 문화다양성을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이라 규정하고,<sup>15)</sup> 문화다양성은 "인류유산

<sup>15)</sup>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표현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이러한 표현들은 집단과 사회의 내부에서 그리고

이 전승되는 다양한 방식에서뿐만 아니라 사용되는 방법과 기술에 관계없이 다양한 양식의 예술적 창조, 생산, 보급, 배포 및 향유 등에서도 명확히 나타난다"고 규정한다. 곧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이를 전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이 문화다양성의 조건이라는 것이다.

때문에 문화다양성 구현에 있어 표현권(전달권을 포함하여)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가 된다. 유네스코 협약에 기초하여 만들어진 우리나라 「문화다양성법」 제2조 정의는 이를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서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으로,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16 즉, 모든 집단이 자기를 표현하고 전달하는 데 있어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이다.

따라서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와 실행전략을 구성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은 제 집단이 자신을 표현하고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어떻게 갖게 할 것이냐이다. 자기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표출능력뿐만 아니라 예술적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이에는 창작과 생산, 보급, 유통, 향유의 권리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를 전달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매체 및 채널 접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곧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능력과 전달의 가능성을 포함해야만 문화다양성이 구현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명확한 정책목표와 실행전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 정책 영역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의 정책목표는 각 집단이 왜곡됨이 없이 자기를 표출하고 자신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우선, 각 집단이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적 표현권'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 이는

집단과 사회 사이에서 전승된다(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 정의).

<sup>16)</sup> 문화다양성법 제2조(정의)의 1항

문화다양성 구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략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어떤 경우라도 특정 집단이 자기표현에 저해를 받지 않도록 해야 하며, 좀 더 나아가 그들 스스로 자기 표현권을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표현)기술이 부족한 집단에게는 표현 능력 제고를 위해 예술적 지원을 포함하여 다양한 자원을 전개할 필요가 있으며, 표현할 충분한 기회를 갖지 못한 집단에게는 문화시설을 포함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권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스크린 쿼터제'의 도입, 공연장과 전시장의 확충 등과 같은 발표시설의 확대 등이 시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표현능력이나 전달능력이 있는 사람들, 예컨대 예술가나 디자이너, 창조적 역량을 갖춘 사람, 채널 운영자 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문화다양성을 구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지원함으로써 그들 스스로 대변자가 되거나 지원자가 되어 활동하도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7조 '문화적 표현의 증진을 위한 조치'는 "각 개인이나 사회집단들이 그들만의 문화적 표현을 창조, 생산, 전파, 유통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촉진하여야 함과 더불어 예술가 및 그 밖의 창작과정에 참여하는 사람들, 문화공동체와 그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기관들은 문화적 표현들의 다양성을 성장시키는 데 핵심적 역할을 인지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즉 문화적 표현을 돕는 예술 가나 전파자들이 필요하며, 이를 육성하고 지원하는 게 중요한 전략이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은 '실행 모니터링 분야'로 △공공미디어 접근성, △디지털환경, △시민사회와 협력, △예술가와 문화전문가의 이동성 등을 중요한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다(최영화, 2017에서 재인용).

셋째, 사회의 제 집단들이 타 집단의 문화를 존중해주는 문화를 갖는 것도 중요한 전략 중 하나다. 곧 타자성을 존중하고 그들이 공존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문화를 갖자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11조 '시민사회 참여'는 "문화다양성을 보호· 증진하는 데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근본적임을 인식하고 협약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있어 시민사회의 역할이 절대적이라는 얘기다. 우리나라 또한 「문화다양성법」 제4조 '사회 구성원의 권리와 책무'를 통해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만큼 다양성을 이해하고 인정하는 문화를 갖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주목해야 할 부문은 '인권'과 '강요', '혐오'에 관한 문제다. 앞의 것이 주로 문화적 표현과 관계된 것이었다면, 마지막 항목은 그 문화적 표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타인의 권리에 대한 문제다.

문화다양성에 있어선 특히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나 자기의 문화를 강요하는 행위, 타 문화에 대한 혐오를 표현하는 행위 등을 억제하고 있다.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제4조는 "누구도 국제법으로 보장하는 인권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데 문화다양성을 이용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문화다양성이 또 다른 권리 침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는 것이다. 이 점에서 문화다양성은 당사자의 권리만큼이나 타인의 권리도 존중하고 있다.

#### (3) 정책대상과 범주

정책 수행에 있어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누구를 다양성 집단으로 볼 것이냐 하는 문제다. 사회가 주류와 비주류, 우월적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으로 구성된 만큼, 문화다양성은 그 영역을 설정하는 데부터 민감한 의제가 된다.

문화다양성의 정책대상을 설정함에 있어 유럽의 <문화다양성 헌장>은 많은 시사점을 준다. 헌장은 각 개인을 성별, 나이, 성적지향, 민족인종, 장애, 종교 등으로 분류하여 집단화한다. 타고난 출생요인(귀속지위)에 따라 각 개인을 여러 유형으로 분류한다는 것이다.

독일의 문화다양성 범주는 이보다 촘촘하다. 이들은 문화다양성의 대상 영역을 내적 차원과 외적 차원으로 분류하고, 내적 차원을 성별, 나이, 성적지향, 신체능력, 민족, 인종 등과 같은 선천적인 '귀속지위'로 분류하고, 외적 차원을 지역, 수입, 습관, 여가, 종교, 교육, 직업, 외모, 부모, 혼인 등과 같은 후천적인 '획득지위'로 분류한다. 그리하여 이차원으로된 분류체계를 갖게 된다.

우리나라는 2013년과 2015년,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하면서 문화다양성 영역 구분을 위한 시도를 해 왔다. 2013년에는 사회문화와 문화정체성, 문화예술 등으로 분류하였고, 2015년에는 소수자와 하위문화, 비주류 예술로, 2017년에는 독일의 예와 유사하게 1차 범주인 기본영역과 2차 범주인 환경영역으로 분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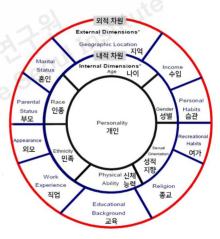
기본영역은 민족, 국적, 성별, 장애문화, 성적지향, 세대 등 '귀속지위'다. 반면 환경영역은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등과 같은 후천적인 '획득지위'로 구성하고 있다. 귀속성과 획득성을 모두 고려하고 있는 것이다. 다만 차이가 있다면, 독일이 환경영역으로 직업과 외모, 부모, 습관 등 매우 세밀한 것을 포함시킨 것과는 달리 우리나라는 '예술취 향'을 포함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정책대상을 유럽헌장처럼 귀속지위로 할 것인지 아니면 독일이나 정부의 체계처럼 획득지 위를 포함할 것인지는 여러 논란이 따른다. 또한 귀속지위의 범주나 획득지위의 내용 또한 다양한 논의가 전개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분류체계에 대해서도 연구하고 자 했으며, 이를 통해 서울시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영역을 발굴해보고자 노력하였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살펴보기로 하겠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60, 재인용

[그림 2-1] 유럽 문화다양성 헌장의 범주



자료: 문회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58, 재인용

[그림 2-2] 독일 문화다양성 범주

[표 2-4] 문회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영역분류체계 변화

2013년 문화다양성 지표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시		
영역	세부영역		영역	세부영역		영역	세부영역	
	국적			다문화 이주민			민족	
사회문화	권역						국적	
	종교		ᆺᄼ가	북한이탈주민		기본영역	성별	
	언어		소수자			(1차 범주) 장애문 성적지	장애문화	
	성다양성 (여성, 성소수자)			성별(여성) 성소수자			성적지향	
문화	장애	▶		장애인	•		세대	
정체성	세대 (유아·아동,			청소년 세대 :			종교	
	청소년, 노인)		하위문화	노인			소득	
	독립문화예술 다원문화예술			전통문화 지방문화			혼인	
문화예술	커뮤니티		비주류	독립문화예술	A	(2   0   )	전통	
	문화예술 다국적문화예술		문화예술	대안문화예술		luer.	지역	
	니지그군외에돌			0			예술취향	
3대 지표 (환경, 제도, 인식)				대 지표 건, <del>활동</del> , 인식)			l 지표 <u>l</u> , <del>활동</del> , 인식)	

자료: 문체부(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한예종 산학협력단(연구책임: 이동연) 문체부(2015),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 측정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류정아) 문체부(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연구책임: 김면)

## 03

##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실태

- 1\_문화다양성 법체계 및 내용
- 2\_정부의 사업추진 현황
- 3\_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 03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및 실태

#### 1\_문화다양성 법체계 및 내용

#### 1) 문화다양성법과 지자체 조례 제정현황

우리나라는 2010년 4월 1일 유네스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 협약」을 비준했다. 110번째 비준국이다. 17) 비준 이후 당사국으로서 국제협약이 요구하는 권리와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2014년 5월 28일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문화다양성법」)을 제정했다. 이 법은 같은 해 11월 29일부터 시행되었다.

법 제정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가 제정되었다. 맨 처음으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는 전라남도다. 전라남도는 2016년 12월 1일 「전라남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했다. 이후 여러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2018년 7월 현재 서울시, 부산시, 광주시, 울산시, 경기도, 제주도, 충청북도 등 7개 광역시도와서울 강북구와 구로구, 전라남도 목포시, 전라북도 익산시 등 4개 기초지자체에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

이와 별도로 경기도와 경상남도는 교육청 주관하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의 목적은 '학교 내 문화적 차별이 없는 교육 환경 조성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에 노력한다'이다. 교육청 조례를 포함하여 각 지자체의 조례 제정 현황은 [표 3-1]과 같다.

<sup>17) 2010</sup>년 4월 1일은 대한민국 비준서를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통해 유네스코 사무총장 앞으로 기탁한 날짜이다. 비준내용은 국내에서는 기탁일로부터 3개월 후 2010년 7월 1일부터 발효되었다(김규원, 2014).

[표 3-1]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교육청 문화다양성 관련 자치법규 제정 현황

(2018년 7월 기준)

구분	지자체명	자치법규명	최초 시행일			
	전남	「전라남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6. 12. 01.			
	광주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01. 01.			
7104	경기도	「경기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03. 13.			
광역 지자체	부산시	「부산광역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04. 23.			
	서울시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05. 18.			
	제주도	「제주특별자치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06. 02.			
	충북	「충청북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1. 10.			
	목포시(전남)	「목포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02. 13.			
기 <u>초</u>	익산시(전북)	「익산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1. 30.			
지자체	구로구(서울)	「서울특별시 구로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7. 11. 16.			
	강북구(서울)	「서울특별시 강북구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2018. 01. 05.			
7074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조례」	2017. 06. 14.			
교육청 	경상남도	「경상남도교육청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조례」	2017. 12. 28.			
2) 문화다양성법 조항의 구성						

#### 2) 문화다양성법 조항의 구성

「문화다양성법」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기본사 항을 규정함으로써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 과 새로운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제1조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사회구성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정책기반체계에 관한 사항(기본계 획 수립·시행, 문화다양성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실태조사, 연차 보고서, 국가보고서). △사업 실행방안에 관한 사항(문화다양성의 날, 지원, 교육, 전문인 력 양성) 등을 닦고 있다.

[표 3-2] 문화다양성법 구성

구분	내용
목적 및 정의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책무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정책기반체계	제6조(기본계획 등의 수립 및 시행),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조사연구·보고서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제9조(연차보고), 제10조(국가보고서의 작성)
사업 실행방안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법의 주요한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문화다양성법」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이행해야 할 정책사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법 제3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제시한 내용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문화다양성에 관한 조사·연구, 활동지원, 국제교류 등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문화적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참여에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의 시행을 위해 법 6조는 4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7조는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국무총리 산하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제8조에서 제10조까지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관련된 사항이다. 법에 따르면, 2년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행해야 하며, 4년마다 유 네스코에 제출하기 위한 국가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11조에서 제14조까지는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 방안으로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문화다양성의 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법 제11조(문화다양성의 날)는 매년 5월 21 일을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 및 광역 시도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문화시설을 조성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 제13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와 제14조(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는 사회구성원을 대상으로 학교를 포함한 교육시설 및 교육단체 등을 활용하여 문화다양성 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에 국가와 지자체가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기본계획을 수립(4년마다)해야 하고,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실태조사(2년마다)를 시행해야 하고, △연차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국가보고서를 작성(4년마다)해야 한다. 또한 △문화다양성의 날을 운영해야 하고,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을 해야 하며. △교육의 시행과. △전문인력 양성 등의 노력을

#### 기울여야 한다.

또한 법에 따라 지자체는  $\triangle$ 문화다양성의 날 운영,  $\triangle$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triangle$ 교육,  $\triangle$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고, 문화다양성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을 조성해야 하며,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

[표 3-3]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정책이행 사항

구분		중앙정부	지방자치 단체	조항 성격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시책강구, 문화 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 권장·보호·육성 과 이에 필요한 재정마련		강제
책무 (제 <u>4-</u> 2	<u>_</u>	· 정책 수립시행, 조사연구, 문화다양성 관련 국 가 간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좌동	권고
		·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 금지	Sin.	강제
기본계획 수 (제62		· 4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시행		강제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제7조)		· 기본계획 수립, 이행 평가 등의 사항에 대한 심 의 조정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문화다양성 위원화를 둠	-	강제
조사 연구	실태 조사	· 2년마다 정기조사		
및 보고서 작성 (제8조~	연차 <u>보고</u>	·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 정책추진 현황 및 세부이 행 평가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	_	강제
제10조)	국가 보고서	· 4년마다 국가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유네스코에 제출		
	문화 다양성 의 날	· 매년 5월 21일을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으로 지정하고 행사에 필요한 사항은 문체부 장관 및 광역시도의 장이 따로 정할 수 있음	좌동	권고
시업 실행방안	지원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 및 관련 문화시설 조성·지원	좌동	권고
(제11조~ 제14조)	교육	·사회구성원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실행	좌동	권고
· · · · · · · · · · · · · · · · · · ·	전문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 인력 성(전문인력 관련 정보수집·조사, 교재개발 지 양성 원 등)		좌동	권고

주: 조항 성격 구분 기준 '~해야 한다.'는 강제조항, '~할 수 있다' 혹은 '노력해야 한다'는 권장조항으로 구분

#### 2\_정부의 사업추진 현황

#### 1) 법 이행 현황

법에 따라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연차보고서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2016년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017년 발간하였다. 국가보고서는 2014년에 1차로 작성했으며, 2018년 현재 2차로 작성 중이다.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 행사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2012년부터 시작된 무지개다리 사업도 지속적으로 추진 중이고,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교육사업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 또한 원만히 추진되고 있다.<sup>18)</sup>

다만, 가장 핵심적인 '기본계획 수립'과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 기본계획은 이미 그 초안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이를 심의할 법정기구인 '문화다양성위원회'가 구성되지 못함에 따라 기본계획을 발표하지 못하는 상태다.

[표 3-4] 문화다양성법에 따른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정책 이행현황

	구분	이행현황
제6조	기본계획 수립·시행	·기본계획(안)은 수립되었지만 문화다양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 아 심의·조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되지 않음
제8조	실태조사	·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발간
제9조	연차보고	·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발간(2017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는 현재 작성 중)
제10조	국가보고서	· 2014 국가보고서 작성(유네스코 제출) · 2018 국가보고서 작성(작성 중)
제11조	문화다양성의 날	· 2015년부터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
제12조	지원	· 2012년부터 무지개다리 지원 사업 운영
제13조	교육	·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2012~) · 문화다양성 연구학교(2016~)
제14조	전문인력 양성	· 2015년 이후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사업 운영

<sup>18) 2012</sup>년부터 계층별, 직군별 맞춤형 교육과정을 개발하는 '문화다양성 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으며, 2016년부터 학교 내 문화다양성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문화다양성 연구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sup>19)</sup> 문화다양성위원회가 설치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현재 정부 내 유시한 위원회가 많다는 점이다. 현재 정부 내에는 다문화가 정위원회(여가부 주관), 외국인정책위원회(법무부 주관) 등이 있다. 그 결과 문화다양성위원회와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에 여러 고민이 제기되고 있는 상태다.

#### 2) 기본 계획 및 조사 추진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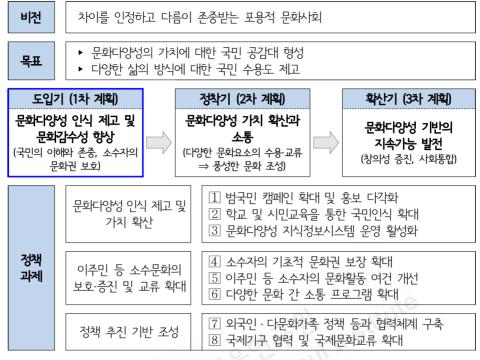
#### (1) 문화다양성 기본계획 수립 현황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은 현재 초안이 만들어진 상태다. 다만 법의 규정상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는데, 2018년 현재 '문화다양성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아 발표를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에 문체부는 지방자치단체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안)(문화체육관광부, 2017c)" 내용을 요약한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방향(문화체육관광부, 2018)"(이하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을 각 지자체에 통보한 바 있다. 해당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작성된 계획에 따르면, 문화다양성 정책은 개인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문화 창조를 위하여 다양한 문화주체가 공존하고 상생할 수 있는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데 방향을 두고 있다. 정책대상은 하나는 국민, 다른 하나는 직접적인 대상인 소수자다.

전체 국민을 위해서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수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있다. 소수자 대상으로는 소수문화 보호 및 표현의 자유 증진, 문화 간 교류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어 있다. 이때 말하는 소수자란 신체적 또는 문화적 특성때문에 사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비교하여 소수거나 불평등한 처우를 받는 사람들의 집단이나 입장을 의미한다. 이 소수자는 고정적인 것은 아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계획에서는 기존 사회 구성원들도 사회적 소수자가 될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계획의 비전은 '차이를 인정하고 다름이 존중받는 포용적 문화사회'다. 이 비전하에 '문화다양성 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과 '다양한 삶의 방식에 대한 국민 수용도 제고'를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계획은 3단계에 걸쳐 추진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3대 영역 8대정책과제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림 3-1] 문화다양성 정책 목표 및 정책과제

#### (2) <문화비전2030>과 문화다양성 정책

정부는 2018년 5월 새로운 문화정책 방향으로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이하 문화비전2030)>를 발표한 바 있다. <문화비전2030>은 3대 가치와 9대 의제로 제시되어 있는데, 이 중 두 번째 가치가 문화다양성일 정도로 문화다양성은 문화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되어 있다. 20)

<문화비전2030>에서 '다양성'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 신체적 조건, 정치적 견해 등에 관계없이 개인과 공동체의 다양한 구성원들을 존중하고, 그 문화와 표현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정의한다. 이 다양성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 의제로 <문화비전2030>은 '문화다양성 보호·확신'을 첫 번째 과제로 제시한다. 이어진 두

<sup>20) &</sup>lt;문화비전2030>의 3대 가치는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 등이다. 각각은 개인의 자율성 보장,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사회의 창의성 확산을 목표로 한다.

번째 과제는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세 번째 과제는 지역문화분권으로 문화다양성과 큰 관련을 갖고 있지는 않다.

[표 3-5]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비전2030> 체계도

비전	사람이 있는 문화							
가치	자율성 /	' 다양성 / 창의성						
3대 방향/ 9대 의제	1. 개인의 자율성 보장 ① 개인의 문화권리 확대 ③ 성평등 문화실현 2. 공동체의 다양성 실현 ④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확산 ⑥ 지역문화분권 실현 3. 사회의 창의성 확산 ② 문화자원의 융합역량 강화	② 문화예술인·종사자의 지위와 권리 보장  ⑤ 공정하고 다양한 문화생태계 조성  ⑧ 미래와 평화를 위한 문화협력 확대						
	⑨ 문화를 통한 창의적 사회혁신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2018.5.16.,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문화다양성 보호확산은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전통문화의 보호 및 현대화,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관광정책 추진,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추진체계 정비 등 5개 대표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표 3-6]과 같다.

[표 3-6] <문화비전2030> 중 '문화다양성 보호와 확산' 대표과제

대표과제	주요내용
1. 문화정체성의 다양한 표현 보장	- 정책 범위 설정: 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책 위상 정립 - 교육 실시: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 다양성 예술 증진: 문화정체성에 기반한 다양한 예술지원
2. 언어문화의 다양성 실현	- 지역어 보전: 지역어의 보전 및 진흥으로 언어문화 다양성 증진 - 특수언어 위상강화: 농인과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수어 진흥
3. 전통 <del>문</del> 화의 <u>보호</u> 및 현대화	- 추진 기반 마련: 전통문화 정책의 안정성 확보 및 체계적 추진 - 전통문화 자원 발굴: 지역 전통문화 현황 조사, 발굴 및 활용 - 전통문화 향유 증진: 전통문화·공연 향유 프로그램 확대 - 문화재 보존: 현장·지역 중심 지속가능한 문화재 보존 및 전승
4. 다양성에 기반한 관광정책 추진	- 공존하는 관광정책 추진: 상호이해, 다문화 배려 서비스 구축
5. 문화다양성 관련 법률·추진체계 정비	- 기본법화: 문화다양성을 문화 법제의 기본원칙으로 정립 - 문체부 역할 강화: 정책 총괄부처로서 문체부 책임성 제고 - 지침 마련: 문화다양성 정책을 위한 실행지침 마련·이행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2018,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실태를 2년마다 정기 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21) 실태조사를 위해 정부는 2013년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 구름 시행하고, 2015년 「문화다양성 지표조사 및 지수측정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 과를 바탕으로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2017년 발간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는 문화다양성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사회 적 소수자 집단 활동 분석,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정책 및 기반 여건 분석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국민 인식조사는 21,000명의 국민을 대상으로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소수자 집단 인식조사는 외국인노동자,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등 각 300명을 대상으로 1:1 대면조사를 실시하였다. 지원정책 및 기반여건 조사는 17개 시·도 Institute 에 공문을 발송하여 자료를 취합하는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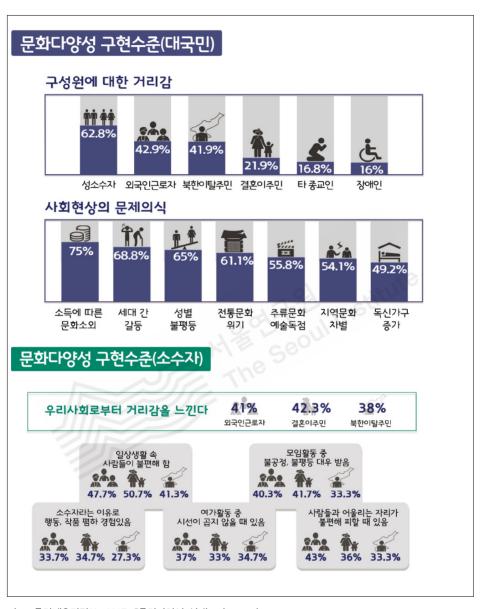
[표 3-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지표분류와 세부지표 항목

구분	대분류	중분류	세부 지표 항목
		인지도	· 문화다양성의 개념에 대한 이해도 · 국민의 문화다양성 기치 평가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관심도	·소수자 문화와의 거리감
대국민 사회적 인식	지표	필요도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효괴성 평가
JIIr		수용도	·일반인의 소수자 집단 수용도
		포용도	· 소수자에 대한 차별정도 인지도
소수자(외국인노동		인지도	·문화다양성 의미에 대한 이해도
자, 결혼이주민,	활 <del>동</del> 지표	친밀도	·우리 사회로부터 거리감을 느끼는 정도
시, 일본이구년, 북한이탈주민)		포용도	·소수자에 대한 포용도
국인의 글무리) 실태조사		수용도	·국민의 소수문화 수용도
크네고기		만 <del>족</del> 도	· 문화다양성 정책 만족도
문화다양성 보호와	スイラH	정책수립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규칙
증진을 위한 정책 및	정책	정책실행	·문화다양성 관련 지원 사업
제도 현황	지표	정책예산	· 문화다양성 예산
문화다양성 보호와	여건	기반시설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지원기관 및 시설
증진을 위한 시설,	지표	자원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단체
자원 및 인력	八工	지원인력여건	·소수자 문화다양성 활동 관련 지원인력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p.80.

<sup>21)</sup> 문화다양성법 시행령 제8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서는 정기조사는 2년마다 실시해야 하며, 특정 분야 및 사안이 발생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수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요 조사결과는 [그림 3-2]와 같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그림 3-2] 2017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주요결과

#### (4)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연차보고서는 매년 발간을 의무화하고 있다. 법에 따라 2015년부터 매년 발간하고 있다.

연차보고서 주요내용은 △문화다양성 관련 정책 환경파악 및 동향조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사업 현황실태 및 분석,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사업 평가를 통한 정책과제 발굴 및 개선방안 등으로 되어 있다. 법 제9조에 따르면 연차보고서는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과 관리 내용을 포함하여야 하지만, 현재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간단한 정책사업 조사 및 문제점을 제언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또한 연차보고서는 문화체육관광부 외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실태에 대해서 제대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 체계적 틀을 가지고 각 지자체 사업 실태를 파악하지도 않을 뿐더러, 분류방식 또한 연도마다 달라 시계열적으로 살펴보기 어렵다.<sup>22)</sup> 예컨대, 2017년 에 실시한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사업대상을 13개 유형으로 나눈 반면, 2016년 연차보고서는 유형을 6개로 분류하고 있다. 이런 점은 향후 시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표 3-8] 2016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와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사업 분류 기준

2016년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2017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시업 ②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문화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시업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시업 ④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업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시업 ⑥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 증진시업	<ul> <li>① 외국인근로자 지원</li> <li>② 결혼이주민여성 지원</li> <li>③ 북한이탈주민 지원</li> <li>④ 성차별 근절</li> <li>⑤ 성소수자 관련 사업</li> <li>⑥ 장애인 문화지원</li> <li>⑦ 세대 간 갈등 해소</li> <li>⑧ 전통문화 보존</li> <li>⑨ 지역문화 발전</li> <li>⑩ 예술의 다양성 확보</li> <li>⑪ 주교의 다양성</li> <li>⑪ 가족의 다양성</li> <li>⑬ 저소득층 문화 지원</li> </ul>

<sup>22)</sup> 연차보고서 작성지침이 있으나 각 기관별로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 및 사업범주를 다르게 인식하고 있어 사업이 누락되거나 같은 사업도 지자체별로 다른 영역으로 분류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 「2016 문화다양성 정책연차보고서」, pp.186-187).

#### 3) 사업 추진현황

#### (1) 개요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이 추진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러나 넓은 범위에서 문화다양성이 소수자의 문화적 권리를 포함하는 만큼 영역을 확장해서 보면,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은 이주노동자가 확대되기 시작한 200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2007년 이주노동자 확산과 더불어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사업(이주민 노동자 축제 지원 등)' 및 '이주민 다문화 체험 지원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는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사업이 시행되었다. 이 사업은 문화 간 상호교류와 소통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사업으로. △다문화지역 순회공연사업. △지역다문화프로그램 지 원, △이주민 공동체 문화활동 지원, △다문화 콘텐츠 개발 등이 주요 사업이었다.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 변천과정(2007~2018)

[표 3-9]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정책 변천과정(2007~2018)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특수소외계층 문화권신장 (이주노동자 축제 지원 등)	(□	화사회 둔 나문화 인자	양성, 내 <del>.</del>	국인의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 문화다양성 교육, 정책개발 등)					
온누리안 (혼혈인)· 이주민 다문화 체험지원	콘티	다문화 인식개선 시업, 다문화 콘텐츠 개발 시업, 지역다문화 프로그램)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 (무자가리 시업 지원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 등)				문화 다양성 보호 및 증진
			양성평	등 문화 :	환경 조성					(양성평등, 남북 문화
	여성문화 -	콘텐츠 개별	날 및 네트	워크 지원	, 양성평등	문화 정칙	박위원회 운	영)		마취 관취   상호이해
	-			남북 문화 협력 기초 조사	남북 문 활성 (조선왕 남북 공	(화 조실 <del>록</del>		문화 상호 제고 하 교육 사		제고 포함)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07~2018, "연도별 문화체육관광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문화체육관광부, 2013~2018, "연도별 문화정책관(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이 사업은 2013년부터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 환경 개선사업'으로 변경하여 추진되었 다. 다문화 관점에서 문화다양성 관점으로 사업방향이 변경되어 시행된 것이다. 그 결과 이주노동자 및 다문화가족 외 다양한 소수(문화)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전확되었다.

2018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사업은 △무지개다리 사업,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지원 사업 등이다. 그 외 △양성평등 문화예술정책 확산 사업,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 사업 등도 문화다양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이들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정책관 문화인문정신정책과에서 총괄하고 있다.

[표 3-10] 2018년 문체부 문화다양성 세부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 원) 201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기반 조성 3.173 무지개다리 사업 운영 2.584 문화다양성 주가행사 지원 200 문화예술기반 문화다양성 교육 130 보이터이 인도옥 30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 개발 25 양성평등 문화예술 정책확사23) 109 남북문화 상호이해 제고 95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8, "2018 문화정책관(문화정책국) 예산 현황".

#### (2) 무지개다리 사업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추진하고 있는 대표적인 문화다양성 사업이다. 「문화다양성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2년에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2018년 현재 7년 차에 이르고 있다.

사업목표는 '우리사회 내 다양한 소수문화계층의 문화표현 기회를 확대하고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의 문화교류 및 소통을 활성화하는 것'이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a). 사업은 정부가 광역시도 문화재단과 기초문화재단, 시설관리공단 등 문화예술 관련 기관에 기관당 4천만 원에서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이다.<sup>24)</sup> 참여기관은 2013년 12개 기관에서 2018년 현재 27개 기관으로 확대되었고, 예산 또한 20억원 내외로 증액되었다.

<sup>23) 2017</sup>년까지는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이란 사업명으로 여성문화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 지원, 양성평등문화 정책위원회 운영 및 정책조사사업 등이 추진되었다.

<sup>24)</sup> 초기 지원은 단년이었다. 2017년부터 장기적인 지원으로 바뀌었고, 현재는 3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표 3-11] 무지개다리사업 주요내용

구분	내용
개요	지역 내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다문화, 소수문화, 서대문화, 하위문화, 지역문화 등 다양한 문화 및 문화주체들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하고, 지역 공공문화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 이주민단체, 문화단체 등과 지역사회 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문화다양성을 확산하고자 하는 시업
사업 목적	- 국민 제반 문화다양성 인식 확산 및 문화예술을 기반으로 한 문화다양성 사업 증진 - 문화 간 교류, 소통, 상호작용을 통해 능동적 문화주체로서 문화적 소수자의 역할 확대 - 지역 내 자생적인 문화다양성 기반의 시업 개발 및 정착
주요 특성	- 이주민 등 문화적 소수자들의 주체적 문화표현 활동 - 다양한 문화주체들 간 소통 및 교류 활동 - 생활문화, 대중문화 등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 수요자 중심의 프로그램 운영 체계 구축 - 사업기획 및 관리, 컨설팅, 네트워크 체계 구축 - 지역사회와 단체 및 개인 간의 문화다양성 기반 네트워크 구축

#### [표 3-12] 무지개다리사업 연도별 변화

자료: 문화다양성이카이브 홈페이지(http://www.cda.or.kr/rainbow)								
[# 3-12] <del>-</del>	무지개다리사	업 연도별 변	화	17		titute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u></u> 주최			NI:	문화체육관광-	부			
주관	문화체육 관광부	이웃교육   이웃교육   이무무하예수의원이						
사업 예산	시범시업	22.7억 원	23.9억 원	24.3억 원	24.3억 원	19.9억 원	21.3억 원	
참여 기관	6개	12개	17개	23개	24개	25개	27개	
지원 방식	단년도 지원	단년도 지원	단년도 지원	단년도· 다년도 지원	다년도 지원	3년 지원	3년 지원	
참여자 수	-	124,812	36,369	108,830	187,012	226,321	-	
<u>프로그</u> 램 수	-	138	124	183	233	242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 「2017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연구」, p3, p.247.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무지개다리사업 선정 공고문"

무지개다리 사업은 기본적으로 기초지자체를 대상으로 한다. 때문에 서울시 자체로는 참여하고 있지 않다. 다만 성북문화재단(6년차), 구로문화재단(5년차), 종로문화재단(4년차), 성동문화재단(3년차),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3년차), 도봉문화재단(신규), 은평문화재단(신규) 등 7개 자치구가 참여하고 있는 상태다.

#### (3)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 행사

동 사업은 문화다양성법 제11조에 따라 실시되는 사업이다. 세계문화다양성 선언에 명시된 5월 21일이 '문화다양성의 날'이며, 그로부터 1주일을 '문화다양성 주간'으로 운영한다.

2015년 첫 행사는 '2015 동아시아 문화도시'로 선정된 충청북도 청주시에서 개최되었다. 첫 행사는 청주에서만 개최하였으나, 2016년부터는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하여 개막식을 열고, 지자체별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2016년에는 서울 대학로, 2017년에는 부산 광복로, 2018년에는 광주 광산구 수완호수공원에서 개막식을 열었다.



자료: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7, 2018, "연도별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개최' 보도자료"

[그림 3-3]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포스터

#### (4)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은 2012년부터 시작되었다. 2014년까지는 여러 업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다가 2015년부터는 공무원 및 문화예술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각 지역 문화재단의 무지개다리사업 담당자와 관련 업무 담당자, 주요 협력기관 담당자,

문화다양성 시범학교 담당자 및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이 주요 대상이다.25)

[표 3-13] 문화다양성 교육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구분	사업명	프로그램명	연수기관
2008년~ 2011년	다문화교육인력 양성과정 운영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과정 다문화 전문강사 심화연수 문화기반시설 실무자대상 다문화 교육의 이해 연수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2012년	문화다양성증진 연수 운영	기관단체 실무자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연수/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이해 연수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문화기반시설	사서직 교육훈련 문화다양성 교과목 운영/ 전국도서관대회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연수	한국도서관협회
201213	관계자 연수	문화의 집 운영자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	한국문화의집 협회
2013년	문화재단관계자 연수프로그램 제3차 지식공유포럼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전국지역문화 재단연합회
	언론미디어종사자 연수프로그램	PD, 심의위원 등 방송미디어 관계자 대상 문화다양 성 세미나	 한국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언론미디어종사자 연수프로그램	문화다양성 방송언론 관계자 대상 연수	(주)엔아이리서치
201413	초 <del>중등</del> 교사 연수 <u>프로그</u> 램	초중등 교사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	(사)문화다움
2014년	기업종사자 대상 시범연수프로그램	기업종사자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	(사)문화다움
	행정인력 대상 시범연수 <u>프로그</u> 램	행정인력 대상 문화다양성 연수	(사)문화다움
2015년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연수	아시아인권 문화연대
2016년	전문인력 양성	2016 찿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문화디자인자리
2017년		2017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문화디자인자리

자료: 최혜자, 2017,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의 성과와 방향", 「2017 문화다양성 정책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교육과정은 2016년부터 기본과정과 심화과정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다. 기본과정은 문화다양성의 보편적 이해를 돕는 교육이고, 심화과정은 현장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다. 2016년에는 무지개다리사업 수행기관인 지역문화재단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한국

<sup>25)</sup> 이들은 서울에서 회당 2박 3일 과정으로 총 6회 교육을 수강하였다.

문화예술위원회. 2017a). 2017년에는 문화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등으로 확장되 어 진행되었다.

문화예술기관 외 교사를 대상으로 한 교육도 별도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부와 협력하여 2017년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 사업'을 추진하여 온-오프라인 형태의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다른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2016년부터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지원 사업'을 추진해 유· 초등 교사를 대상으로 교육현장에 맞는 교육커리큘럼을 개발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하고 있다. 문화예술기관에서 학교 교사까지 다양한 영역으로 교육의 범위를 넓히고 각 학교가 적절한 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이다. Hartitute Seoul Institute

####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현황

- 1) 관련 조례 제정 및 특징
- (1) 조례 제정과 구성

서울시는 「문화다양성법 에 근거하여 2017년 5월 18일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이하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를 제정하였다. 조례 제정의 사유를 살펴보면, '서울시 차워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과 실행계획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양한 문화에 대한 수용성 을 높여 지역사회 통합과 새로운 문화 창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26)

조례에 따라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정책은 △정책수립 및 조사연구 시행. △문화다양성위 워회 설치 및 지역협력체 운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워·교육·전문인력 양 성, △권고와 표창 등이다.

<sup>26) 2017</sup>년 2월 8일, "서울특별시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이병해 의원 발의)" 중 제안 사유

우선 '정책 수립 및 조사연구 시행' 차원에서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해야 하는 책무가 있으며, 매년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 또한 2년마다 실태조사를 시행하여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실태조사에는 ①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②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③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④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관한 사항, ⑤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⑥그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한다.

둘째,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지역협력체 운영'을 보면, 시장은 우선 산하에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해야 하고,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인 '지역협력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전자는 의무사항이고, 후자는 권고사항이다.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평가, 실태조사, 지원, 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의 사항에 대해 심의·조정 역할을 한다. 정부가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을 미뤄 기본계획 심의를 못해 발표하지 못하는 것처럼, 서울시 또한 <문화다양성위원회>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전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셋째,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교육·전문인력 양성' 등을 위해 시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문화시설을 지원할 수 있고,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모두권고사항이다.

넷째, '권고 및 표칭' 조항을 살펴보면, 시장은 문화차별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구하는 권고조치를 취할 수 있고, 문화다양성 증진에 기여한 기관·단체 등에게 표창을 할 수 있다.

[표 3-14]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중 시장의 책무와 정책 이행사항

구분	서울시 의무
시장의 책무	<ul> <li>시책 강구,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이에 필요한 재정마련(의무)</li> <li>정책 수립·시행, 조사·연구, 문화다양성 관련 국가 간 국제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li> </ul>
전책 수립 및 조사연구 시행	-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및 지역협력체 운영	- 시장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 설치 - 지역협력체 운영(지역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 력기구 운영, 활동공간 운영에 필요한 지원 가능)
지원, 교육, 전문인력 양성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 산업 등을 지원, 문화시설 조성 지원 등) - 교사, 청소년 등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 양성(전문인력 관련 정보수 집·조사, 교재개발 지원 등)
권고와 표창	-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을 대상으로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한 시정개선을 요청하는 권고와 권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지원 점검 -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게 표창

#### (2) 조례의 특징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에는 현재 세 가지 종류의 조례가 존재한다. 첫 번째 유형은 가장 처음 조례를 제정한 전라남도 조례(2016년 12월 1일 제정)다. 이 조례는 포괄적인 의미로 문화다양성을 규정한다. 문화다양성 개념과 정의를 구성한 제2조 정의를 보면, '문화적 차별'과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을 규정하고 있다. '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비교적 「문화다양성법」에 충실하게 개념을 정의하고, '문화적 차별'이란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이 이 유형의 특징이다.

두 번째 유형은 2017년 1월 1일 제정된 「광주광역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다. 이 조례는 '문화적 차별'이나 '문화적 표현'에 대한 규정 없이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을 규정하고, 그 범위를 '미풍양속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로 제한한다. 제

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한다. 서울시 또한 마찬가지다. 이 조례의 영향을 받아 가감 없이 위 정의를 그대로 인용하고 있다.

세 번째 유형은 부산광역시형이다. 부산광역시 조례 제2조를 보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고 하여 1. "문화다양성"이란 문화다양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다양성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2. "문화적 표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인, 집 단, 사회의 창의성에서 비롯된 표현으로서 문화적 정체성에서 유래하거나 문화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상징적 의미, 예술적 영역 및 문화적 가치를 지니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의 적극적 보호와 조치를 매개로 전남도의 조례나 사회 미풍양속 범위 내에서 문화다양성을 인정하는 광주광역시 조례와는 다른 성격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의 유형에 따라 현재 제정된 각 지역의 조례를 분류할 수 있다. 서울시와 충청북도는 광주광역시 유형을 따르고 있고, 경기도와 목포시, 익산시 등은 전라남도 조례 유형을, 서울 강북구와 구로구는 부산광역시 유형을 따르고 있다. 제주도 조례만 정의 없이 도지 사의 임무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ſπ	2_15]	선인과하무	고본의	고레	게기	이福	$\omega$ I $\neg$	
1#	3-151	テロニマシ	45	소데	제설	프앤	- III	

유형	광주광역시형	전라남도형	부산광역시형
문화다양성 개념화 특징	문화적 관용으로 규정 - 미풍양속 범위 내로 한정	문화다양성법 반영 - 문화적 차별을 중시	문화적 정체성과 예술적 가치 중시
유사 조례 제정 지자체	서울시, 충청북도	경기도, 목포시, 익산시	서울 강북구, 구로구

<sup>※</sup> 유형명은 해당 유형의 조례를 처음 제정한 자치구 이름을 반영하였음(본 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주도의 경우 특별한 정의 없이 도지사의 임무부터 제시되어 있음).

정의를 구성하는 방식을 제외하면, 지자체 간 조례의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 문화다양성 센터나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영 등과 같은 몇몇 조항만 다를 뿐이다. 각지자체에서 제정한 조례를 비교하면 [표 3-16]과 같다.

[표 3-16] 광역지방자치단체 문화다양성 조례 내용 비교

구분		서울	부산	광주	경기도	충북	전남	제주도
	제정 날짜	2017. 5.18.	2017. 3.22.	2017. 1.1.	2017. 3.13.	2017. 11.10.	2016. 12.1.	2017. 6.2.
	문화다양성 및 문화적 표현	X	0	Х	0	Х	0	X
정의	문화적 관용 (단서조항 포함)	0	Χ	0	X	0	X	X
	문화적 차별	Χ	Χ	Χ	0	Х	0	X
시징	후은 도지사 책무	0	0	0	0	0	0	0
사회구성원의 권리와 책무		O (사회 구성원)	O (시민)	O (사회 구성원)	X	O (사회 구성원)	O (도민)	O (도민)
문호	<b>に양성위원회 설치</b>	0	0	0	X	0	0	0
 지역협력체 운영		0	O <sup>주1</sup>	0	Х	0	Χ	X
 실행계획 수립·시행 및 실태조사		0	0	0	0	0	0	0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문화시설 지원 포함)		0	X	0	0	0	Х	0
-	 문화다양성 교육		0 <sup>주1</sup>	0	O <sup>주2</sup>	0	0	X
전문 인력 양성		0	Χ	0	0	0	0	X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 행사		X	Χ	0	Х	Х	Χ	0
문화다양성 센터 설치		X	0	0	Х	Х	0	0
문화다양성 기금 설치 및 운영		Χ	Χ	0	Χ	Х	0	Х
권고		0	Χ	0	0	0	0	X
	표창(포상)	0	Χ	0	Х	0	Χ	0

주1: 「부산 문화다양성 조례, 제8조(사업추진 등)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가치확산, △교육사업, △지역협력체계 구축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주2: 「경기도 문화다양성 조례」에서는 제6조(문화다양성 홍보 및 교육) 조항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교육사업 및 홍보를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1. 도내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에서 비롯된 문화적 특성에 관한 내용, 3.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및 문화다양성 가치의 실천에 관한 내용, 4. 도내 다른 민족의 문화에 대한 홍보 등)

#### 2) 사업추진 현황

서울시는 아직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지는 않은 상태다. 정부가 진행 하는 사업에 협조하거나 외국인 관련 정책이나 다무화정책 차워에서 추진하고 있을 뿐이 다.27) 범위를 문화정책으로 좁혀 서울시 문화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무지개다리 사업

앞서 살펴보 바와 같이 무지개다리 사업은 문화관광체육부 주관하에 기초지자체에서 추 진하는 사업이다. 때문에 서울시는 참여하지 않고 성북문화재단(6년차). 구로문화재단(5 년차), 종로문화재단(4년차), 성동문화재단(3년차),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3년차), 도봉 문화재단(1년차). 은평문화재단(1년차) 등 총 7개 기관이 참여하고 있다(2018년 기준).

[ <b>표</b> 3-1	[표 3-17] 2018년 무지개다리 사업 참여기관 중 서울 소재 기관				
연차	주관기관	사업명	지원금액 (백만 원)		
6	성 <del>북문</del> 화재단	성북, 문화다양성으로 동행同幸하다	90		
5	구로문화재단	구로 채운(彩雲) 사이의 공동체를 이어내는 문화자주성	120		
4	종로문화재단	문화다양성 가치공유 확산을 위한 종로 문화다양성 연극제	70		
3	성동문화재단	문화다양성 마을_다양성 洞	60		
3	서대문구도시관리공단	서대문차이愛 빠지다	40		
1	도봉문화재단	다다잇선(다름과 다양함을 잇는 선)	40		
1	은평문화재단	은평 다문화 네트워크 '똑똑'	40		

이 중 주목할 만한 기관은 구로문화재단이다. 구로문화재단은 2017년 '구로채운-사이의 공동체 잇기'라는 사업으로 탈북민, 중국동포 장애인 등 지역 내 소수자를 발굴하고 교류 하며 관계망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두고 다큐 제작. 릴레이북 작성. 팟캐스트. 간담회 등 을 통해 지역공동체와 소통을 이끌어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다(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b). 그 공으로 2017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하였고, 전국 기초지자체로

<sup>27)</sup> 글로벌 관련 정책을 추진하는 서울시 관할부서는 <여성가족정책실>이다. 여성가족정책실에는 외국인다문화담당관이 있고, 이 담당관 산하에 외국인정책팀과 다문화가족팀, 외국인주민인권팀 등이 있다.

는 처음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28)

#### ②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는 2016년도 '문화다양성 주간행사 개막도시'에 선정되어 5월 21일부터 27일까지 마로니에공원 일대에서 '차이를 즐기자'라는 주제로 문화다양성 주간 개막식 및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후 각 기초지자체별로 개막식을 열고 행사를 주관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서울시 또한 기초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주간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자료: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 「2018년 문화다양성주간 백서」

[그림 3-4] 2018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성북문화재단(좌), 성동문화재단(우)

#### ③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교육사업 또한 정부가 주관하고 있는 사업에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2017년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문화체육관광부 주관)에 성동문화재단(25명), 구로 문화재단(13명), 서울 숭례초등학교 병설유치원(11명) 등이 참여하였다. '문화다양성 연구학교' 사업에는 서울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이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참여하여 교사연수를 실시하고, 문화다양성 교육과정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교육과정은 군자초등학교 유치원 원아 72명(3~5세 5개 반)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서울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017).

<sup>28)</sup> 뉴스타운, 2018.3.21., "구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우수기관 문화체육관광장관상 수상"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43(검색일 2018.8.2.)

#### ④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자료 제출

서울시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지는 않다. 다만 문화체육관광 부에서 진행하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연차보고서 작성에 참여하고 있다. 2015년, 2016년 연차보고서를 제출했고, 2017년 실태조사(2015~2016년 기준)에 자료를 제출한 상태다.

[표 3-18]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 부서(2016년 서울시 연차보고서 기준)

담당부서			
본부/국/실	과(담당관)	시합경	
	문화정책과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식 개최, 거리예술존 운영, 서울 거리예술칭작센터 운영,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마을예술창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 시업, 시민예술동이리 대제전, 서울문화포털 운영, 청춘극장 운영, 자치단체 간 문화교류사업, 미래유산 보존 및 활용사업,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실시,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참가, 서울국제음악콩쿨대회	
무화보부	문화예술과	지역특성문화사업 지원,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서울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사랑 티켓 지원,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저소득층 예술영재 교육, 우리동네 예술학교, 장애청소년 미술교육 지원,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서울도서관 (도서관광정책과)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독서토론 활성화	
	디자인정책과	유니버셜디자인 인성·창의교육, 유니버셜디자인 국제세미나, 학교환 경개선 컬러 컨설팅, 인지건강디자인 시범사업, 학교폭력예방디자인	
	역사문화재과	보신각 타종행사,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전통문화 행사(남산봉수 의식 등), 생생문화재 사업, 정조대왕 화성행차 재현	
	박물관과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시민생활박물관 건립,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 간(가칭) 건립, 돈화문민요박물관(가칭) 건립	
관광체육국	관광사업과	서울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빛초롱축제, 다국어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서울글로벌마케팅, 한류관광 활성화, MICE 해외 홍보 및 프로모션	
	체육정책과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마라톤대회 개최, 스포츠강좌 이용권, 서울특별시 장애인체육회 육성, 서울시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서울시 장수축구대회 개최 지원, 어린이 야구교실, 유아축구 주밀리그 전, 여성축구 리스 및 풋살대회 개최, 가족스포츠 학교 운영, 축구교실 및 풋살교실 운영	

[표 3-18 계속]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 부서(2016년 서울시 연차보고서 기준)

담당부서		시업명	
본부/국/실	과(담당관)	^1 H ♂	
여성가족	외국인 다문화담당관	다문화자녀 학습지원, 찾아가는 다문화이해교육, 외국인주민 커뮤니티 문화행사 지원, 외국인지원시설(서울글로벌센터 등) 설치·운영, 서울시 외국인 유학생 지원, 서계인의 날 행사, 중국동포 사회통합지원, 외국인주민 서울생활 살피미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지원	
정책실	여성정책담당관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여성마라톤 대회개최, 안심귀가스카우트, 성 평등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모니터링, 서울시 공무 원 성인지 역량강화 교육, 성인지 통계작성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서울시 외국인 명예시민 선정, 지구촌 나눔 한마당 축제, 자매우호협정 체결 기념행사	
국제협력관	해외도시협력 담당관	다자개발기구와의 협력	
	어르신복지과	어버이날 및 노인의 날 기념식 개최,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고령친화 국제네트워크 구축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할아버지·할머니 한마음 축제, 어르신 생활체육 경연대회 지원, 어르신 아카데미 운영 등, 실버영화관 운영지원 등, 효자손 어르신 문화체육 대축제, 어버이날 기념 행사 개최, 찾아가는 어르신 문화공연,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평생교육과	서울자유시민대학 설립 운영,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지원	
평생교육국	청소년담당관	놀라운 토요일 프로젝트 운영,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 어린이날 기념행사, 성년의 날 기념 행사,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휴카페 설치·운영,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청소년 정신건강릴레이 토크 콘서트,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	
행정국	자치행정과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지원	

자료: 서울시, 2017, "2016 서울시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자료 중 서울시 추진사업 부서별 재분류

## 04

# 서울시 문화다양성의제 및 정책 발굴

- 1\_전문가 포럼
- 2\_델파이 조사 결과

#### 04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 및 정책 발굴

#### 1\_전문가 포럼

#### 1) 개최 개요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본 연구진은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하고, 총 6차례에 걸친 포럼을 통해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정책방향을 설정하고자하였다. TF에 참여한 전문가와 회차별 토론내용은 [표 4-1], [표 4-2]와 같다.

#### [표 4-1] 전문가 자<del>문위</del>원 명단

이름	소속 및 직위	관련 연구 및 사업 경험
김규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콘텐츠산업경제연구센터장	문체부, 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4, 「국외 문화다양성 정책 사례조사 및 분석연구」
나기석	구로문화재단 문화정책팀원	무지개다리사업 담당자
이완	아시아인권문화연대 대표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턴트
주윤정	서울대 시회발전연구원 선임연구위원	ARKO 문화예술, 2007, "에이블 아트, 장애와 예술의 만남 장애인 예술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등 장애인예 술 및 장애인 인권 관련 연구
최혜자	문화디자인 자리 대표	문화다양성 교육 운영,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턴트
조민지	서울시 문화정책팀 문화다양성 사업 담당	서울시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및 실태조사 자료 작성

#### [표 4-2]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회차	내용		
	일시/장소	2018. 1. 19.(금) 오전 10시 서울연구원 소회의실 219호	
	발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제 및 정책방향 연구계획	
1차	토론주제	-국내 문화다양성 현황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방안 및 활용방안 -문화다양성 개념 및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의 필요성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전략	

#### [표 4-2 계속] 전문가 포럼 개최 현황

 회차		내용
	일시/장소	2018. 2. 1.(목) 오후 6시 구로구 가리봉동 대흥판점
2차	발제	-문화다양성 법제도 및 정부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안) -서울시 문화다양성 지역 현황
	토론주제	-현 문체부 문화다양성 영역 구분의 문제점 -문화다양성 정책 개념 및 주요대상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필요성과 규제방안 -소수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홍보 필요성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분류
	일시/장소	2018. 2. 12.(월) 오후 5시 르호봇 프라임 시청 비지니스센터
	발제	-다양성으로서 장애의 이해(주윤정) -아시아문화연대의 문화다양성 사업 사례와 한국의 차별양상(이완)
3차	토론주제	-민족주의와 한국에서 나타나는 차별양상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방향 -차별행위에 대한 규제 방안 -이주민 집단 거주 지역에 대한 정책 방안
	일시/장소	2018. 2. 26.(월) 오후 6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문화정책과 회의실
	발제	-문화다양성 이해하기(최혜자) -무지개다리시업 사례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나기석)
4차	토론주제	-문화다양성을 보편적 가치로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갈 것 인지, 독립된 사업영역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 -문화다양성 범주에 예술영역 포함 여부 문제 -문화다양성 정책영역과 정책원칙 -표현의 자유와 인권침해에 대한 문제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반영한 도시디자인 방안
	일시/장소	2018. 3. 13.(화) 오후 6시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1동 문화정책과 회의실
	발제	-문화다양성 영역과 정책분류, 정책방향(김규원)
5차	토론주제	-문화다양성 영역 구분기준에 대한 논의 -문화다양성 정책방안(규제정책, 도시디자인 정책)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측정지표의 중요성
	일시/장소	2018. 5. 31.(목) 오전 8시 컨퍼런스 하우스 달개비
6차	발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및 2차 델파이 조사 방향
U^	토론주제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에 대한 논의 -2차 델파이 조사 시 반영되어야 할 사항

#### 2) 주요 토론내용

#### (1) 1차 포럼: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

1차 포럼은 연구진이 연구계획에 대해 발제하고 국내 문화다양성 정책의 현황 및 여건, 문화다양성 개념과 서울시 정책에 있어 별도의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의 필요성, 서울시 정책방향 등을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국내 문화다양성 현황과 관련하여 이완 위원은 "우리나라는 60년대 이후 국가 정책으로 단일주의가 강조되면서 '다르다는 것'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것이자 비효율적이고 경쟁력이 없는 것으로 여겨져 왔다"며 "이러한 흐름에 대해 제동을 걸지 않으면 사회 내에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기가 어렵다"고 진단하였다.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에 대해서 김규원 위원은 "'차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최혜자 위원 또한 "삶의 다양성으로 이해해야 하며, 다양한 삶의 방식이 차별 받지 않고 존중되어야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 또한 유네스코에서 사용하는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을 '예술의 다양성'으로 국한시키는 것은 본질적으로 잘 못된 이해라는 의견(김규원)도 있었다.

'서울시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별도의 정의가 필요한가'라는 질문에는 "문화다양성은 각 사회가 갖고 있는 문화적 토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별도로 정의될 필요가 있다"(최혜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유네스코 차원, 국가 차원, 도시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이 모두 다르기에 서울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다양성 개념 도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정책대상자인 소수자가 아닌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이 모아졌다. 문화다양성이란 타인과의 차이,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 "소수자가 아니라 다름을 받아들여야 하는 다수자를 대상으로 해야 모두가 공존할수 있는 사회를 만든다"(김규원)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 소수자들의 인권 또한중요한 문제라는 지적도 제기되었다. 최혜자 위원은 "1차적으로 전체시민을 대상으로 한 인식개선도 중요하지만, 소수자나 약자를 대상으로 한 정책도 같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윤정 위원은 다양성을 위협하는 행동에 대한 경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문화다양성 정책의 실효를 높이기 위해서는 네이밍 앤 쉐이밍(Naming and Shaming: 공개적인 비행 폭로)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첫 번째 포럼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이 갖는 어려움, 정책 추진의 필요성, 그리고 주요한 정책 방향 등을 토론하였다.

#### (2) 2차 포럼: 문화다양성 관련 제도와 서울시 조례

2차 포럼은 연구진이 문화다양성 관련 법제도 및 정부 문화다양성 기본계획(안), 서울시 문화다양성 지역현황 등에 대해 발제하고, 문화다양성 대상,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현황 및 개정방안 등에 대해 토론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먼저 문화다양성 대상과 관련해서는 현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대해 논의하였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을 기본영역과 환경영역으로 나누어 대상을 분류하고 있다. 기본영역은 민족, 국적, 성별, 장애, 성적지향, 세대 등 귀속지위를, 환경영역은 종교, 소득, 혼인, 전통, 지역, 예술취향 등 획득지위를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문화체육관광부, 2017b). 이에 대해 김규원 위원은 문화다양성 대상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는 "사람이 아니라 활동을 중심에 두고 구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수자는 고정된 것이 아닌 상대적 개념으로, 처한 위치-관계에 따라 달라질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김규원 위원은 "유네스코가 문화다양성을 대상이 아니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며 활동 중심의 구분법을 제시했다.

다른 한편, 문화다양성 영역에 예술영역(장르)과 전통문화 영역을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둘 다 취약장르로 문화체육관광부 문화다양성 영역 내에 포함되어 있지만, 이 두 영역을 포함시킬 경우 모든 예술영역이 문화다양성에 포함될 수 있어, 대상범위가 넓다는 점에서 참석 위원 모두 반대의견을 냈다.

문화다양성 조례에 대해서는 제2조 정의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다. 특히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은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에 대한 것이었다. 이완 위원을 포함한 모든 전문가 위원들은 단서조항으로 제시한 '사회 미풍양속' 개념이 '사회통념'이라는 일반성을 규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문화다양성

을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제기했다. 다양성의 문화적 표현이 '사회 미풍양속'이라는 통념의 개념에 의해 법적으로 규제될 수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위원들은 '사회 미풍양속' 대신 '표현의 자유'를 넣자는 의견을 제시했다. 2017년 발생한 블랙리스트 사태로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이 강조되었고, 문화다양성이란 본질적으로 다양한 정체성을 지닌 소수의 표현을 중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례 제15조(권고)에 있는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의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한 시장의 권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이완 위원은 이 조항을 활용해 서울시 주요정책과 산하기관에 문화다양성 침해사례가 없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며, 오사카시 혐오표현 규제 조례를 근거로 들었다. 오사카시는 혐오표현 조례를 통해 혐오발언 등을 규제한다는 것이다. 동 조례는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있다.

#### 시례: 일본 오시카시 혐오표현 규제 조례 제정

- · 오시카시는 일본 지자체 중 처음으로 혐오표현 규제 조례를 제정하고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조례는 혐오표현(hate speech)이 개인의 존엄을 해치고 차별의식을 유발할 염려가 있음을 감안해 시(市)가 취하는 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에 따라 시민 등의 인권을 옹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이를 위해 조례는 혐오표현을 스인종 또는 민족에 관한 특정의 속성을 가지는 개인이나 집단을 사회로부터 배제하는 것, 스특정인 등의 권리 또는 자유를 제한하는 것, 스특정인 등에 대한 증오혹은 차별의식 또는 폭력을 부추기는 것을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 등으로 규정하였다(류지성, 2016).
- · 조례는 시장 소속으로 <혐오표현심사위원회>를 두고, 혐오표현에 관한 신고가 들어오면 심의를 통해 규제하고, 해당 사람과 단체 이름을 공표하도록 했다. Naming & Shaming을 적용한 것이다. 심의 및 공표절차는 다음과 같다. "피해접수 → 전문가 심사 → 확인절차 → 확산방지 및 조치 → 사람, 단체 이름 공표"(이완, 2017에서 재인용).
- ·조례 제정 이후 오시카시장은 인터넷에 올린 영상물을 내리도록 권고해, 실제 영상을 삭제하는 성과를 거뒀다.<sup>29)</sup>

<sup>&</sup>lt;sup>29)</sup> 한국경제, 2017.04.10일자, "일본 오사카시, 혐한 동영상 첫 식제 조치...혐한시위억제조례 집행".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1088848(최종검색일 2018.08.01.)

#### (3) 3차 포럼: 문화다양성으로서 장애와 인종민족

3차 자문회의는 2018년 2월 12일에 개최되었다. 3차 자문회의에서는 '다양성으로서 장애의 이해'(주윤정)와 '아시아문화연대의 문화다양성 사업 사례와 한국의 차별양상'(이완)을 발제하고, 우리나라에서 나타나는 차별양상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개선 방안과 이주민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정책방안 등을 논의하였다.

주윤정 위원은 문화다양성 범주에서 장애인에 대해 접근할 때는 사회적 약자로서 접근성이나 이동권 보장에 대한 사회적 배려도 필요하지만, 다른 조건으로 살아가는 타자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장애인은 그저 약자가 아니다. 그들은 주어진 조건에서 다르게 보고 느끼며 생활한다. 때문에 장애인 예술은 그저 약자의 산물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특수한 환경으로 얻어지는 독특한 문화적 산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 주유정 위원의 생각이다.

때문에 그는 시설중심 정책이나 장애예술을 분리하는 정책에 대해 반대한다. 사회적인 접촉면을 늘려 다양한 체험 속에 다양한 예술이 형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 예로 일본의 '하나아트센터'를 제시했다. 일본 '하나아트센터'는 일본 장애인 예술창작공간이자 지역커뮤니티 센터로, 마을 주민들과의 일상적 교류 속에서 생활하며 예술 활동을 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 [사례] 일본 하나아트센터와 굿잡센터

일본 나라현 하나아트센터(민들레집)는 에이블 아트<sup>30)</sup> 운동이 시작된 곳으로 유명하다. 센터에는 장애인이 예술활동을 할 수 있는 회화실, 도예실, 직조실 등이 있다. 또한 갤러리가 있어 상시적으로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이 직접 운영하는 카페는 지역사회 사랑방 역할을 한다. 하나아트센터는 2016년에는 '굿잡센터'라는 공간을 만들어, 장애인이 직접적인 예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자료: 주윤정, 2018.2.12., 서울연구원 전문가포럼 "다양성으로서의 장애의 이해" 발제 자료에서 발췌

[그림 4-1] 하나아트센터(좌), 굿잡센터(우)

이완 위원은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차별은 서구사회의 인종차별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서구사회에서 인종차별은 백인, 흑인, 황인을 차별하는데, 우리나라는 같은 동양인인 일본인과 태국인을 차별하고 심지어 같은 국적을 갖고 있더라도 직업계급에 따라 차별한다는 것이다. 때문에 그는 다른 나라에 비해 이주민과 거주민 간 교류를 통해 이해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그는 그 예로 부천 '강남시장' 마을축제를 든다.

부천 '강남시장' 마을축제는 이주민과 거주민이 교류하는 축제로, 초기 이주민과 거주민의 교류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러나 이주민과 주민이 함께 참여 하는 예술취미공동체를 만들고 축제를 시장상인회 구성원들과 이주민들이 함께 기획하면서 상인과 주민들의 인식이 변했다고 한다. 상호교류와 체험이 인식을 변화시킨 것이다. 이에 이완 위원은 다양한 교류와 체험만이 문화다양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말한다. 소수자에 대한 보호도 중요하지만, 소수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문화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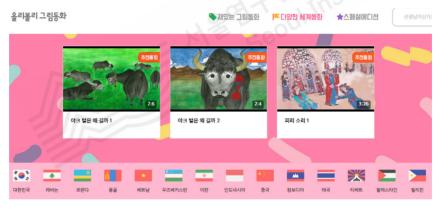
자료: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홈페이지(http://asiansori.org/ 마지막 검색일 2018.8.1.)

[그림 4-2] 부천 강남시장 마음축제

<sup>30)</sup> 에이블 아트(Able art)는 장애가 있는 시람이 무능력하거나 불가능한 존재가 아니라 예술을 통해 그들만이 할 수 있는 또다른 가능성을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 용어다. 일본의 대표적인 장애예술 운동단체인 '민들레의 집'(popo.or.jp)은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작품을 모아 전시하는 전람회를 개최하면서 전람회의 타이틀을 <에이블 아트>라 정했고, 그 이후 장애인의 예술 활동을 지원하는 NGO를 조직하며 '에이블 아트'라 명명했다(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에이블 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 사회평론).

다른 한편, 현재 학교에서 진행되는 다문화교육에 대해서도 문제를 지적했다. 현재의 다문화 교육정책을 보면 "다문화가정→문제로 인식→관리 필요→지원"이란 식의 구조가 강하다는 것이다. 교육 내용 또한 다른 나라의 민속 문화를 소개하는 방식으로만 진행된다. 이런 일방식 교육은 정상적인 이해를 왜곡하는 것으로, 이완 위원은 이주노동자, 난민 문제 등을 토론하고, 해당 주체들의 삶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교육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그는 그 예로 <다음세대문화재단>이 진행했던 교육사례를 예로 든다.

< C다음세대문화재단>은 〈주)다음커뮤니케이션> 주주 및 임직원들의 기부로 2001년 9월 설립된 비영리 법인으로, 문화다양성 교육과 관련한 사업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 이 중 대표적인 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한 '올리볼리 그림동화'다. 이제까지 접하기 어려웠던 나라들의 동화를 플래시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해 인터넷으로 제공한다.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글로벌 시민으로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감수성을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자료: 올리볼리 그림동화 홈페이지

http://ollybolly.org/?fwp\_cartoon\_new\_or\_pop=new(마지막 접속일 2018.08.06.)

[그림 4-3] 올리볼리 그림동화

이완 위원은 이주민 등 소수자의 사회적 기여에 대한 홍보에 대해서도 제안하였다. 이완 위원에 따르면, 2017년 <UN 사회권규약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차별행위에 대한 권고'를 하며 "이주민이 한국 사회에 기여하는 부분을 홍보하라"고 권고하였다고 한다. 차별행위 금지에 중점을 두기보다 이주민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 포럼 위원들은 우리 스스로 다양성을 포용하고 그 가치를 존중하는

방향으로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UN 사회권규약위원회의 대한민국 4차 정기보고서에 대한 최종 견해(2017)

C. 주요 우려 및 권고사항 중 문화다양성

65. 위원회는 당사국 인구 중 다문화주의의 수용 정도가 낮다는 것에 우려한다. 위원회는 외국인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조치를 인지하면서도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정책이 부족하다는 점을 우려한다(제15조).

- 66. 위원회는 다음을 당사국에게 권고한다:
  - (a) 외국인에 대한 편견 해소를 포함하여 인구의 문화다양성의 가치를 장려할 것
  - (b) 문화적 다양성이 받아들여지는 정도에 관하여 취한 조치의 영향을 모니터링할 것

### (4) 4차 포럼 : 문화다양성 사업의 현황과 방향

4차 포럼은 2018년 2월 26일에 개최되었다. '문화다양성 이해하기'(최혜자)와 '무지개다리 사업 사례 및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점'(나기석)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서울시 문화다양성 접근방식, 표현의 자유 허용 범위, 이주민 집단거주 지역에 대한 정책방안,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우선 최혜자 위원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접근방식에 대해 네 가지를 제안했다. 첫째, 유럽과는 다른 국내 환경에서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의 변화과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예컨대 캐나다의 경우 다문화주의를 인식하는 데 인종다문화주의 (1970년대)에서 평등다문화주의(1980년대), 시민다문화주의(1990년대), 통합다문화주의 (2000년대)로 변화하였다고 한다. 이에 우리 또한 하나의 발전 단계 속에서 점차 다양성의 범위를 확대해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국가 간 통상(通商)에 초점을 맞춘 문화다양성 국제 협약과 사회공동체 내의 문화다양성 정책을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은 통상의 문제가 아니라 도시라는 공동체 안에서 여러 주체가 함께 살아가는 것을 중심으로 접근해야 한다. 때문에 셋째, 서울시 문화다양성은 시민 속에 다양한 삶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며, 넷째, 그 관점에서 도시의 언어와 이미지를 다양하게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 예로 뉴욕의 '장애인 마크 교체 프로젝트'를 들었다. 최근 뉴욕은 장애인 마크를

역동적인 표현으로 바꾸고 있다고 한다. 뉴욕의 디자이너 사라 헨드렌(Sara Hendren)이 주창한 것으로, 그는 1968년 국제표준화기구(ISO)가 만든 기존 장애인 마크는 너무 수동적이고 무기력하기 때문에 이를 역동적이며 능동적인 모습으로 재디자인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그는 기존 장애인 표지판 위에 새로운 장애인 마크를 붙이는 게릴라 프로젝트를 진행하였고, 공론화 끝에 시민들의 동참이 이루어져 2014년 뉴욕주는 46년 만에 사라 헨드렌이 제안한 장애인 마크를 공식적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것이다.31) 그는 이처럼 도시의 상징과 표식을 바꾸는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나기석 위원은 최근 미투운동과 관련하여 성폭행, 성추행 등의 문제는 개인의 윤리문제를 넘어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근대적 성문화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차원에서 영화 '청년경찰'이나 '범죄도시' 또한 우리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성의 태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했다. 우리의 일상적인 태도 안에 다양성에 대한 몰이해와 무시, 편견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다. 그는 이와 같은 여러 사례의 제시를 통해우리 사회에 다양성을 침해하는 문화가 만연해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에 포럼 위원들 사이에서는 이를 '표현의 자유로 볼 것인지', '문화다양성 침해사유로 볼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과정에서 이완 위원은 방송이나 미디어의 문화 다양성 침해에 대한 심의기능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주윤정 위원은 미디어의 문

<sup>31)</sup>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공식블로그, "편견을 바꾼 사소한 디자인-뉴욕 장애인 마크 교체 프로젝트" https://pcnc11.blog.me/220657200276(2018.8.1. 접속)

화다양성 침해에 대한 심의기능과 함께 장애, 이주민 등 다양한 정체성의 사람들이 미디어에 노출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사례]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속 중국동포 혐오 논란

중국동포가 범죄자로, 대림동이 우범지대로 묘사된 두 영화(<청년경찰>, <범죄도시>)로 인해 지역에 서는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자료: 경향신문, 2017.9.10일자, "영화 '청년경찰' 상영반대, 중국동포들 집회 "우리는 거지도 범죄자도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9101725011(마지막 검색일 2018.08.23.)

#### [사례] 방송매체에서 차별적 혐오 표현 심의(방속통신위원회)

- · 우리나라는 방송법 제33조의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방송 매체에서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을 조장하거나 특정 인종을 조롱 모독하는 표현을 심의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한 방송시업자를 「방송법」 제100조에 따라 제재조치하고 있다.
- ·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에 따라 인터넷상의 특정 인종에 대한 편견 조장, 조롱-모독 등의 표현을 심의하고 있다.

### [표 4-3] 최근 5년간 특정 인종에 대한 차별적 혐오 발언 심의 현황

구분	2012	2013	2014	2015	2016	계
법정제재	0	3	0	0	1	4
행정지도	2	1	7	3	2	15
계	2	4	7	3	3	19

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1조(문화다양성 존중) 적용

자료: 2017, 「인종차별철폐협약 제17차·18차·19차 국가보고서」

또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모든 정책분야에서 지켜야 하는 지침으로 갈 것인지'(가이드라인형), '독립된 사업 영역으로 갈 것인지'(독립사업형)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사업보다는 가이드라인 중심으로 정책이 이루어져 모든 정책분야에서 다양성이 제고되어야 함을 주장했다.

# (5) 5차 포럼 :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

5차 포럼은 2018년 3월 13일에 개최되었다. '문화다양성 영역과 정책 분류, 정책방향'(김 규원)에 대한 발제가 있었고, 문화다양성 구분기준, 문화다양성 도시디자인 정책 방안,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측정 지표의 중요성 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김규원 위원은 문화다양성 정책을 △규제정책, △상징정책, △구성정책, △분배정책 등 4가지로 분류하였다. '규제정책'은 인권차원에서 개인의 차별을 금지하거나 공공영역에서 문화다양성을 반영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이다. '상징정책'은 문화다양성 인식개선을 위한 캠페인이나 교육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성정책'은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민간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마련 등과 같이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고, '분배정책'은 프로그램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등 문화다양성 촉진을 위해 사회적 자원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바탕으로 김규원 위원은 현재 정책이 구성정책과 분배정책에 집중되어 있음을 말하며, 상징정책과 규제정책이 함께 펼쳐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어 그는 문화다양성 영역을 △권리, △취향, △기회 등 3가지로 구분하였다. '권리' 영역은 인권과 관련된 문제로 불관용 원칙을, '취향' 영역은 문화적 표현과 관련된 것으로 '표현의 자유'를, '기회' 영역은 소멸의 위험을 갖고 있는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이라 명명하였다. 권리 영역과 취향 영역을 위해서는 규제정책과 상징정책이 필요하고, 기회영역을 위해서는 분배정책이 필요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토론과정에서 최혜자 위원은 단계별 설정의 필요함을 언급했다. 문화다양성의 허용 범위를 어디까지 둘 것인가를 고민하여 현 단계에 맞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주윤정 위원은 무엇보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정확한 실태를 알아야만 적절한 정책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투입해 정량적 조사와 더불어 정성적 조사가 실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참여 위원들의 주장이었다.

### (6) 6차 포럼 : 1차 델파이 조사결과 및 2차 방향 토론

이상의 5차 포럼을 바탕으로 1차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어 2018년 5월 31일 6차 포럼을 개최했다. 개최목적은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공유 및 2차 델파이 조사 설계를 위한 토론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본 연구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 2\_델파이 조사 결과

# 1) 조사 설계

본 연구진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마련을 위해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목 적은 현재 제정된 조례의 적절성을 검토하고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방향 등을 마련하 기 위한 것이었다.

조사대상은 이주민관련 연구자 및 문화사업경험자, 소수자 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자 및 사업경험자, 문화정책전문가, 문화다양성 조례 발의 의원 등으로 구성하였다.

조사는 총 2단계로 진행되었다. 1단계 조사는 기본적인 방향과 의견을 묻는 내용으로 진행되었고, 2단계 조사는 1단계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정책방향을 결정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1차 조사는 2018년 4월 18일부터 2018년 5월 2일까지 15일간 이루어졌으며, 2차 조사는 2018년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진행되었다. 조사방법은 온라인을 통한 설문 방식이었다.

설문지 작성을 위해 본 연구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6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과 함께 총 5차례 회의를 진행하였다. 이어 1차 조사 후 2차 조사를 위해 또 한 번의 회의를 개최했다.

1차 조사내용은 ①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절성 및 중요도, ②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적절성 평가 및 개정방안, ③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방향의 적절성, ④ 서울시 문화다양성 집단 분류체계 및 집단별 정책방안 등 크게 4가지였다. 이어 2차 조사에서는 1차 응답내용을 바탕으로 ①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방안에 대한 의견의 적절성, ②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 시 고려 사항 및 정책방향의 적절성, ③ 서울시문화다양성 집단 분류체계 관련 제안의견의 적절성 등을 설문하였다. 조사내용은 [표 4-4]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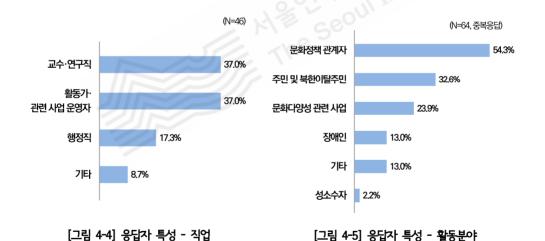
[표 4-4] 델파이 조사내용

	구분	1차 조사내용	2차 조사내용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절성 평가 (5점 척도)	
1	1 정책 판단	문화다양성 관련 긍/부정적인 서울시 정책 (주관식)	-
		서울시 문화정책 중 문화다양성 정책중요도 (순위)	
2	조례	조항별 적절성(5점 척도) 및 개정 의견(주관식)	제안된 개정 의견의 적절성 여부
Ζ	소네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 이행 정책의 중요성 및 시급성	1차 조사결과의 적절성 여부
		<문화다양성법>상 문화다양성 정의 사용의 적절성(5점 척도)	<문화다양성법>상 문화다양성 정의 사용 찬반 여부
3	개념 및 정책방향	서울시 차원의 문화다양성 개념 도출 시 중요 사항	1차 조사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한 고려 필요성
		연구진이 제시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적절성, 중요성, 시급성	1차 조사결과의 적절성 여부
	분류체계	연구진이 제시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의 적절성과 수정의견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수정의견의 적절성 여부
4	및 집단별 정책방안	문화다양성 집단별 정책 방안(주관식)	문화다양성 집단별 정책방안 우선순위, 지원이 우선되어야 하는 집단
5	정책 시행 시 우선순위	-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시행 시 우선순위

# 2) 응답자 현황 및 특성

조사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주민 관련 연구자 및 문화사업경험자, 소수자 관련 연구자 및 활동가,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자 및 사업경험자, 문화정책전문가, 문화다양성 조례 발의 의원 등 관계자 총 56명을 선정하였다. 이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총 46명(85.1%)이 응답하였다. 이어 2차 조사는 1차 응답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이 중 43명이 응답하여 93.5%의 높은 응답률을 보여주었다.

1차 조사를 기준으로 응답자의 주요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성(60.9%) 이 여성(30.1%)보다 많았고, 연령은 '40대'가 58.7%로 가장 많았다. 32) 직업은 '교수연구 직'과 '활동가·관련 사업운영자'가 각각 17명(37.0%)으로 가장 많았고, 활동분야(중복응답)는 '문화정책'(54.3%), '이주민·북한이탈주민'(32.6%),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23.9%), '장애인'(13%) 순으로 나타났다. '성소수자' 분야는 1명이었으며, 기타 분야로는 미디어, 문화갈등 관련 연구, 문화기획, 현장조사 및 분석경험자, 지역문화 등이 있었다.



<sup>32)</sup> 이어 '50대' 30.4%, '30대 이하' 10.9%로 나타났다.

# 3)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판단

### (1)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도

서울시 문화정책 중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을 알아보기 위해 문화정책분야<sup>33)</sup>를 제시하고 1위부터 7위까지 우선순위를 질문하였다. 조사 결과, 현재도 중요하지만(2위), 미래에더 중요할 것(1위)이라는 응답을 얻었다. 응답자 대부분이 문화다양성과 관계된 사람들로 편견이 있을 수 있지만, 이 결과는 2017년 이상열·정종은의 연구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과제」(한국문화관광연구원)와 그 궤를 같이 한다. 이 연구에서는 문화정책의 우선순위를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하여 질문했는데, 문화다양성이 중·장기 차원에서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다양성이 향후 중요한 문화정책의 방향이 될 것임을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표 4-5] 서울시 문화정책 중요도 우선순위

		U.
	현재 중요도	향후 중요도
문화다양성정책	2위	1위
예술정책	4위	3위
전통문화정책	6위	6위
문화여가정책	3위	2위
문화예술교육정책	1위	3위
국제문화교류정책	7위	5위
도시디자인정책	5위	7위

주: 순위계산은 순위별 응답 수×순위요율(순위요율의 경우 1위는 7점, 7위는 1점으로 각 순위마다 1점차)의 합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매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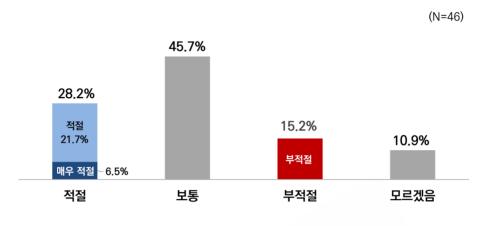
# (2)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평가

### ① 정책의 적절성 평가

서울시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펼쳤다고 판단하는지 묻는 질문에 '보통이다'라고 답한 응답자가 45.7%(21명)로 가장 많았다. '적절하다'(적절+매우 적

<sup>33)</sup> 서울시 문화정책분야는 서울시 문화본부의 조직도를 참고하여 문화다양성, 예술, 전통문화, 문화여가, 문화예술교육, 국제문화교류, 도시디자인 분야 등으로 제시하였다.

절)고 답한 응답자는 28.2%(13명), '부적절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5.2%(7명)였다. 10.9%(5명)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그림 4-6]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절성

### ②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중 긍정적/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정책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하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서울시 문화다양성 사업을 6가지 유형34)으로 분류하여 각 사업을 제시한 다음 해당 정책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긍정적', '부정적' 두 가지로 나누어 설문하였다. 그 결과 가장 긍정적으로 인식한 사업유형은 '①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10명)이었다.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시민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반대로 이 사업유형을 부정적으로 인식한 응답자도 5명 있었는데, 그 이유는 '사업취지가 중요하지만 축소된 형식으로 추진'하고 있고, '아직은 특별한 성과가 없기 때문'이었다.

가장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⑥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 증진사업'(6명)이었다. 그 이유는 '국제교류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크의 활용 계획이 모호'하고, '특정문화에 집중된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반대로 '일반시민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인식한다는 응답도 있었다.

<sup>34) 6</sup>가지 사업유형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제시에 따른 것으로, ①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②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문화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사업,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사업, ④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사업,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⑥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 증진사업 등이다.

[표 4-6] 긍정적/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단위: 명)

시업유형	긍정적으로 인식	부정적으로 인식
① 그미이 므쵸너이서 이시	4(6)	3(2)
① 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가치확산 사업	·문화다양성 정책에서는 시민 인식개선이 우선되어야	· 축소된 형식으로 추진 · 아직은 특별한 성과 없음
ೂ □하다하기하 하대 미	4(4)	3(0)
② 문화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기본권 신장 시업	·다양한 계층 간 표현을 중시	· 소수자에 대한 진정한 배려 없음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3(5)	1(2)
의 문의 전 중심에 성경 및 갈등해소 사업	·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소수자 대상 사업이 있어서	· 우리 문화를 강요하는 일방적 방 식의 사업
④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	2(5)	0(1)
계 구축 사업	· 정책추진의 의지가 있어 보임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4(3)	3(0)
정책개발 사업	·실태파악이 가장 중요한 사안	·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고 아직은 사업내용도 부실함
	1(1)	3(3)
⑥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다 양성 증진사업	·서울국제음악콩쿠르 등 일반시 민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 는 기회 제공	· 국제교류를 통해 형성된 네트워 크의 활용계획 모호 · 특정문화에 집중된 것도 문제

주: () 안 숫자는 해당 시업유형에 해당하는 시업명을 응답한 응답자 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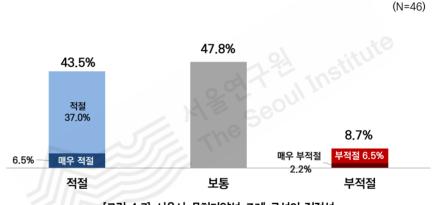
응답자 중에는 사업유형이 아닌 사업명으로 답한 응답자가 있었는데, 긍정적 사업으로 언급된 사업은 '문화다양성 조례 제정'(4명), '서울 시민문화권 선언'(3명), '장애인-비장애인 마라톤 대회'(2명), '글로벌 센터 운영'(2명), '문화영향평가'(2명), '마을예술창작소'(2명) 등이었다. '서울 국제음악콩쿠르'(2명), '지구촌나눔한마당 축제', '시민예술동아리대제전', '세계문화도시포럼 참가',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문화다양성 조례', '중국동포사회통합/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서울김장문화제'(이상 각 1명) 등은 부정적인 응답을 얻었다. '서울 국제음악콩쿠르'는 "문화다양성과 관련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지구촌한마당'은 "다문화축제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문화다양성조례'는 "성소수자가 배제되었다''란 이유로, '서울김장문화제'는 "외국인에게 한국문화를 강요한다''는 이유로 부정적 의견이 제기되었다.

# 4)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적절성 평가 및 개정방안

앞서 전문가 포럼에서 보듯, 조례에는 여러 가지 논란 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본 연구진은 조례구성의 적절성 및 문제되는 조항과 개선방향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조사하였다.

# (1) 조례 전체 구성의 적절성 평가

우선 조례 전체를 제시한 후 '조례 구성의 적절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보통'이란 의견이 47.8%를 차지하였고, '적절하다'(적절+매우 적절)는 응답이 43.5%, '부적절하다 (부적절+매우 부적절)'는 응답이 8.7%를 차지해 대체적으로 적절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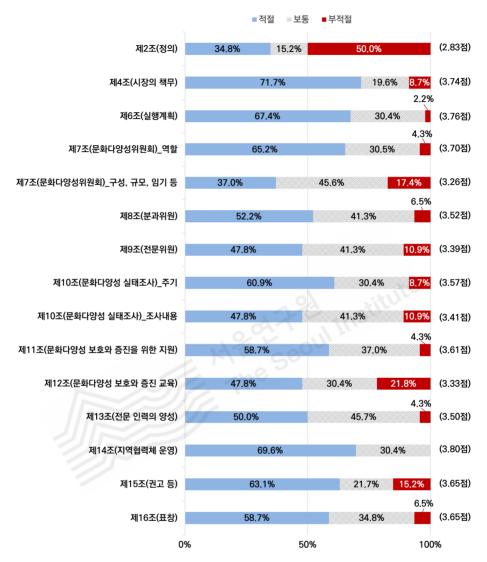
[그림 4-7]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구성의 적절성

# (2) 조항별 적절성 평가 및 보완·수정 의견

'조항별 적절성'에 대해 설문한 결과 대부분의 조항에 대해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았다. 다만, 제2조 정의와 제12조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높게 나타났다.35) 이에 이 세 항목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1차조사에서 나타난 의견을 중심으로 2차 조사에서 조례의 개정방향을 물었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sup>35)</sup> 정의에 대해서는 50.0%,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에 대해서는 21.7%, 문화다양성위원회에 대해서는 17.4%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N=46)



주: 괄호 안 점수는 평균(5점 만점 기준)

[그림 4-8]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적절성 평가

# ① 제2조(정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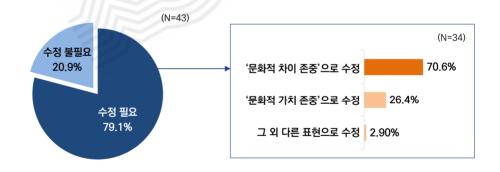
제2조(정의)는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하에 문화다양성을 개념화하고, 그 범위를 규정하고 있다.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

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가 그 내용이다.

제기되는 문제는 '문화다양성'을 '문화적 관용'이란 개념으로 대체하여 정의할 수 있는냐하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이란 다양성을 기초로 문화가 형성되는 기본원리를 말하는 것인데, '문화적 관용'이란 다른 문화를 포용해야 한다는 것을 지칭하는 개념이다.36 따라서 '문화적 포용'으로 문화다양성을 대체하는 것은 공존을 바탕으로 한 문화 구성의 원리로서 문화다양성을 제한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상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단서조항이다. 문화다양성의 허용범위를 '사회 미풍양속' 범위로 제한하는 이 조항은 문화다양성의 범위를 '정상성'으로 제한할 뿐만 아니라 그 범위마저 모호하여 오히려 문화다양성을 해칠 수 있는 문제를 품고 있다. 이에 1차 조사에서 76.1%(35명)가 이 조항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제시했다. 주요하게 문제가 된 항목은 ②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 ⑤ 국적, 민족 등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 ②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라 표현 등 3가지다.

# ⓐ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79.1%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수정방향으로는 '문화적 차이 존중'(70.6%)이 가장 많이 제시되었다.



[그림 4-9]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 수정 필요성(좌) 및 수정 시 가장 적절한 표현(우)

<sup>36)</sup> 사전적 의미로 '관용'은 남의 잘못을 너그럽게 받아들이거나 용서함을 뜻한다(표준국어대사전).

### (b) 국적, 민족 등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

무화다양성의 대상을 규정한 '국적, 민족~(등)'의 표현에 대해서는 '성적지향'을 추가하자 는 의견(4명)과 '성별'을 '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2명), '경제적 능력'의 추가에 대한 의견 (2명) 등이 제시되었다. 그 외 '세대'를 '연령'으로 수정하자는 의견, '학력'을 '사회적 신분' 또는 '고용형태'로 수정하자는 의견.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장애'로 수정하자는 의견 등 이 제시되었다.

[표 4-7]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 관련 보완・수정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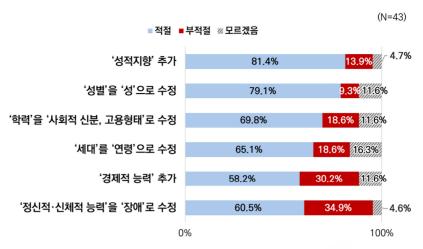
응답 수 4 2 2

(중복응답)

세부내용 '성적지향' 추가 '성별'을 '성'으로 수정 '경제적 능력' 추가 '세대'를 '연령'으로 수정 1 '학력'을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로 수정 1 '정신적·신체적 능력'을 '장애'로 수정 1

이에 1차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차 조사를 통해 수정의 적절성을 물은 결과, '성적지향 추가'와 '성볔'을 '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80.0% 정도가 적절하다고 응답하 였다. '학력'을 '사회적 신분 또는 고용형태'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세대'를 '연령'으로 수정 하자는 의견 또한 69.8%. 65.1%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경제적 능력' 추가 의견과 '정 신적·신체적 능력'을 '장애'로 수정하자는 의견은 각각 58.2%, 60.5%가 적절하다고 답했 다. 그러나 반대의견 또한 각각 30.2%와 34.9%로 나타나, 다른 항목에 비해 논란의 여 지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성별' 혹은 '성'에는 성적 정체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성적지향'을 별 도로 추가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견(2명)이 제시되었다. 또한 '성'이라는 사전적 의미가 이미 육체적 구별을 의미하고 있어. "성별'이란 표현이 적절하다"는 의견(1명)도 있었다.



[그림 4-10]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 관련 수정 의견의 적절성

# ©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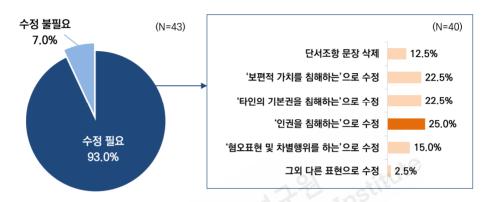
1차 조사 결과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10명), '오히려 소수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다'(10명)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단서조항 삭제'(9명)와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4명) 또는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3명) 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8]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의 부적절 이유 및 보완·수정 의견

(중복응답)

구분	세부내용	응답 수
	사회 미풍양속의 정의와 기준 불명확	10
부적절 이유	오히려 소수자를 배제할 가능성이 있음	10
111	문화다양성 가치와 상충	8
	단서조항 삭제 필요(삭제 언급)	9
삭제 및 수정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으로 수정	4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으로 수정	3
1 0	'인권을 침해하는' <u>으로</u> 수정	1
	'혐오표현 및 차별행위를 하는'으로 수정	1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사 결과,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3.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1차 조사에서 제시된 의견을 중심으로 대안을 질문한 결과, '인권을 침해하는'(10명)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25.0%로 가장 많았고,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과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각각 22.5%(9명)로 나타났다.



[그림 4-11]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 수정 필요성(좌) 및 수정 시 가장 적절한 표현(우)

### ②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는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한 대상과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조례에서 정한 교육대상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등이다. 이들을 대상으로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실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 그 밖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등을 교육하도록 되어 있다.

####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b)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1차 조사 결과, 제12조에 대해 45.7%(21명)가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수정이 필요하다고 제시된 항목은 ② 교육대상, ⑤ 교육내용 및 방법, ⓒ 제2호에서 제시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등 3가지였다. 각 항목별 조사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 ⓐ 교육대상

1차 조사 결과 교육대상을 '시민으로 확대'하거나 대상에 '시민을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각각 4명)되었다. 그 외 '청소년 대상 특화 및 확대 필요'(2명), '공무원 및 공무직에 종사하는 사람'(1명), '학부모'(1명),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 누구에게나'(1명)로 표현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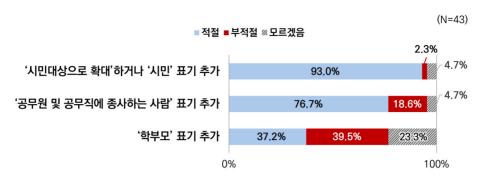
특히 청소년과 관련돼서는 '공교육에 문화다양성 교육을 담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2명) 이 제시되었다. 또한 「경상남도 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등을 참조하여 청소년 대상 교육을 특화 및 확대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 **'경상남도 교육청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 (2017, 12, 28 시행)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경상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내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그 보호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도내 학교에서 문화다양성에 기반한 교육과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육대상을 '시민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시민 표기를 추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93.0%로 압도적으로 높게 나왔다. '공무원 및 공무직에 종사하는 사람'을 표기하자는 의견도 76.7%로 높게 나왔다. 이에 반해 '학부모를 추가하자'는 의견은 '부적절하다'는 판단(39.5%)과 '적절하다'는 판단(37.2%)이 비슷하게 나왔다. 교육대상을 '시민'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확대하는 것은 찬성이나. '학부모'로 특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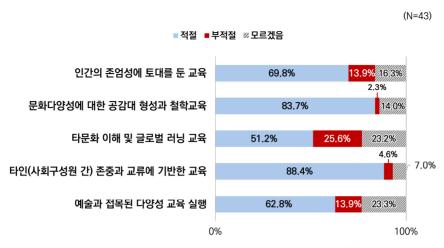


[그림 4-12] 문화다양성 교육대상 추가의견의 적절성

# ⓑ 교육내용 및 방법

1차 조사 결과, 현 조례에 제시된 교육내용 및 방법은 "학습효과가 의심되며, 자칫 도덕교육에 머무를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대안으로 제시된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 토대를 둔 교육',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철학교육', '타문화 이해 및 글로벌 러닝교육', '타인(사회구성원 간) 존중과 교류에 기반을 둔 교육' 등(각각 1명)이었다. 또한 '예술과 접목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다.

1차 조사에서 대안으로 제시된 4가지 방향을 놓고 2차 조사를 통해 설문한 결과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답을 얻은 가운데, '타인(사회구성원 간) 존중과 교류에 기반한 교육'(88.4%)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철학교육'(83.7%)이 다소 높은 지지를 받은 반면, '인간의 존엄성을 토대로 한 교육'과 '타문화 이해 및 글로벌 러닝 교육'은 다소 낮은 지지를 받았다. '예술과 접목된 다양성 교육 실행'에는 62.8%가 '적절하다'는 응답을 보였다. '타인을 존중하는 교류에 기반을 둔 교육'과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을 높여가는 교육'이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주었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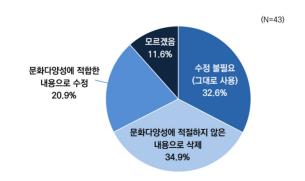


[그림 4-13] 문화다양성 교육내용 관련 제안 의견의 적절성

## ⓒ 2호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1차 조사 때부터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대해서는 '문화다양성과 맞지 않는 개념'(1명)이란 의견과 '문화다양성 범위를 오히려 좁히는 것'(1명)이란 의견이 있었다. 또한 '어떤 기준으로 선정해 교육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1명)는 의견과 '문화다양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하거나 삭제할 필요가 있다'(4명)는 의견이 나왔다.

이에 위의 의견을 바탕으로 '수정 또는 삭제'에 대한 의견을 물은 결과 '수정 또는 삭제'의견'이 55.8%로 높게 나왔다. 삭제의견이 34.9%였고, 수정의견이 20.9%였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11.6%였고, 그대로 사용하자는 의견이 32.6%였다.



[그림 4-14] '지역의 다양한 문회와 민속' 교육내용 관련 수정제안 의견에 대한 판단

### ③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_규모, 구성, 임기 등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는 문화다양성위원회의 역할(1항), 규모(2항), 구성(4항), 임기 (6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항의 적절성을 판단하기 위해 1차 조사한 결과, '문화다양 성위원회의 규모와 구성, 임기' 등에 대해 47.8%가 '부적절한 것으로 수정·보완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조례의 조항을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위원회'는 20명 이내의 규모로,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등이 참여하도록 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다.

##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2, 4, 6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 의 장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⑥ 위원의 ⑥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차 조사결과에서 나타난 의견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위원의 임기에 대해 '3년으로 하자'는 의견과 '1년씩 중임하자'는 의견이 나왔다. 위원회 구성에 대해선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당사자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5명)과 '시민 및 청소년의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3명), '지역문화, 생활문화, 교육,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등 문화다양성 관련 분야 담당부서도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5명)이 있었다. 또한 '외부 전문가 비율에 비해 담당부서 등 당연직 비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과 함께 '문화산업, 인권, 성평등, 시민민주주의 등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해야 한다'는 의견(4명)도 있었다.

[표 4-9]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관련 보완의견

세부내용	응답 수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참여 (여성, 장애인, 이주민, 문화소외계층 등)	5
시민 및 청년, 청소년 참여	3
문화다양성 관련 분야의 담당부서 참여 (지역문화, 생활문화, 교육담당,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등)	5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문화산업, 인권, 성평등, 시민민주주의 등)	4

위원회 구성과 임기 중 구성은 전환이 가능하지만, 임기는 가능하지 않다.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 이내로 하며, 연임은 1회에 한하여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조항을 조정하려 할 경우 동조례를 바꾸어야 한다. 이에 위원회 임기는 제외하고, 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만 2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2차 조사 결과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참여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응답이 95.4%로 가장 높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62.7%로 높게 나왔다. 반면, 시민 및 청(소)년의 참여(21.0%)와 다른 분야 담당부서의 참여 (20.9%)는 낮게 나타났다. 당사자와 여러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조가 바뀌어야 함을 보여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에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표 4-10]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시 우선 참여 고려 대상(1+2순위)

(단위: 명(%))

구분	1순위	2 <del>순</del> 위	1+2순위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참여	31	10	41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72.1)	(23.3)	(95.4)
시민 및 청년, 청소년 참여	2	7	9
	(4.7)	(16.3)	(21.0)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	9 (20.9)	18	27
(문화산업, 인권, 성평등, 시민민주주의 등)		(41.8)	(62.7)
다른 분야의 담당부서 참여 (지역문화, 생활문화, 교육담당,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등)	1 (2.3)	8 (18.6)	9 (20.9)
-	43	43	86
합계	(100)	(100)	(100)

### ④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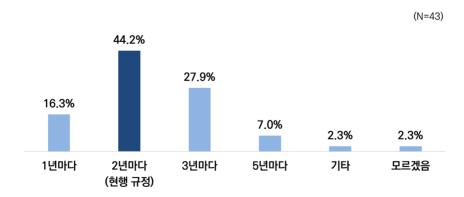
제10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의견이 많았다. 1차 조사 결과, 15명(32.6%)이 '실태조사 주기'에 대해, 17명(37.0%)이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u>@)2년마다 실시</u>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② (⑥)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화경에 관한 사항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실태조사 주기와 관련해 1차 조사에서는 '1년마다'가 4명, '2~3년마다'가 4명, '5년마다'가 2명 나왔다. '1년마다'를 주장한 사람은 "빠른 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라는 이유를 들었고, '2~3년마다'를 응답한 사람은 "현행 2년에서 간격을 1년 정도 더 늘려 충분한 예산과 시간을 확보하여 조사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기타 의견으로는 "실태조사 목적을 명확히 하고 환류과정에 대한 계획을 갖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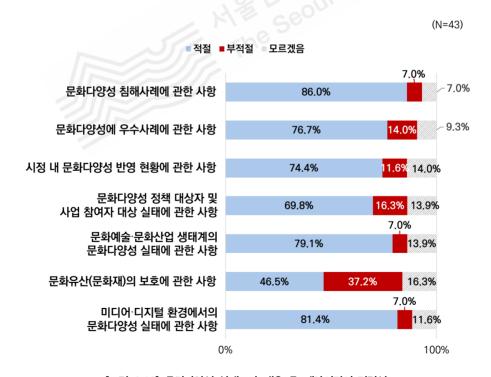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사한 결과, 현행대로 '2년마다 하자'는 의견이 가장 높게 나왔다. 기간을 조정하기보단 2년 단위로 하는 것이 가장 적정함을 보여준 것이라 하겠다.



[그림 4-15] 가장 적절한 실태조사 주기

실태조사 내용에 대해서는 1차 조사 결과, '문화다양성 침해사례에 관한 사항이 추기돼야한다'는 의견(4명)과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자 및 사업 참여자의 실태에 관한 사항이 추가돼야한다'는 의견(6명)이 제시되었다. 이외에도 '문화다양성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시정 내 문화다양성 반영 현황에 관한 사항', '문화예술·문화산업 생태계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문화유산(문화재) 보호에 관한 사항', '미디어·디지털 환경에서 문화다양성성 실태에 관한 사항'이 추가되어야한다는 의견이 각각 1명씩 있었다.

이상의 의견을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1차 조사에서 제안된 내용 중 '문화유산(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6가지 사항에 대해 70.0% 이상이 적절하다고 응답하였다. '문화다양성 침해에 관한 사항'(86.0%)이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미디어·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81.4%), '문화다양성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76.7%), '시정 내 문화다양성 반영 현황에 관한 사항'(74.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문화다양성 정책 대상자 및 사업 참여자 대상 실태에 관한 사항'은 69.8%였고, '문화유산(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사항'은 46.5%만이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그림 4-16]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내용 중 제안의견의 적절성

### ⑤ 그 외 다른 조항에 대한 의견

'제9조(전문위원)'는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중 3명 이내에 전문위원을 둘 수 있고, 전문 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문위원 규모를 3명 이상 5명 이내, 혹은 5명 내외로 확대해야한다'(6명)는 의견과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규정한 대상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하여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제15조(권고)'는 "시장은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혹은 개선을 요청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차별행위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별도 조직이 필요하다'(2명)는 의견과 '권고조항을 규제조항으로 확대해야 한다'(3명)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더불어자칫 각 개인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3명)되었다.

'제12조(전문 인력의 양성)'에서는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과 관련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문 인력에 대한 규정이 모호하다'는 의견(4명)과 '문화다양성 전문 인력이란 개념 자체가 없기에 신규인력 양성보다는 기존 문화 관련 인력이나 활동가를 대상으로 문화다양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재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2명)이 제시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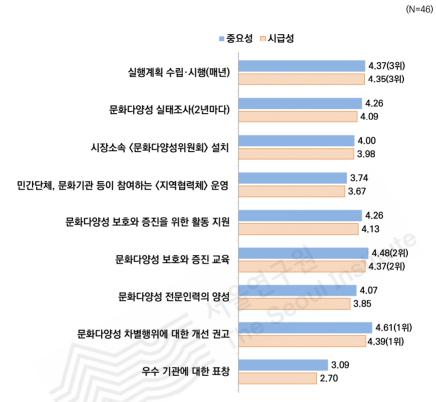
그 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이 집행될 수 있도록 실무기구나 전담기관 신설과 같은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 (3)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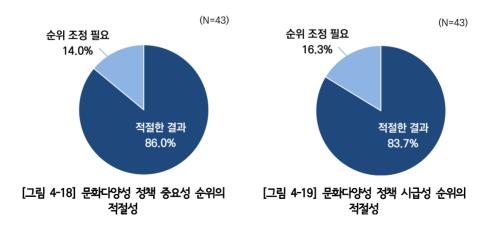
각 조항의 적절성에 대해 조사한 후 문화다양성 구현을 위해 각 조항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설문하였다. 그 결과 1차 조사에서 '문화다양성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가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 다음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과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등의 순이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의 적절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결과, 1차 조사결

과가 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어 '차별행위 개선 권고',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교육',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이 시급하고도 중요한 과제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17] 조례에 명시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 5)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방향

조례의 적절성을 조사한 데 이어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그결과는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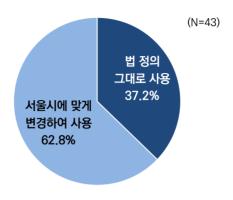
# (1) 서울형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의 필요성 및 정의 시 고려 사항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는 문화다양성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으로 대신한다. 이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으로 인해 문화다양성이 편협하게 이해되고, '사회 미풍양속' 내로 한정된 범위로 인해 오히려 문화다양성을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에 본 연구진은 서울시만의 문화다양성 개념이 필요한지에 대해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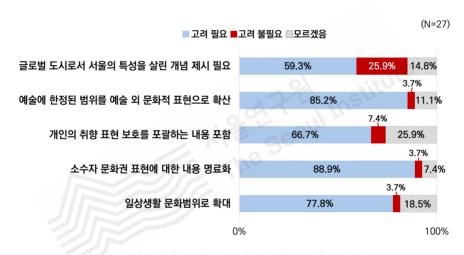
1차 조사 결과, 56.6%가 현 법적 정의를 그대로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은 32.6%, '잘 모르겠다'는 의견은 10.9%였다.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한 의견에는 '말이 어려워 수정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예술의 한정된 범위를 예술 외 문화적 표현으로 확산시켜야 한다'는 의견, '소수자 문화권 표현에 대한 내용을 명료화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고,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특성을 살린 개념을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과 '문화다'양성 개념을 일상생활 문화범위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 '개인의 취향 표현을 포괄해야 한다'는 의견 등도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좀 더 세부적인 방향이 제시되었다. 우선, '문화다양성법에 제시된 개념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묻는 질문엔 1차 조사결과와는 달리 62.8%(27명)가 서울만의 정의를 사용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서울시에 맞게 변경하자고 답한 응답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에서 나온 여러 안들을 제시한 결과, '소수자 문화권 표현에 대한 내용 명료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8.9%로 가장 높게 나왔고, '예술에 한정된 범위를 예술 외 문화적 표현으로 확산하자'는 의견이 85.2%, '일상생활문화범위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77.8%로 나타났다. 그 외 '개인의 취향표현 보호를 포괄하는 내용 포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66.7%,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특성을 살린 개념 제시가 필요하다'는 의견은 59.3%로 나타났다.



[그림 4-20] 문화다양성 법적 정의의 서울시 적용에 대한 판단



[그림 4-21]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다른 한편, 1차 조사 당시 한 응답자가 조례에서 사용하였으면 하는 개념으로 "문화다양성이란 다양한 인종, 민족, 지역, 종교, 장애, 성 등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 및 사회 구성원이 생산하고 발달, 전수해 온 문화유산 및 동시대에 생산하고 전수하고 있는 문화들을 표현하고 진흥, 전달하는 데 있어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을 말하며, 이는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를 제시하였는데, 이 개념의적용적합성에 대해 2차 조사 때 설문한 결과 58.2%가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보통'이 37.2%, '부적절'이 4.6%(2명)로 나타났다. 활용가능한 개념이라는 것이다.

### (2)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이어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진은 전문가 포럼에서 논의된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을 크게 '소수자의 권익보호'. '자기 표현권 보 호', '예술창작, 생산, 보급 및 향유권리 보호', '시민 간 상호이해 도모', '문화다양성 자원 과 요소가 밀집된 지역보전'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이 분류체계의 적절성 및 우선 순위에 대해 질문하였다.

5가지 유형 분류체계에 대해 95.7%는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응 답자는 2명에 불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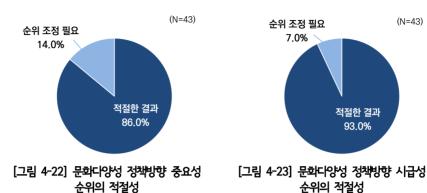
이어 정책 우선수위 파악을 위해 각 유형의 시급성 및 중요도에 대해 조사한 결과 '소수자 의 권익 보호'. '자기 표현권 보호'.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 도모'.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 권리 보호'.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Seoul Institu 시급성과 중요도 순위는 모두 같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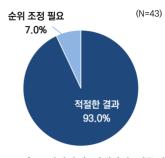
[표 4-1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1차 조사 결과)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시급성 순위	중요도 순위
소수자의 권익 보호(불관용/규제 정책)	1	1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2	2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 권리 보호(촉진/확산 정책)	4	4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 및 융합 도모(포용정책)	3	3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5	5

주: 순위계산은 순위별 응답 수×순위요율(순위요율의 경우 1위는 5점, 5위는 1점으로 각 순위마다 1점차)의 합으로 계산하여 순위를 매김

2차 조사는 1차 조사결과에서 도출된 시급성과 중요도 순위에 대해 '적절성' 여부를 물었 다. 조사결과 중요성(86.0%)과 시급성(93.0%) 모두 '적절하다'는 응답을 얻었다. 소수자 권익보호가 가장 우선되어야 하며, 자기표현권 보호, 시민의 이해 및 융합도모 등이 중요 하다는 것이다.





순위의 적절성

# (3) 서울시 문화다양성 대상 설정

# ① 대상 집단 설정

문화다양성 대상 설정을 위해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문화체육관광부가 2018년 「문 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분류한 12개 영역 중 귀속지위를 중심으로 ① 민족/인종. ② 신체능력(장애), ③ 종교, ④ 성별, ⑤ 나이(세대), ⑥ 성적지향, ⑦ 비주류예술(독립예 술, 대안예술 등) 등 7개 영역으로 분류하여 그 적정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구분	분류영역	
	민족	
	국적	
기본 영역	성별	
(1차 범주)	장애	
	성적지향	
	세대	
	종교	
	소득	
환경 영역	혼인	
(2차 범주)	전통	
	지역	
	예술취향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분류영역
민족·인종
신체능력(장애)
종교
성별
나이(세대)
성적지향
비주류예술 (독립예술, 대안예술 등)

연구진이 제시한

1차 조사 결과 본 연구진이 제시한 분류체계가 '적절하다'는 응답이 84.8%로 나타났다. '부적절하다'는 의견은 10.9%였고, '모르겠다'는 의견은 4.3%였다. '부적절하다'고 응답한 이유는 '과도하게 단순화되어 있다'는 의견(3명)이었다.

이 응답과정에서, 적절성과 관계없이 총 22명(47.8%)이 수정·보완 의견을 냈다. 제시한 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본 연구진이 제시한 안과 전혀 다른 안을 제시한 의견이 있었다. 해당 응답자는 문화다양성 대상을 '사회문화', '문화정체성', '문화예술' 등으로 분류하자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이 의견은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실시한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에서처음 제시된 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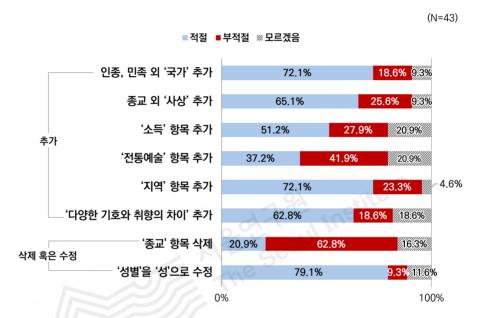
또 다른 응답자는 '일상의 취향 및 문화를 받아들여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였다. 귀속지위보다는 '취향과 문화의 문제'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많은 응답자는 본 연구진이 제시한 안을 수정하는 방향에서 의견을 제시했다. 첫 번째 안은 '소득'(6명), '전통예술'(3명), '지역'(2명), '국가'(1명), '다양한 기호와 사상의 차이'(1명) 등 새롭게 추가되어야 할 항목을 제시하는 의견이었다. 두 번째 안은 용어를 수정하자는 의견으로, '신체능력'을 '장애·비장애'(1명), '신체적 차이'(1명), '신체적·정신적 장애'(1명)로 수정하자는 의견과 성별이 남녀만 표현하므로 제3의 성을 포괄하는 '성'이란 용어로 바꾸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그 외 유사종교의 인정문제가 있으니 '종교는 삭제하자'는 의견(1명)이 있었고, '비주류예술'이 주류예술을 상징하는 것이기에 없애자는 의견과 엄밀한 범주와 정의가 내려진 이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2명)이 있었다. 조사 결과 주요하게 문제 제기되었던 것은 '소득', '전통예술', '지역', '국가', '다양한 기호와 사상' 등의 추가와 '신체능력'을 '장애'로, '성별'을 '성'으로 수정하는 것, '종교'의 삭제, '비주류예술'의 삭제 또는 수정 등이었다.

이의 결과를 바탕으로 2차 조사를 실시했다. 2차 조사는 1차 조사에서 나온 응답결과를 제시하고 응답의 적절성을 묻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조사 결과 '인종민족' 영역에 '국가'를 추가하는 것, '종교' 영역에 '사상'을 추가하는 것, '지역' 영역을 추가하는 것, '다양한 기호와 취향의 차이' 영역을 추가하는 것 등에 대해서는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성

별'을 '성'으로 수정하자는 것 또한 높은 지지를 얻었다.

반면, '종교'를 삭제하는 것, '소득'을 추가하는 것, '전통예술'을 추가하는 것 등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많거나 적어도 적절하다는 의견을 압도하지는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를 삭제하거나 '소득'·'전통예술'을 추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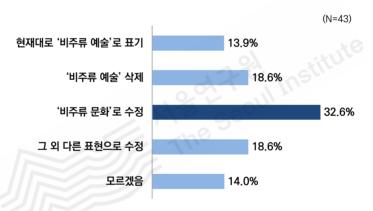


[그림 4-24]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대한 항목 수정 의견의 적절성 판단

한편, 1차 조사에서 여러 답이 나온 '신체능력'과 '비주류예술'에 대해서는 별도의 설문을 실시하였는데, '신체능력'에 대해서는 '장애'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비주류예술'은 '비주류문화'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가장 많이 나왔다. 이를 종합하여 본 연구진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영역을 '민족·인종·국기', '장애', '종교·사상', '성성적지향', '나이(세대)', '비주류문화', '지역' 등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N=43) 현재대로 '신체능력(장애)'으로 표기 '장애·비장애'로 수정 25.6% '장애'로 수정 27.9%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수정 25.6%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 14.0%

[그림 4-25]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중 '신체능력(장애)' 표현 변경 시 가장 적절한 표현



[그림 4-26]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중 '비주류 예술' 표현 변경 시 가장 적절한 표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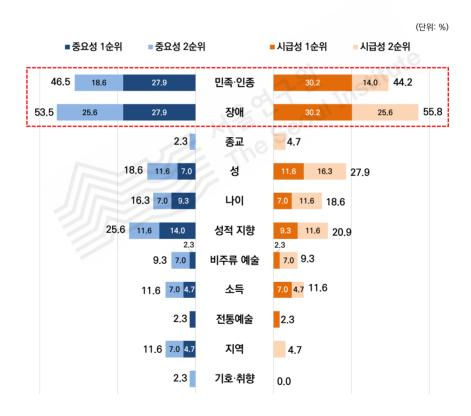
	연구진이 제시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분류영역
	민족인종
	신체능력(장애)
	종교
	성별
	나이(서대)
	성적지향
	비주류예술
	(독립예술, 대안예술 등)
_	

서울시 문화다양성 문류체계
분류영역
민 <del>족</del> ·인 <del>종·</del> 국가
장애
성사교종
성성적지향
나이(서타)
비주류문화
지역

델파이조사 결과 재구성된

### ② 우선순위 설정

정책대상 설정에 이어 정책의 우선성과 중요성을 확인해보고자 2차 조사를 통해 대상별 우선성과 중요성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장애'가 시급성과 중요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이어 '민족인종'이 시급성과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은 시급성에서는 다소 높은 판단을 받은 반면 중요성에서는 다소 밀렸고, '성적지향'은 중요성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받은 반면 시급성에서는 다소 낮은 점수를 받았다. 그러나 '성'과 '성적지향' 모두 3순위에 속하는 점수를 받았다는 점에서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그 외 시급성과 중요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은 '나이'였고, 나머지는 거의 비슷한 점수를 받았다.



[그림 4-27] 문화다양성 정책대상의 중요성(좌) 및 시급성(위)

# (4) 문화다양성 집단별 정책방안

제시된 집단별로 필요한 정책이 무엇인지 살펴보기 위해 정책방향을 묻는 설문을 실시하였다. 설문은 1차 조사에서 각 대상 집단별로 필요한 정책을 묻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9개 군을 형성한 다음, 2차 조사에서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그 결과는 [표 4-12]와 같다.

[표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 2차 결과는 거의 동일하다. 다만 '장애'와 '성적지향'에 있어서는 약간의 순위조정이 있었다. '민족·인종'은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와 '시민 간교류 및 이해증진 사업'이 1~2순위로 제시되었고, '신체능력(장애)'은 '도시디자인 및 시설개선'이 1순위로 나온 가운데, 1차에서는 '시정 내 다양성 보호증진 반영 사업'이, 2차에서는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이 우선 필요한 것으로 제시되었다. '종교'는 '시민 간 교류 및이해증진 사업'이 1순위,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이 2순위로 나왔고, '성별'은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이 2순위로 나왔고, '성별'은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이 1순위, '시민 간 교류 및이해증진 사업'이 2순위로 나왔다. '나이'는 '관련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이 1순위였고, '성적지향'은 1차 조사에서는 '시민 간 교류 및 이해증진 사업'이, 2차 조사에서는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이 1순위였다. '비주류예술'은 '예술활동 촉진 지원사업'이 1순위였다.

#### [표 4-12] 문화다양성 집단별 정책방안 우선순위

(단위: 명)

	211													
정책 방안	민 <del>족</del> 인종		신체 능력		종교		성별		나이		성적 지향		비주류 예술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①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	5	1	12	6 (2위)	0	0	5	1	14 (1위)	15 (1위)	2	1	11 (2위)	4 (2위)
② 관련된 활동이밀집된 지역 보전및 육성	10	1	1	0	2	1	4	0	5	1	2	0	6	2
③ (예술)활동 촉진 지원사업	13	0	12	1	1	0	8	0	11	2	13	1	26 (1위)	29 (1위)
④ (예술)활동 촉진 인력양성 사업	4	0	10	1	3	0	3	2	7	0	4	1	7	0
⑤ 시민 간 교류 및 이해증진 사업	15 (2위)	14 (2위)	9	2	14 (1위)	27 (1위)	12 (2위)	13 (2위)	12 (2위)	14 (2위)	17 (1위)	11 (3위)	5	3
⑥ 소 <del>수문</del> 화 접촉 기회 확대사업	19 (1위)	24 (1위)	8	3	8	5	6	2	7	1	15 (3위)	12 (2위)	11	3

[표 4-12 계속] 문화다양성 집단별 정책방안 우선순위

(단위: 명)

정책 방안	민 <del>족</del> 인 <del>종</del>		신체 능력		종교		성별		나이		성적 지향		비 <del>주류</del> 예술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1차	2차
⑦시정 내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시업	8	2	13 (2위)	2	13 (2위)	9 (2위)	18 (1위)	23 (1위)	9	5	17 (1위)	17 (1위)	6	1
8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1	1	22 (1위)	28 (1위)	4	1	5	2	8	5	5	0	4	1
⑨ 기타	4	-	10	-	4	-	4	-	6	-	3	-	5	-
합계	79	43	97	43	49	43	65	43	79	43	78	43	81	43

주: 1차 조사는 주관식 설문으로 실시함. 현재 표와 같이 9가지 항목으로 분류한 것은 응답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숫자로, 주관식 답변을 분석하여 배치하다보니 중복 체크되는 경우가 많아 총합계 수가 표본 수보다 많음. 2차 조사는 1차 조사로 분류된 9가지 항목을 제시하여 얻은 수로 표본 수(43)와 일치함.

다른 한편 1차 조사에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포함될 필요가 있다고 제기되었던 '소득', '전통예술', '지역', '기호·취향' 등에 대해서도 우선순위를 조사했다. 그 결과 '소득'과 '지역'에 대해서는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이, '전통예술'에 대해서는 '지원 사업'이, '기호·취향'에 대해서는 '시민 간 교류 및 이해증진 사업'이 각각 1순위로 나타났다.

[표 4-13]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추가된 항목별 정책방안 우선순위

(단위: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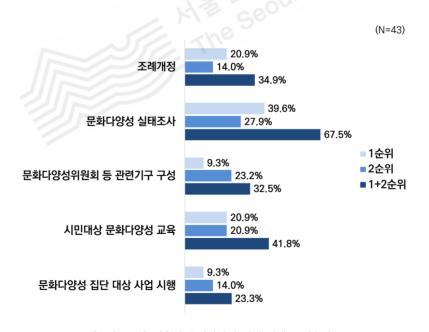
정책 방안	소득	전통 예술	지역	기 <u>호</u> · 취향	
①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	5	4	4	0	
② 관련된 활동이 밀집된 지역 보전 및 육성	0	5	6	4	
③ (예술)활동 촉진 지원시업	7 (2위)	12 (1위)	4	6	
④ (예술)활동 촉진 인력양성 사업	1	3	0	0	
⑤ 시민 간 교류 및 이해 증진사업	7 (2위)	6 (2위)	11 (2위)	15 (1위)	
⑥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사업	4	6 (2위)	3	10 (2위)	
⑦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	16 (1위)	5	12 (1위)	8	
⑧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3	2	3	0	
합계	43	43	43	43	

주: 8개 정책방안 중 집단별 우선순위 1순위 응답자

이상의 조사 결과, 대체적으로 '시민 간 교류 및 이해증진 사업',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 사업',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등이 주요 정책방향으로 제시되었다. 즉, 소수(성)를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조성과 소수(성)를 보호할 수 있는 시정 내 여건 조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장애'나 '나이' 등과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도시디자인 개선 등도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 (5)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시행 시 우선순위

마지막으로, 문화다양성 정책 전반의 우선순위를 설정하기 위해 2차 조사에서 '문화다양성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에 대해 질문하였다. 조사결과 1순위와 2순위 모두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로 나타났다. 본 사업 추진에 앞서 정확한 실태파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어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교육'(41.8%), '조례개정'(34.9%),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관련 기구 구성'(32.5%), '문화다양성 집단 대상 사업시행'(23.3%)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28]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시행 우선순위

# 05

##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1\_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2\_주요과제 및 추진방안

## 05 서울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 1\_기본방향 및 비전 설정

2017년 조례 제정과 더불어 서울시는 이제 막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사업 추진 단계로 접어들었다. 아직은 조례에서 규정한 <문화다양성위원회>도, 문화다양성 정책 시행을 위한 실태조사도, 기본계획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체계적인 준비 끝에 조례가 제정된 것이 아니라, 조례가 제정된 상황에서 정책을 추진해야 하는 만큼 정책을 서두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직접적인 사업보다 정책추진을 위한 탐색이 더 필요하다고 말한다. 즉 문화다양성을 위한 기초조사나 기본적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 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이다([그림 4-28]).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은 현재보다는 미래에 더 중요한 의제다([표 4-5]).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미 '미투'(me too)에서 '이민자난민'까지 다양한 사회 갈등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결코 미래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한 정책에 대해선 '보통'이라는 평가가 앞섰다([그림 4-6]). 긍정적으로 인식한 사업은 '문화다양성 인식 개선 및 가치확산을 위한 사업'이었고, 부정적으로 인식한 사업은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 증진사업'이었다([표 4-6]). '직접적인 교류 증진'보다는 '서로가 다르다는 사실을 공유하는 기반형성'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 정책 방향으로는 '소수자의 권익 보호'와 '자기표현권 보호'가 1~2순위로 제기되었고, 3순위로 '시민의 이해와 융합도모'가 제기되었다.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보호'나 '문화다양성 지역의 생태보전' 등과 같은 사업보다 기초적인 권리와 시민 간 이해가 우선되어야 할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는 각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에서도 마찬가지다. 각집단을 대상으로 한 정책 우선순위 조사결과 '신체능력(장애)'과 '나이'를 제외하고는 '시민 간 교류 및 이해증진 사업', '소수문화접촉 기회 확대사업' 등이 우선순위로 제시되었다([표 4-12]). 기초적인 권익보호와 상호간 이해 도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문화다양성의 주요 영역으로는 '민족·인종·국가' 등 물리적인 귀속지위와 '장애', '종교·사 상', '성성적지향', '나이', '비주류문화', '지역' 등이 제시되었다. 이 중 우선해야 할 대상은 '장애'와 '민족·인종·국가'였고, '성·성적지향' 등도 주목해야 할 대상으로 지적되었다([그림 4-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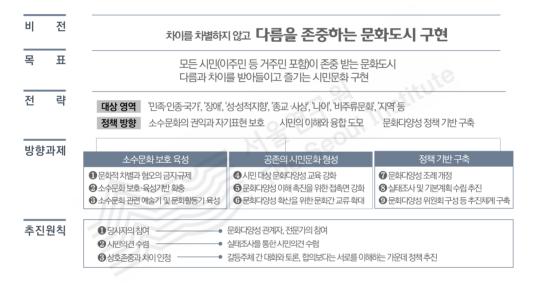
이를 종합하면,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은 '장애'와 '민족인종국가'를 주요 영역으로 '성·성적지향'을 포괄하여 직접적인 사업보다는 기본적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시민사회 내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학습과 접촉 기회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이번 연구결과, 조례 개정 또한 주요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제2조 정의를 포함하여 주요 핵심조항에 문제가 제기된 만큼 적절한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를 갖추는 것도 필요하다. 즉, 〈문화다양성위원회〉나 〈지역협의체〉 등과 같은 기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필요하며, 실태조사와 이에 기반한 기본계획 수립 등도 수행해야 할 중요한 과제라 하겠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문화다양성 정책의 기본방향을 설계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정책 비전으로 '차이에 차별받지 않고', '다름을 존중받는' 문화시민도시를 지향할 필요가 있다. 2016년 수립된 「2030 서울시 문화비전」이 '문화시민도시'를 비전으로 내세운 만큼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차별금지'와 '다름의 존중'을 주요 비전으로 내세워야 한다.

정책의 목표로 '모든 시민(이주민, 거주민 모두 포함)이 존중 받는 문화시민도시'와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시민문화 구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문화시민도시'는 그 누구도 차별받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름과 차이를 받아들이고 즐기는 시민문화 구현'은 문화 자체를 다양성을 포용하는 문화로 바꾸자는 것을 말한다. 즉, 다양성을 포괄하는 시민문화를 형성하여 어느 한 집단이나 지배적 집단이 문화를 형성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회주체가 '함께' 만들어 가는 문화로 바꾸자는 것이다.

이 목표체계 아래 '소수문화 보호 육성',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 '정책기반 구축' 등 3가지를 정책방향으로 제안한다. '소수문화 보호 육성'은 말 그대로 우리 사회의 이질적인 집단이나 취향의 문화를 보호하고, 우리 사회의 문화 내에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는

것이며,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은 시민들의 문화 속에 자연스럽게 다양성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만들자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 '정책기반 구축'은 현 조례 개정을 포함하여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을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 세 방향하에 각각의 과제를부여하여 본 연구진은 총 9가지 수행과제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정책은 '민족인종 국가', '장애', '성성적지향', '종교·사상', '나이', '비주류문화' 등을 대상으로 하며, 당사자참여의 원칙, 시민참여의 원칙, 상호존중과 차이인정의 원칙 등을 기반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즉, 문화다양성 영역 집단이나 대상자가 직접 참여하여 시민과 더불어 정책을 추진토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비전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비전 체계도

## 2\_주요과제 및 추진방안

#### 1) 소수문화 보호 육성

문화다양성의 기본전제는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그 권리를 보장받는 데 있다. 특히 문화구성의 원리가 다양성에 기초한다고 할 때, 어떤 집단이라도 자신의 문화를 존중받으며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문화적 차별과 혐오의 금지, 소수문화의 보호·육성, 소수문화와 관련된 예술가 및 활동가의 육성 등이다.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문화적 차별과 혐오의 금지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차별'하거나 '혐오'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문화다양성 보호·육성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정책 중 하나다. 본 연구의 조사결과 또한 '소수자의 권익 보호'가 문화다양성의 정책방향에 있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표 4-11]).

문화적 차별과 혐오를 금지하는 가장 적절한 방법은 사회문화적인 차원에서 스스로 규제할 수 있는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런 문화를 갖기란 쉽지 않다. 문화적 차이와 다양성을 포용하는 오랜 전통이 있어야만 가능하다. 지금 당장의 현실적인 측면에선 문화적 차별과 혐오 행위를 규제하는 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이런 조치가 있어야만 자연스럽게 타인의 문화를 존중하는 문화 또한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상위법이 없는 현실에서 문화적 혐오나 차별을 처벌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무리한 규제 조치 마련보다는 현재 제정된 조례를 잘 활용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현 조례는 문화적 차별과 혐오에 대해 개선을 권고할 수 있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조례 제15조는 "문화적 차별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16조는 "시장은 매년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기여한 개인 또는 기관·단체 등에게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할 경우 개인 및 단체, 공공기관의 차별행위를 개선하거나 차별행위에 주의

하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으며, 특히 표창을 통해 각 기관이 문화다양성을 증진하는 데 노력하도록 촉진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현 조례에 대한 적극적인 해석과 활용이 필요하다.

더구나 서울시는 각 행정문서에 사전에 검토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규정된 검토항목은 '시민참여', '전문가 참여', '갈등', '사회적 약자 배려'등 12개 항목이다. 이를 활용하여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점검항목을 만들 경우, 행정 내에서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현재 '사회적 약자에 대한배려' 항목이 여성,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별도의 '문화다양성에 대한 배려' 항목을 만들어 '민족인종국가', '성' 등을 체크하도록 할 경우, '장애'와 더불어 문화다양성의 중요 항목인 '민족인종국가', '성' 영역에 대한 고려가 좀 더적극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iv <sub>e</sub>	titu
P 해 5 구	당사항	이 있는 부분에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i>B시 검!</i> 해당 없음	<i>[내용 기재)</i> 비고
시 참	민여	<ul> <li>시민 의견 반영 및 시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li> <li>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li> </ul>			
전 자	를 가 문	<ul> <li>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li> <li>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li> </ul>			
갈	<b>III</b> O	<ul> <li>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기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li> <li>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li> </ul>			
사 호 약 배	를 적 자 리	<ul> <li>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li> <li>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li> </ul>			

[그림 5-2] 서울시 공공문서 작성 시 사전 검토항목

또한 서울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 따라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37) 이에 '교사 및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와

<sup>37)</sup> 이에 대해서는 <예방교육통합관리>(https://shp.mogef.go.kr) 사이트를 참조했다.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한 「문화다양성법 시행령」 제11조와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제12조에 근거해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을 대상으로 '인종민족국 가', '성' 등에 대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한다면 문화다양성의 구현에 있어 좀 더 넓은 기반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점에서 「문화다양성법」 및 조례의 적극적 활용과 행정 문서의 체크리스트, 폭력예방 교육만 적절히 활용해도 문화다양성 제고에 있어 큰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2) 소수문화 보호·육성 기반 확충

문화적 혐오와 차별의 금지가 소수자(집단, 문화)에 대한 권익보호 차원의 문제라면, 소수 문화 보호·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은 좀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소수문화를 사회적 문화주 체로 만드는 것이다. 즉, 소수자 권익보호 문제를 넘어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다양성의 워리를 구현하는 것이 '소수문화 보호 및 육성기반 확충'이라 할 수 있다.

익히 알다시피 서울시는 그간 보편적 시민들의 문화와 예술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반을 갖추는 데 주력해 왔다. 각 연령층, 특히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는 청소년과 노인 계층을 위해 '청소년 수련관'이나 '실버극장' 등과 같은 세대별 시설을 확충해 왔고, 장애인의 접근성 제고를 위한 사업 등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여전히 시설 전체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고, 장애인 접근성 개선을 위한 문화시설이나 도시기반시설의 인프라 개선 또한 충분치 못한 상태이다. 이를 반영하듯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가들은 '나이' 측면에선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을, '장애' 측면에선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개선'을 각각 1순위 정책으로 꼽았다.

이에 좀 더 적극적인 소수문화 보호 및 육성을 위한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 '나이'와 관련된 기반 시설 확충과 '장애' 극복을 위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의 개선, '민족인종국가'와 관련된 지역의 육성 등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한 일이라 하겠다.

다행히 서울시 문화비전을 제시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은 적극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 보호·중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개인의 문화권을 강조한 '개인차원'의 계획에선 우리나라 국적을 지닌 국민을 대상으로 문화권을 제시한 「문화기본법」상의 규정<sup>38</sup>과 달리, 서울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는 '시민문화권'

을 제시하고 있다(서울시, 2016), 또한 문화권을 침해하는 유무형의 장애를 제거하는 '서 울 유니버설 디자인'의 시행<sup>39)</sup>과 문화다양성 이해를 위한 다문화 도서관, 세계한인박물 관. 통합문화원의 설치, 지구초의 날과 세계인의 날을 연계한 '문화다양성 주간 운영', 가 리봉동:창신동이초동:성북동 등 이주민 밀집지역을 문화다양성 지역으로 지정. 특화된 문 화지역으로 육성토록 제안하고 있다(서울시, 2016), 이에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의 계획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다면, 소수문화의 활동기반 강화 및 활동지역을 보전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다.

[표 5-1] 「문화기본법」상 문화권과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계획상 시민문화권

<del></del> 구분	문화기본법	시민문화권			
 적용대상	모든 국민	현재 서울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			
 구현방식	차별받지 않을 권리	할 수 있는 권리			
권리대상	개념적 문화	예술, 스포츠, 관광 등 문화활동 전반			
권리내용	문화창조, 활동, 향유	관람/향유, 참여/활동, 교육			
출처 : 서울시, 2016,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p.25					

#### (3) 소수문화 관련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 육성

문화다양성과 관련된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는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문화 다양성 관련 집단(영역)에 소속된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다. '장애'를 가졌거나 소수의 '민 족인종국가' 출신의 예술가나 문화활동가. '성' 소수자 등이 그 대상이다. 반면 다른 하나 의 유형은 문화다양성 영역을 대상 또는 소재로 하여 활동하는 예술가나 문화활동가를 말한다. 이들의 활동은 본인이 직접 그런 예술을 하거나 문화활동을 하는 것에서부터 그 와 관련된 예술가를 돕는 일까지 포함한다.

지원의 방식은 직접적 지원과 간접적 지원이 가능하다. 직접적 지원은 이들 활동에 대해

<sup>38)</sup> 문화기본법 제4조(국민의 권리) 모든 국민은 성별, 종교, 인종, 세대, 지역, 사회적 신분, 경제적 지위나 신체적 조건 등에 관계없이 문화 표현과 활동에서 치별을 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문화를 창조하고 문화 활동에 참여하며 문화를 향유할 권리(이 하 "문화권"이라 한다)를 가진다.

<sup>39) 「</sup>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제시하는 '유니버설디자인'은 '시설접근 및 이용장애 해소'에서 나아가 '활동장애를 제거'하 는 한편, 공공시설에서 민간시설로 그 대상을 확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서울시, 2016).

별도의 지원트랙을 갖고 지원하는 것이다. 호주나 미국, 캐나다 등 대다수 선진국은 원주민 예술 등 소수자의 예술활동 보호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우리 또한 '장애인' 예술가나 소수 '민족인종국가' 출신의 예술가 및 문화활동가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그러나 아직 정책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예술가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서울 문화재단>의 지원 사업에는 '생애 최초예술지원사업' 등과 같은 '청년예술지원사업'만 별 도의 트랙이 있을 뿐, '장애인' 및 소수 '민족인종·국가' 출신의 예술가나 문화활동가, '성' 소수자 관련 예술가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별도의 트랙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문화다 양성을 고려한 별도의 예술지원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본격적인 문화다양성 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조례 제13조에 명확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전문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 조사,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그밖에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는 만큼, 이를 위한 사업추진이 필요하다.

#### 2) 공존의 시민문화 형성

앞의 첫 번째 과제가 직접적인 소수문화의 보전육성이었다면, 두 번째 과제는 문화다양성의 지속가능한 영역화를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민의 문화, 즉 (문화)다양성을 이해하고 포용하는 문화를 형성하는 것을 말한다. 전자가 직접적이고 즉각적인 영역이라면, 후자는 간접적이나 지속가능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영역을 의미한다. 때문에 본 연구에서실시한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서울시의 문화다양성 정책방향'([표 4-11])으로 1~2 순위로 직접적인 소수자의 권익보호와 자기표현권 보호를 꼽고, 3순위로 '시민의 이해와 융합도모'를 꼽은 바 있다. 그만큼 시민과 공존하는 문화형성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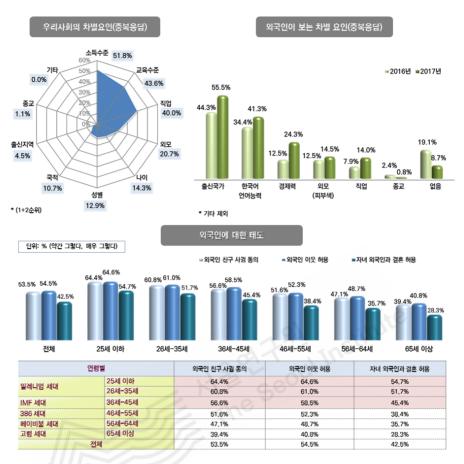
이를 위한 전략으로 '시민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이해도모를 위한 시민의 접촉면 강화',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도시 간 교류 강화' 등을 제시한다.

#### (1) 시민대상의 문화다양성 교육 강화

2018년 7월 4일 발표된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민들은 소득, 학력, 직업 등 경제사회적 요인을 우리 사회의 주요한 차별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외국인들은 출신국가, 언어능력, 경제 요인, 외모, 직업 순으로 차별받는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0) 외국인에 대한 포용력 또한 '외국인 친구 사귐 동의'는 53.5%, '외국인 이웃 허용'은 54.5%로 그나마 50.0%를 넘은 반면, '자녀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 허용'은 42.5%로 여전히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이 또한 35세 이하에서 50.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보여주어서 그렇지, 46세 이상에서는 40.0% 이하의 낮은 수치를 보여주었다. 41)

<sup>40) 2018.7.4.,</sup>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서울이 고향", p.15

<sup>41)</sup> 위의 자료, p.30



자료: 2018.7.4., 서울시 보도자료, "서울시민 10명 중 8명은 '서울이 고향", p.15, p.30.

[그림 5-3] 서울시민들이 인식하는 차별요인 및 외국인에 대한 태도

때문에 시민을 대상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은 무엇보다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타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력이 낮은 만큼, 이를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문화형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현재 제정되어 있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또한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42) 그러나 문제는 그 대상이 교사와 청소년으로 제한되어 있

<sup>42)</sup> 조례 제12조에 따르면,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으며, 그 방식 또한 규범적으로 되어 있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본 연구의 조사 결과. 전무가들은 문화다양성 교육 대상을 '시민으로 확대하거나 시민을 교육대상으로 표기해 야 한다'고 의견(93.0% 찬성)을 제시한 바 있고([그림 4-12]). 교육 내용 또한 '타인의 존중과 교류에 기반한 교육',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철학교육', '인간의 존엄성에 토 대를 둔 교육', '예술과 접목된 문화다양성 교육', '타문화 이해 및 글로벌 러닝' 등에 초점 이 맞춰져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그림 4-13]). 교육의 대상 및 내용 자체가 변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편, 경상남도 및 경기도의 경우 교육청 산하에 별도의 조례를 두어 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문화다양성 교육을 강조한다는 점 또한 주목해볼 만하다. 이들 두 자치단체는 문화다양성 교육 조례를 제정해 학교 내 교육과정에서 문화다양성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그런 만큼 서울시 또한 교육청 산하에 별도의 문화다양성 교육조례를 두고 학생 oul Institute 및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전문적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 (2) 문화다양성 이해 촉진을 위한 접촉면 강화

문화다양성 인식 및 이해촉진을 위해선 무엇보다 직접적인 접촉이 필요하다. 직접 접촉해 보고 실체를 파악해야만 좀 더 구체적인 이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대중매체에 의한 왜곡된 이식은 본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큰 지역 간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17년 9월 10일 <경향신문>에는 영화 '청년경 찰' 상영에 맞춰 "중국동포들은 범죄자들이 아니다"라는 현수막이 지역에 걸린 바 있으며. 같은 해 12월 1일 '영화 청년경찰, 범죄도시 등 중국동포 혐오현상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이란 주제로 '서울 서남권 문화다양성 토론회'가 개최된 바 있다. 이처럼 대중문화에 의한 왜곡으로 인해 지역 간 갈등은 더 격화될 수 있으며, 이미지 왜곡에 따라 실체 또한 더 왜곡될 위험이 크다.

이에 반해 올 2019년 1월 29일 <시사인>이 게재한 "대림동 한 달 살기' 우리가 몰랐던 세계"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 기사는 기자가 한 달 동안 대림동 고시워에서 생활하면 서 대림동에 정착해 사는 재한 조선족의 생활과 실태를 상세히 전하고 있다. 대림동에 모여 살 수밖에 없는 이유와 대림동의 이미지를 중심으로 대림동이 정말 위험한 곳일까라 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자가 직접 체험하는 방식으로 대림동을 보여준 만큼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sup>43)</sup>



[그림 5-4] 대림동 한 달 살기 기사(시사인)

이처럼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데 있어선 실체에 접근하는 실질적 접촉이 필요하다. 때문에 본 연구의 조사에서 전문가들 또한 소수문화와의 접촉기회 확대를 문화다양성 이해의 중요한 방안이라고 보았다. 특히 '민족인종국가' 영역의 경우 문화다양성을 제고하는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고 판단했다([표 4-12]).

관련하여 서울시는 좀 더 적극적으로 문화다양성 접촉 확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특히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에서 이미 현 '지구촌의 날'(5월 초)과 '세계다양성의 날'(5.20.)을 연계하여 문화다양성을 위한 '문화다양성 주간'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한 만큼, 중앙정부의 문화다양성의 날과는 다른 별도의 주간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문화도서관>이나 <세계한인박물관>, <통합국제문화원> 등 문화다양성이 해를 위한 거점 기관 조성도 신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비전에서 명시한 것처럼 성북구 외교관 거리, 대림동 중국동포거리, 동부이촌동 일본인 거리, 방배

<sup>43)</sup> 이 기사에 대해서는 여러 상찬글이 실려 <시사인>은 2019년 2월 15일자에 '대림동 프로젝트에 상찬 쇄도'라는 편집국장의 글이 실린 바 있다.

동 서래 마을 등 각 지역별로 특화된 요소를 고려하여 시민의 체험프로그램을 개발해 다 문화 및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문화다양성의 이해기반을 좀 더 넓힐 필요가 있다.

#### (3)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도시 간 교류 확대

도시 간 이해는 좀 더 적극적 차원에서 문화다양성을 이해하는 기반을 만드는 것이다. 특히 '민족인종국가' 영역의 경우, 해당 국가의 문화를 직접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만 문화다양성을 이해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있다.

서울시는 현재 총 42개 도시와 자매 또는 우호 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특히 하노이, 방콕, 자카르타, 울란바토르 등 아시아 주요도시와 자매결연을 체결했으며, 산동성 등 5개 성과 우호도시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에 이들 자매·우호도시와 적극적인 문화교류를 통해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다른 한편, 문화 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공적개발원조) 또한 적극적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에 존재하는 다양한 창작공간을 활용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세계 주요국가의 예술가 및 활동가를 초청하여 활동하게 할 경우, 서울의 문화다양성 제고 및 문화다양성 인식과 이해 측면에서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국제교류협력 기구를 활용한 문화교류 협력 전략 또한 필요하다. 특히 서울시에는 현재 <CityNet>을 포함한 여러 국제네트워크들이 자리 잡고 있다. 이들 국제기구를 활용하여 해외 주요도시들과 교류할 경우, 서울의 문화다양성은 크게 제고되리라 판단된다.

## 3) 정책 기반 구축

#### (1) 문화다양성 조례 개정

2017년 제정된 조례는 서울시 문화다양성 기반을 형성하는 데 큰 기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제4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몇몇 조항이 문제가 있고, 전문가들 대다수가 개정의 필요성을 지적한 만큼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5-2] 제2조(정의) 개정안

현 조례	개정 방향	개정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서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정석 표현의 수정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차이 <u>존중'</u> 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인 종, 종교, 언어, 지역, <u>성, 나이, 신분,</u> <u>장애 등</u> 의 차이에 따른~(생략) <u>단, 인권을 침해하는 문화다양성은 문</u> <u>화적 차이 존중에 해당하지 않는다.</u>

## [표 5-3]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개정안

현 조례	개정 방향	개정안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 ~③ <생략>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4. <신규>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⑥ ~⑨ <생략> ⑩ <신규>	당사자 중심위원 구성, 특정 성비율 제한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 1.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직접적인 문화다양성 관련자 2. <동 조례와 같음> 3. 관련 업무 담당 공무원 4.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⑤ 위원회 구성은 특정 성 비율을 60% 초과할 수 없다<신규> ⑥~⑩ <동 조례 ⑤~⑨와 같음>

#### [표 5-4] 제9조(전문위원) 개정안

현 조례	개정 방향	개정안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u>3명 이내</u> 의 전문 위원을 둘 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u>전문적인</u>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전문 위원 수 확대와 대상 확대 확대	제9조(전문위원) ① 위원회에 <u>3~5명</u> 의 전문위원을 둘수 있다.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③ <생략〉

## [표 5-5]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개정안

현 조례	개정 방향	개정안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생략>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7.~10. <신규> ③ 시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 관련 연구에 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조사 내용 변경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① <생략〉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1~3. <동 조례와 같음〉 4. 문화다양성 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문화산업 생태계에서 문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7. 미디어디지털 환경에서 문화다양 성 실태에 관한 사항 8~10. <동 조례 4~6과 같음〉

[표 5-6]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개정안

 현 조례	개정 방향	개정안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①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② <신규>	교육대상 확대, 교육내용 강화, ②항 신설, 교육방식 보완	제12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① 시장은 교사, 청소년, 공무원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생략>1.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과 철학교육 2. 타인(사회구성원 간) 존중과 교류에 관한 교육 3. 인간 존엄성에 토대를 둔 교육4. 문화적 차이 존중이나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시항인 시장은 문화다양성 교육이 예술과 접목된 방식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 (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및 실행계획 수립

조례 제10조에 따라 문화다양성 실태조사가 필요하나 아직 실태조사를 시행한 바는 없다. 다만, 정부에서 실시하는 실태조사에 응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서울시 자체의 실태조사가 필요하며, 조사 또한 조례에서 규정한 내용을 수정하여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처럼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문화다양성 침해사례에 관한 사항, 5. 문화다양성 우수사례에 관한 사항, 6. 문화예술문화산업 생태계에서 문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7. 미디어디지털 환경에서 문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5. 모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5. 만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5. 만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6. 문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조례 제6조에 「문화다양성법」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에 대응하는 실행계획 수립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계획의 수립 또한 필요하다. 이 계획은 연 단위로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문제는, 이 계획이 수립되기 위해서는 조례 제6조 2항에 의해 <문화다양성위원회>의 구성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조례 제6조 2항은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제7조에 따른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이 선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3) 문화다양성위원회 등 추진체계 구축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문화다양성위원회>는 모든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현 조례를 살펴보면 <문화다양성위원회>는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실태조사, 지원, 교육, 전문 인력의 양성,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정책에 관한 관계기관의 협조,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등을 심의조정하기 위해 시장 소속하에 두도록 되어 있다. 그만큼 <문화다양성위원회>는문화다양성 정책 수립 및 시행을 위해 반드시 요구되는 조직이라 할 수 있다.

다만 <문화다양성위원회>는 과도하게 공무원이 많고, 당사자의 참여가 적은 현 조례와 달리 변경된 조례안으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 즉, 여성, 성 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등 직 접적인 문화다양성 관련자들이 참여함으로써 좀 더 실질적인 문제의식을 갖고 활동하는 위원회로 구성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화다양성위원회>와 더불어 지역협의체 또한 운영해야 한다. 지역협의체에는 자치구의 민간단체 및 문화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할 필요가 있으며, 필요할 경우 각 자치구의 문화 재단이나 문화원 등을 대표기관으로 선정하여 운영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 경우 각 자치구의 조례 제정이 필요하다. 현재 구로구와 강북구 2곳만 문화다양성 관련 조례가 제정되어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을 통해 각 자치구에 관련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국무총리실·관계부처 합동, 2008, "1차 다문화가족지원정책 기본계획(2008~2012)".

김규원, 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 연구」.

김면, 2017, 「문화다양성 정책 현황 및 발전방안 연구」,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김수이, 2013, "최근 한국시에 나타난 문화다양성, 「다문화사회연구」, 6(1), 숙명여대 다문화통합연구소.

김용국 외, 2017, 「문화다양성 적용에 따른 경기도 다문화정책 발전 방안」, 경기연구원.

김창민 외 역, 2005, 「세계화시대의 문화논리」, 한울.

김휘정, 2012.11.6., "문화다양성 기반의 다문화정책 방향", 「이슈와 논점」, 제522호, 국회입법조사처.

류지성, 2016, "최근 일본에서 헤이트스피치 규제에 관한 연구-일본 오사카시의 규제조례를 중심으로", 「법제」, vol.2016, No.3, 법제처.

문화체육관광부,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이행 국가보고서 작성연구」.

문화체육관광부, 2016, 「2015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a, 「2016 문화다양성 정책 연차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b,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

문화체육관광부, 2017c,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기본계획(안)(2018~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2018.4. "문화다양성 보호 및 증진 정책방향".

문화체육관광부 새문화정책준비단, 2018, 「문화비전2030 사람이 있는 문화」

박애경, 2011, 「글로벌 문화다양성의 재현 의미: 유네스코 협약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서울 군자초등학교 병설유치원, 2017, "연구학교 최종성과보고서".

서울시, 2016,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

서울시, 2017, "2016 서울시 문화다양성 연차보고서".

서울시, 2018, 「2018 서울서베이」.

서울연구원, 2018, "세계 난민의 날 기념 연대축제 개최, 프랑스 파리市", 「세계도시동향」, 제434호.

여성가족부·관계부처 합동, 2012, "2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2013~2017)".

유네스코한국위원회, 2010, 「유네스코세계보고서 문화다양성과 문화간 대화 증진」.

이동성 외, 2013, "문화다양성 교육의 개념적 특질 및 이론적 고찰", 「다문화교육연구, Vol.6, No1,

이동연, 2013, 「문화다양성 지표개발 기초연구」, 문화체육관광부.

이상열·정종은, 2017, 「미래 문화정책의 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완, 2017, "차별과 혐오에 대응하는 문화다양성",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제4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장현선, 2016, "문화다양성 증진과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사업 5년간의 변화", 「문화예술지식DB 문화돋보기」, 제38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윤정, 2007, "에이블 아트, 장애와 예술의 만남 장애인 예술의 현황과 사회적 의미", ARKO문화예술.

차용호. 2015.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정책변동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영화. 2017. 「인천시 문화다양성 지표 개발 연구」, 인천발전연구원.

최혜자, 2017,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활동의 성과와 방향", 「2017 문화다양성 정책 포럼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건수, 2014,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문화예술지식DB 심층이슈분석, 제3호, 한국문화관 광연구원.

한건수, 2015, "한국사회와 문화다양성: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의 의미와 과제", 「국제이해교육연구」, 10(2). 한건수, 2017, "국내 문화다양성 교육의 현재와 미래발전 방안", 「2017 문화다양성 정책포럼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2018, 「2017년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대상 문화다양성 직무연수 사업완료 보고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a, 「2016 찾아가는 문화다양성 연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7b, 「2017년 무지개다리사업 컨설팅 평가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a, "2018년 문화다양성 확산을 위한 무지개다리 사업 설명회 자료집".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b, 「2018년 문화다양성주간 백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2018c, "문화다양성 안내 브로셔: 똑똑똑 문화다양성 두드리기".

한국시각장애인예술협회, 2006, 「에이블아트 차이와 소통의 예술」, 사회평론.

행정안전부, 2007~2016,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2007~2016)

Katérina Stenou, 2007, UNESCO and the Question of Cultural Diversity: Review and Strategies 1946-2 007, UNESCO, pp.75-77.

Charta der vielfalt, 2017, Factbook Diversity.

- 네이버 해피빈-문화다양성 캠페인 http://campaign.happybean.naver.com/521promise
- 대통령 소속 국민통합위원회 공식블로그, "편견을 바꾼 사소한 디자인-뉴욕 장애인 마크 교체 프로젝트" https://pcnc11.blog.me/220657200276
- 문화다양성이카이브 홈페이지 http://www.cda.or.kr/rainbow
- 아시아인권문화연대 홈페이지 http://asiansori.org
- 올리볼리 그림동화 홈페이지 http://ollybolly.org/?fwp\_cartoon\_new\_or\_pop=new
- 장애인 아이콘 프로젝트 페이스북 www.facebook.com/accessibleicon
- 경향신문, 2017.9.10일자, "영화 '청년경찰' 상영반대, 중국동포들 집회 "우리는 거지도 범죄자도 아니다""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_id=201709101725011.
- 경향신문, 2017.11.27일자, "성소수자 강연 비공개 논란 '세바시'…강연 재공개 결정" http://news.khan.co.kr/kh news/khan art view.html?artid=201711271226001&code=940100
- 경향신문, 2018.3.26일자, "'무릎 호소' 6개월, 다시 열린 강서 특수학교 설명회 또 '고성, 야유'" http://news.khan.co.kr/kh news/khan art view.html?artid=201803261348001&code=940401
- 뉴스타운, 2018.3.21., "구로문화재단, 무지개다리사업 우수기관 문화체육관광장관상 수상" http://www.newstown.co.kr/news/articleView.html?idxno=319043.
- 마이데일리, 2006.2.10일자, "스타들, 시위구호·스타일도 개성적" https://entertain.naver.com/read?oid=117&aid=0000037493.
- 세계일보, 2017.11.3일자, "토박이 학생들 떠난 동네, 게토화 우려...'갈라지는 교실'" http://www.segye.com/newsView/20171101005297
- 씨네21, 2006.5.22일자, "칸 영화제, 한국 스크린쿼터 공식적지지 발표", http://www.cine21.com/news/view/?mag\_id=38640.
- 한겨레, 2015.12.22일자, "시민이 만들고 시에서 묵살...'서울시민 인권헌장' 책으로"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723097.html
- 한국경제, 2002.2.12일자, "스크린쿼터 성공사례 프랑스 의회에서 발표" http://news.hankyung.com/article/2002021232008.

- 한국경제, 2017.04.10일자, "일본 오사카시, 혐한 동영상 첫 삭제 조치...혐한시위억제조례 집행" http://news.hankyung.com/article/2017041088848.
- 한국일보, 2017.9.21일자, "'성공회대 '성중립 화장실' 추진 찬반 논란" http://www.hankookilbo.com/v/5ec489653d324a72be25812e543fd361.
- 한국일보, 2017.2.19일자, "성소수자·여성이 가장 큰 혐오 피해 대상" http://www.hankookilbo.com/v/32cc5a0fffc94dee80b6fbfe36adfdeb
- 한중포커스, 2018.4.4일자, "동포사회 현안 다함께 고민...'多가치 포럼' 발족" http://www.kcfocus.com/news/362.



## 부록

## 1 델파이 조사 설문지(1차)

##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방향 연구 - 1차 델파이조사 -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저희 연구를 위해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연구원은 올해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델파이 조사의 목적은 문화다양성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하여 서울시에 적합한 문화다양성의 개념과 범주를 도출하고 정책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에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방향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본 델파이조사는 총 2회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며, 응답에는 약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정책에 있어 다양성 제고를 위해 힘드시더라도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한 내용이 왜곡되지 않고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 수립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서울연구원

※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연구책임 : 라도삼 선임연구위원 (02-2149-1257) kuber21@si.re.kr 연 구 원 : 조윤정 연구원 (02-2149-1138) choyj@si.re.kr

#### 1.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의 적절성 및 중요도

- 1. 귀하는 서울시가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얼마나 적절한 정책을 펼쳐왔다고 보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르겠음
- 2. 서울시는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시업유형	시업내용		
① 일반국민의 문화다양성 인식개선 및 가치 확산 사업	서울시민 문화권 선언식 개최,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마을예술창 작소 조성 및 운영지원사업, 시민예술동아리 대제전(생활예술축제) 개최, 지역특성 문화사업 지원 등		
② 다양한 사회구성원의 문화 표현기회 확대 및 문화 기본권 신장 시업	청춘극장(어르신전용 영화관) 운영, 청소년 권장공연 단체관람 지원, 다국 어 관람안내 표지판 설치,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외국인지원시설(서울 글로벌센터 등) 설치 운영,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하는 마라톤 대회 개최 등		
③ 문화 간 공감대 형성 및 갈등해소 시업	저소득층 예술영재교육, 장애청소년 미술교육지원, 학교폭력 예방디자인, 지구촌 나눔한마당 축제, 중국동포 사회통합 지원, 외국인주민 서울 생활 살피미 운영, 다문화가족 사회통합 지원 등		
④ 문화다양성 정책 추진체계 구축 시업	성평등문화 확산 조성을 위한 민관협의체 운영 및 모니터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 등		
⑤ 문화다양성 실태파악 및 정책개발 사업	문화영향평가 시범평가 실시, 중국동포문화의 이해교육, 성인지 통계 작성, 어르신 이용시설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등		
⑥ 국제문화교류 및 문화다양성 증진시업	세계문화도시포럼(WCCF) 참가, 서울국제음악콩쿠르 지원, 고령친화 국 제네트워크 구축		

<sup>※</sup> 위에 제시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은 서울시에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한 연차보고서 자료 중일부입니다. 사업유형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것입니다.

2-1.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귀하가 가장 긍정적으로 보는 서울시 정책(사업)이 있다면, 해당 정책명(사업명)과 이유를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명	
0유	

2-2. 문화다양성과 관련하여 귀하가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서울시 정책(사업)이 있다면, 해당 정책명(사업명)과 이유를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정책(사업)명	
0유	

3. 서울시 문화정책 분야 중 문화다양성 정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고자 드리는 질문입니다. 아 래 표와 같이 문화정책 분야를 구분할 경우, 문화다양성은 어느 정도 중요할까요? 현재와 향후를 기준으로 문화정책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순위를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정책 분야		중요도 우선순위			
		현재	향후		
문화다양성정책	(	)위	(	)위	
예술정책(예술창작지원, 예술인 권리 증진 등)	(	)위	(	)위	
전통문화정책(문화재 관리, 전통문화 지원 등)	(	)위	(3)	)위	
문화여기정책(생활문화 활동 지원, 축제지원 등)	(	)위	(	)위	
문화예술교육정책	(	)위	(	)위	
국제문화교류정책	(	)위	(	 )위	
도시디자인 정책(공공미술, 도시디자인 등)	(	)위	(	)위	

## II.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적절성 평가

4. 다음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의 주요내용입니다. 각 조항의 적절성을 평가해 주시고, 부 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 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4-1. 제2조(정의)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보통 | ④ 적절 | ⑤ 매우 적절

4-1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 제4조(시장의 책무)

-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적극 마련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2. 제4조(시장의 책무)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2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6조(실행계획)

-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은 실행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문화다양성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시행하여야 한다.
- ③ 시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사회구성원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4-3. 제6조(실행계획)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3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1항 역할

-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특별시문화다양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다)를 둔다.
  - 1. 문화다양성 실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이행 평가
  - 2.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3. 문화다양성 지원
  - 4. 문화다양성 교육
  - 5.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
  - 6.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관계기관 협조
  - 7.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지자체 간 협력
  - 8. 기타 문화다양성 보호 증진을 위한 심의조정 사항

### 4-4.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역할 관련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4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7조(문화다양성 위원회) 2, 4, 6항 구성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기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의 장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자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4-5.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 규모, 당연직 구성, 위원의 임기 등 관련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5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8조(분과위원)

- ①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4-6. 제8조(분과위원회)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6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9조(전문위원)

- ① 위원회에 3명 이내의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전문위원은 문화다양성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 ③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명을 받아 문화다양성에 관한 자료를 수집·조사·연구하고,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4-7. 제8조(전문위원)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7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1항\_조사주기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4-8.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조사주기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8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2항 조사내용

- ②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4-9.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조사내용 구성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9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1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 ① 시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 4-10. 제10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지원대상 구성의 적절성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보통 | ④ 적절 | ⑤ 매우 적절

4-10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

시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4-11.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교육) 교육내용 구성의 적절성 평가

매우 부적절
 부적절

| ③ 보통 | ④ 적절 | ⑤ 매우 적절

4-11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업을 추진할 수 있다.

- 1. 전문 인력 관련 정보의 수집·조사
- 2. 전문 인력 양성에 필요한 교재의 개발 지원
- 3. 그 밖에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에 필요한 지원

#### 4-12. 제13조(전문인력의 양성) 양성사업 구성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2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4조(지역협력체 운영)

-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의 민간단체, 문화 기관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협력 기구를 운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지역협력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활동 공간이나 운영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 4-13. 제14조(지역협력체 운영) 협의체 구성 및 운영지원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 ② 부적절 | ③ 보통 | ④ 적절 | ⑤ 매우 적절

4-13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함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15조(권고)

시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 4-14. 제15조(권고) 권고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 ④ 적절

| ⑤ 매우 적절

4-14a. 부적절하다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제16조(표창)									
시장은 매년 문화다	양성의 보호와 증진0	네 기여한 개인 또는 기	관·단체 등에게 「서울	등별시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4-15. 제16조(표창) 내용의 적절성 평가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4-15a. 부적절하	구고 보거나 보완이	필요할 경우 그 이	유와 개정방안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에서 보듯 서	울시 문화다양성 조	스레는 아래 박스와	같은 조항으로 구성	되어 있습니다.					
	, , , , ,								
				2 2 4 1 2 2 2 2					
1. 목적, 2. 정의	1, 3. 사회구성원의 :	책무, 4. 시장의 책무	<sup>1</sup> -, 5. 다른 조례와의	관계, 6. 실행계획, 1					

7. 문화다양성위원회, 8. 분과위원회, 9. 전문위원, 10. 실태조사, 11. 보호 증진을 위한 지원, 12. 보호 증진 교육, 13. 전문인력 양성, 14. 지역협의체 운영, 15. 권고, 16. 표창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⑥ 모르겠음

고 생각하십니까?(없으면 해당 칸에 "없음"으로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 현 조례안에서 새롭게 추가해야 할 조항이 있거나 삭제해야 할 조항이 있다면 무엇이라

5-1. 조례의 구성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추가해야 할 조항

삭제해야 할조항

6.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이행해야 할 정책사항을 이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습니다. 각 항목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판단해 주십시오.

문화다양성 정책 관련			중요성			시급성				
서울시 정책 내용		약간 낮음	보통	약간 높음		매우 낮음	약간 낮음	보통	약간 <del>높음</del>	매우 높음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시장 소속 〈문화다양성위원회〉설치										
·〈지역협력체〉운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Gti			
·문화다양성 인력양성					~ (o)	71 71				
·차별행위에 대해 개선 권고 (공공 및 민간기관 포함)	555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 Ⅲ.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 방향

7. 다음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문화다양성'의 정의입니다. 아래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설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2조(정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7-1. 현재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에서는 문화다양성 정의를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울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해 봤을 때 위에 제시된 문화다양성 정의를 사용하는 것이 적 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 7-2. 서울시 차원에서 위 문화다양성 개념을 보완한다면 어떤 내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시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 ※ 8~10번 문항은 저희 연구진과 자문위원단이 총 5차례의 회의를 거쳐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작성한 설문입니다. 자문위원단은 문화정책, 인권, 장애인, 문화다양성, 문화행정 분야의 전문가 6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8. 다음은 서울시 문화다양성 제고를 위해 저희 연구진과 자문위원단은 아래 표와 같이 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표를 참고하여 질문에 답해주시길 바랍니다.

정책방향	정책내용	정책원칙
① 소수자의 기본 권익 보호	차별적·배제적 표현으로부터 소수집단 보호	불관용/ 규제 정책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 권 보호	모든 개인과 집단이 자기 정체성이나 취향을 표현할 권리	관용 정책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 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	모든 개인과 집단이 예술 활동에 참여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권리	촉진/확산 정책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 간 상호이해 및 융합도모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이해력 증진을 위한 교육과 교류활동 촉진	포용 정책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	문화다양성 관련 특화 밀집지역의 보존 문화다양성 관련 기반 인프라 확충	보존/보호 정책

<b>Ջ</b> −1	의에 제시되	서울시 문화다양성	저채바하이	언마나	전전하다고	새끄러시니까?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⑤ 모르겠음

8-2. 위에 제시된 정책방향 중 수정·삭제·보완되어야 하는(수정) 내용이 있으면 써 주시기 바랍니다.

THE THE

8-3. 서울시의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위에서 제시한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 우선순위를 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_	요성 선순위	시급성 우선순위	
① 소수자 권익보호(불관용/규제 정책)	(	)위	(	)위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	)위	(	)위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촉진/확산 정책)	(	)위	(	)위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도모(포용 정책)	(	)위	(	)위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	)위	(	)위

9. 문화체육관광부는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다양성 영역을 기본영역과 환경영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연구진과 자문위원단은 아래 박스의 오른쪽 표와 같이 기본영역과 환경영역을 통합하여 △민족과 인종, △신체능력(장애), △종교, △성별, △나이(세대), △성적 지향, △비주류예술 등 7가지 요소로 분류하였습니다. 아래 표를 보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다양성 실태조사 부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연구진 의견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구분	분류영역		분류영역	
	민족		민조·인종	
	국적		L 1 LO	
기본 영역	성별		신체능력(장애)	
(1차 범주)	장애			
	성적지향		종교	
	세대		ol ::tute	
	종교	017	성별	
	소득	35	분류영역 민족·인종 신체능력(장애)	
환경 영역 (2차	혼인	5	1 - 16 - 11 - 117	
(2시 범주)	전통	No	성적지향	
,	지역		비주류예술	
	예술취향			

가다. 파레이 제어된 어울이 판화되었지 ㅠㅠ에게 장극의 역을이되고 장극이십억/	9-1	. 위에서 저	[[시된	서울시	문화다양성	부류체계	방식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ተ?
---	-----	---------	------	-----	-------	------	-----	-------	--------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적절 ④ 매우 적절 ⑤ 모르겠음

9-2. 위에서 제시된 분류체계가 부적절하거나 보완이 필요하다면 그 내용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1			

10.	위 집단의	문화적	권리를	보장하고	, 문화대	<del>가</del> 양성을	촉진하는	데	있어	여러 기	가지 '	방안이	존
	재합니다.	아래 빅	스는 그	런 정책	방안을	제시한	예입니다.	이	예를	보시고	<u>1</u> , 아	왜 질문	근에
	답해 주시	기 바랍	니다.										

_				/	
$\mathcal{A}$	기년다	니서이	거리이니니	우영(예술영화관	시베그자 드\
(1)	뀌민판	ハゴニ	112014		

- ② 관련된 활동이 집중되거나 밀집된 지역의 보전 및 육성(외국인밀집지역, 어르신 활동밀집지역 등)
- ③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의 (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 지원 사업
- ④ 관련된 개인 및 집단의 (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인력양성 사업
- ⑤ 시민 간 교류 및 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교육사업
- ⑥ 소수문화에 접촉할 수 있는 기회 및 접촉면을 높이는 사업
- ⑦ 서울시 정책 전반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침 마련(차별요소 검토 의무화, 인센티브 등)
- ⑧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 ⑨ 기타

10-1.	위 예	시를	참고하여	각	소수자	집단에	필요한	문화다양성	정책이	무엇인지	써	주시기
	바랍니	다.										

	04.1
소수자 집단	필요한 정책
민족/인종	The So
신체능력(장애)	JUSTIC. \\
- 종교	
성별	
나이(세대)	
성적지향	
비주류예술	

10-2.	위 예시를	: 참고하여	문화다양성에	대한	시민 <del>들</del> 의	이해도모를	위해	필요한	정책이	무엇
	인지 써 주	주시기 바립	'니다.							

## Ⅳ. 응답자 일반사항

### 11. 다음은 통계처리를 위한 응답자 일반 사항입니다. 아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성별	① 여 ② 남 ③ 기타( )
2) 연령	① 30대 이하 ② 40대 ③ 50대 ④ 60대 이상
3) 주요 활동분야 (복수선택 가능)	① 이주민 및 북한이탈주민 ② 장애인 ③ 성소수자 ④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⑤ 문화정책 관계자 ⑥ 기타 ( )
4) 직업 (주 활동 기준으로 하나만 선택)	① 교수, 연구직 ② 활동가, 관련 사업운영 ③ 행정직 ④ 기타 ( )
5) 문화다양성에 대한 관심도	① 전혀 없음 ② 없음 ③ 보통 ④ 많음 ⑤ 아주 많음
6) 핸드폰 번호	※ 답례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정보입니다. 꼭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2\_델파이 조사 설문지(2차)

#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방향 연구 - 2차 델파이조사 -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서울연구원은 현재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 추진방향'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문화다양성 전문가를 대상으로 서울시 문화다양성 조례 및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 정책방향 등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1차 델파이 조사 결과 총 54명 중 46명(85%)이 응답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설문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2차 델파이조사는 1차 조사 응답자 46명을 대상으로, 1차에서 수렴된 의견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본 조사는 1차에서 나타난 의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으로, 주로 선택형 설문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응답에는 약 30분 내외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법에 따라 철저히 비밀이 보장되며 연구목적으로만 활용될 것입니다. 서울시 문화 다양성 정책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18년 4월 서울연구워

※ 조사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연구책임 : 라도삼 선임연구위원 (02-2149-1257) kuber21@si.re.kr 연 구 원 : 조윤정 연구원 (02-2149-1138) choyj@si.re.kr

#### 1. 문화다양성 조례의 적절성 평가

※ 조례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적절하다는 응답이 많은 가운데 '제2조 정의', '제7조 문화다양성 위원회 구성 및 규모, 임기', '제12조 교육', 제10조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등에 대해 부적절 의견 및 수정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위 네 가지 조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질문 드리니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제2조 정의'의 제안의견 판단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 "문화적 관용"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별, 세대, 학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따른 문화적 표현과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이나 참여를 제한하거나 금지하지 않고 다양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말한다. (ⓒ)단,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 문화적 다양성은 문화적 관용에 해당하지 않는다.

#### 1차 조사결과 주요 의견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 '(@)국적. 민족 등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구성'. '(@)사회 미풍양속이란 표현 등 3가지에 대한 수정 의견 제시

- 1-1.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에 대해 '문화적 차이 존중', '문화적 가치 존중' 등으로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① 현재대로 '문화적 관용'이란 표현 사용(수정할 필요 없다) ② '문화적 차이 존중'으로 수정

  - ③ '문화적 가치 존중'으로 수정
  - ④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⑤ 모르겠음
- 1-2. '국적, 민족, 인종, 종교 등'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에 대해 현 구분체계를 수정하 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래 제시된 의견에 대해 수정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개인이나 집단 표기	수정 적절	수정 부적절	모르 겠음
① '성적지향 추가			
② '성별'을 '성'으로 수정			
③ 정신적·신체적 능력 외 '경제적 능력' 추가			
④ '세대'를 '연령'으로 수정			
⑤ '학력'을 '사회적 신분, 고용형태'로 수정			
⑥ '정신적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를 '장애'로 수정			
⑦ 기타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 1-3. '사회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에 대해 여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리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사회적 미풍양속을 침해하는~'이란 표현 사용(수정할 필요 없다)
  - ② 단서조항 문장 삭제
  - ③ '보편적 가치를 침해하는'으로 수정
  - ④ '인권을 침해하는'으로 수정
  - ⑤ '혐오표현 및 차별행위를 하는'으로 수정
  - ⑥ '타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으로 수정
  - ⑦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⑧ 모르겠음
- 2. '제12조 교육'의 제안의견 판단

#### 제12조(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교육)

시장은 <u>(ⓐ)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u>에게 <u>(ⓑ)다음 각 호</u>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 1차 조사결과 주요 의견

'(a)교사, 청소년, 그 밖으로 표현되어 있는 교육대상'에 대한 의견, '(b)각 호로 구성된 교육내용'에 대한 추가 의견, '(c)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대한 의견 등 3가지

2-1.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으로 구성된 교육 대상에 대해 여러 수정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의견에 대해 수정 적절성을 판단 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육대상의 적절성	수정 적절	수정 부적절	모르 겠음
① '시민대상으로 확대'하거나 '시민' 표기 추가			
② '공무원 및 공무직에 종사하는 사람' 표기 추가			
③ '학부모' 표기 추가			
④ 기타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할 사항(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2-2.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항목을 추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가 적절	추가 부적절	모르 겠음
		一 一 一 三	
① 인간의 존엄성에 토대를 둔 교육			
② 문화다양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과 철학교육			
③ 타문화 이해 및 글로벌 러닝 교육			
④ 타인(사회구성원 간) 존중과 교류에 기반한 교육			
⑤ 예술과 접목된 다양성 교육 실행			
⑥ 기타 추가되거나 수정 또는 삭제되어야 할 사항(직접 써주시	기 바랍니	다.)	

- 2-3. '각 호로 제시된 문화다양성 교육 내용' 중 '2호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에 대해 부적절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그대로 사용(수정할 필요 없다)
  - ② 문화다양성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으로 삭제
  - ③ 문화다양성에 적합한 내용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④ 모르겠음

#### 3. '제7조 문화다양성위원회 구성'의 제안의견 판단

#### 제7조(문화다양성위원회) 2, 4항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 1. 문화예술정책·복지정책·장애인복지정책·여성가족정책·외국인다문화정책 업무 등 관계 담당부서 의 장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정책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람
  - 3. 서울특별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

#### 1차 조사결과 주요 의견

당사자 참여확대와 더불어 시민 및 청년의 참여확대, 전문가 참여확대, 관련 부서 참여 확대 등 (@)위원회 구성 변경에 대한 의견 제시

- 3-1. 위원회 구성에 대해 '문화다양성 당사자 계층의 참여', '시민 및 청년·청소년의 참여 확대', '전문가 참여 확대', '담당부서의 참여 확대'등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 시 아래 대상 중 어떤 대상 참여가 우선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순위별로 2순위까지 선택해 주시길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당사자인 소수자 위원 추가(문화소외계층, 여성, 장애인, 이주민 등)
  - ② 시민 및 청년, 청소년
  - ③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참여(문화산업, 인권, 성평등, 시민민주주의, 예술가 등)
  - ④ 다른 분야의 담당부서 참여 및 당연직 확대(지역문화, 생활문화 관련 부서장 참여, 기획담당부서, 교육담당부서, 지역공동체, 도시재생 관련 부서 등)
- 4. '제10조 실태조사'의 제안의견 판단

#### 제10조(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① 시장은 문화다양성을 이루는 문화적 요소,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의식 수준, 문화 향유·창조 활동 등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②)2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한다.
- ② (⑤)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실시한다.
  - 1. 문화다양성 관련 시설 운영 및 현황, 문화다양성 서비스 제공 현황 등 지역사회 내의 문화다양성 환경에 관한 사항
  - 2.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 4. 주요 시책 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 5. 지역의 주요 사업 중 문화다양성과 연관되어 있는 사업에 관한 사항
  - 6.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 1차 조사결과 주요 의견

- (a) '실태조사의 주기' 및 (b) '실태조사 내용'에 대한 의견 제시
- 4-1. 현재 실태조사 주기는 2년마다 실시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태조사 주기에 대하여 1년부터 5년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실태조사 주기를 골라 주시기 바랍니다.
  - ① 1년마다 ② 2년마다(현행 규정) ③ 3년마다 ④ 5년마다
  - ⑤ 기타(이 외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⑥ 모르겠음

# 4-2. 조례에 제시된 실태조사 항목 외 추가조사되어야 할 항목으로 아래와 같은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실태조사 추가 항목에 대해 포함 필요성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실태조사 내용 관련 제안 내용	포함	포함	모르
	필요	불필요	겠음
① 문화다양성 침해사례 조사			
② 문화다양성 우수사례 조사			
③ 시정 내 문화다양성 반영 현황			
④ 문화다양성 관련 사업 참여자 및 대상자 대상 실태조사			
⑤ 문화예술, 문화산업 생태계의 문화다양성 실태			
⑥ 문화유산(문화재)의 보호에 관한 사항			
⑦ 미디어·디지털 환경에서의 문화다양성 실태에 관한 사항			
8 <b>기타(</b> 추가적으로 조사가 필요한 항목이 있다면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5. 문화다양성 관련 서울시 정책의 중요성과 시급성 판단

문화다양성 조례와 관련하여 서울시가 추진해야 할 이행사항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조사한 결과, 아래 표와 같이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의 나의 되었기하다		중요성		시급성	
문화다양성 관련 서울시 정책	평균	순위	평균	순위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4.37	3	4.35	3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4.26	4	4.09	5	
시장소속〈문화다양성 위원회〉설치	4.00	7	3.98	6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 운영	3.74	8	3.67	8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4.26	4	4.13	4	
문화다양성 교육	4.48	2	4.37	2	
문화다양성 인력 양성	4.07	6	3,85	7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공공 및 민간기관 포함)	4.61	1	4.39	1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3.09	9	2.70	9	

#### 5-1. 중요성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한 결과라 판단
- ② 순위조정 필요(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관련 서울시 정책	중요성 순위(1순위~4순위)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시장소속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 운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인력 양성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공공 및 민간기관 포함)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itUte			
	at-	Inst.			
5-2	사급성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적절한 결과라 판단				
	② 순위조정 필요(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관련 서울시 정책	중요성 순위(1순위~4순위)
실행계획 수립·시행(매년)	
문화다양성 실태조사(2년마다)	
시장소속 〈문화다양성 위원회〉 설치	
민간단체, 문화기관 등이 참여하는 〈지역협력체〉운영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	
문화다양성 교육	
문화다양성 인력 양성	
차별행위에 대한 개선 권고(공공 및 민간기관 포함)	
우수 기관에 대한 표창	

#### 11. 문화다양성 개념 및 정책방향

6. 서울형 문화다양성 개념의 적절성 및 제안의견 판단

문화다양성법 제2조는 아래와 같습니다. 현 다양성 정의를 서울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적절하다는 의견이 56.6%, 부적절 의견이 32.3%로 나왔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다양성법 제2조(정의)

"문화다양성"이란 집단과 사회의 문화가 집단과 사회 간 그리고 집단과 사회 내에 전하여지는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것을 말하며, 그 수단과 기법에 관계없이 인류의 문화유산이 표현, 진흥, 전달되는 데에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과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6-1. 귀하는 위의 〈문화다양성법〉상 문화다양성 정의를 서울시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법 정의 그대로 사용(질문 6-3으로 이동)
  - ② 서울시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질문 6-2로 이동)
- 6-2. 다음은 문화다양성 개념을 서울에 맞게 변경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제안된 내용입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개념을 정의할 때 고려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형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고려 필요	고려 불필요	모르 겠음
① 글로벌 도시로서 서울의 특성을 살린 개념 제시 필요			
② 예술에 한정된 범위를 예술외 문화적 표현으로 확산			
③ 개인의 취향 표현 보호를 포괄하는 내용 포함			
④ 소수자 문화권 표현에 대한 내용 명료화			
⑤ 일상생활 문화범위로 확대			
⑥ 그 외 고려해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다.(		)

- 6-3. 응답자 중 한 분이 아래와 같은 정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제안된 정의의 적절성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매우 부적절 ② 부적절 ③ 보통 ④ 적절 ⑤ 매우 적절

#### 서울형 문화다양성 개념 정의

"문화다양성이란 다양한 인종, 민족, 지역, 종교, 성 등을 배경으로 하는 집단 및 사회 구성원이 생산하고, 발달, 전수해 온 문화유산 및 동시대에 생산하고 전수하고 있는 문화들을 표현하고 진흥, 전달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방법의 다양성을 말하며, 이는 예술적 창작, 생산, 보급, 유통, 향유 방식 등에서의 다양성을 포함한다"

#### 7.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의 중요성과 시급성 판단

서울시 문화다양성 추진 방향을 이래 표와 같이 제시한 후 적절성을 질의한 결과, 96%의 응답자가 적절하다는 응답하에 아래 표와 같이 중요성과 시급성의 순위가 나타났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아래 질문에 대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순위	시급성 순위
① 소수자의 권익 보호(불관용/규제 정책)	1	1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2	2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촉진/확산 정책)	4	4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 도모(포용정책)	3	3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5	5

#### 7-1. 중요성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적절한 결과라 판단
- ② 순위조정 필요(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순위 (1순위~5순위)
① 소수자의 권익 보호(불관용/규제 정책)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 (촉진/확산 정책)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 도모(포용정책)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 7-2. 시급성 순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 ① 적절한 결과라 판단
- ② 순위조정 필요(중요성 우선순위를 다시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시 문화다양성 정책방향	중요성 순위 (1순위~5순위)
① 소수자의 권익 보호(불관용/규제 정책)	
②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자기표현권 보호(관용 정책)	
③ (소수성을 가진 개인 및 집단의) 예술창작과 생산, 보급 및 향유의 권리 보호 (촉진/확산 정책)	
④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시민의 이해와 자연스런 융합 도모(포용정책)	
⑤ 문화다양성 관련 지역 및 생태 보전(보존/보호정책)	

#### 8. 서울시 문화다양성 대상 분류체계의 제안의견 판단

정부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체계를 바탕으로 연구진이 서울시에 적합한 문화다양성 분류 체계를 아래 표와 같이 제시하여 적절성을 설문한 결과 84.8%가 적절하다는 응답하에 여 리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다음의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E-100 E-1-1
조아더라 마셨다아서 비교되게
중앙정부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구분	분류영역
	민족
기버 어어	국적
기본 영역 (1차	성별
범주)	장애
	성적지향
	세대
	종교
=174 C4C4	소득
환경 영역 (2차	혼인
(2시 범주)	전통
	지역
	예술취향

# 연구진 의견 서울시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분류영역				
민족·인종				
신체능력(장애)				
종교				
성별				
나이(세대)				
성적지향				
비주류예술 (독립예술, 대안예술 등)				

# 8-1. 위 분류체계에 대해 다음과 같은 세부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추가 항목 의견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문화다양성 분류체계 추가 항목에 대한 의견	추가 적절	추가 부적절	모르 겠음	
① 인종, 민족 외 '국가' 추가				
② 종교 외 '시상' 추가				
③ '소득' 항목 추가				
④ '전통예술' 항목 추가				
⑤ '지역' 항목 추가				
⑥ '다양한 기호와 취향의 차이' 추가				
⑦ 그 외 추가할 항목이나 삭제할 항목이 있으면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8-2. 위 분류체계에 대해 '종교'와 '성별'에 대해 삭제 및 수정 의견이 있었습니다. 아래 제시된 의견에 대해 적절성을 판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서울형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 대한 수정/삭제 의견	적절	부적절	모르 겠음
① '종교'항목 삭제 이유: 유시종교(사이비종교)에 대한 인정문제와 충돌 우려 있음			
② '성별'을 '성'으로 수정 이유: 성별은 남성, 여성을 대변하므로 부적절함			

- 8-3. 위 분류체계 중 '신체능력(장애)'를 △장애, △신체적 차이, △신체적·정신적 차이로 변경하자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신체능력(장애)'로 표기
  - ② "장애·비장애"로 수정
  - ③ "장애"로 수정
  - ④ "신체적 장애"로 수정
  - ⑤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수정
  - ⑥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⑦ 모르겠음

- 8-4. 위 분류체계 중 '비주류 예술' 항목에 대해 '비주류예술로 국한할 필요가 없다', '비주류 예술로 구분 시 용어의 정의와 범주에 대한 정립이 필요하다'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아래 항목 중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 ① 현재대로 '비주류 예술'로 표기
  - ② "비주류 예술" 삭제
  - ③ "비주류 문화"로 수정
  - ④ 그 외 다른 표현으로 수정(수정의견을 직접 써주시기 바랍니다.)
  - ⑤ 모르겠음

#### 9. 문화다양성 집단별 정책 방안

문화다양성 집단별 문화다양성 촉진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질의한 결과 다음과 같이 응답하였습니다. 아래의 표를 보시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명, 중복응답 허용)

					71.10		
정책방안	민족· 인종	신체 능력	종교	성별	ᄕ	성적 지향	바쥬류 예술
1.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	5	12	0	5	14	2	11
2. 관련된 활동이 밀집된 지역 보전 및 육성	10	ne <sub>1</sub>	2	4	5	2	6
3. (예술)활동 촉진 지원사업	13	12	1	8	11	13	26
4. (예술)활동 촉진 인력양성 사업	4	10	3	3	7	4	7
5. 시민 간 교류 및 이해 증진사업	15	9	14	12	12	17	5
6.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시업	19	8	8	6	7	15	11
7.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시업	8	13	13	18	9	17	6
8.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1	22	4	5	8	5	4
9. 기타	4	10	4	4	6	3	5
	79	97	49	65	79	78	81

9-1. 1차 조사결과를 참고하여 각 집단에 우선 필요한 정책을 순위별로 3순위까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방안	민족· 인종	신체 능력	종교	성별	나이	성적 지향	비주류 예술
1.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							
2. 관련된 활동이 밀집된 지역 보전 및 육성							
3. (예술)활동 촉진 지원 사업							
4. (예술)활동 촉진 인력양성 사업							
5. 시민 간 교류 및 이해 증진사업							
6.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사업							
7.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사업							
8.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1	.0	
9. 기타(세부내용: )			9.		viti <sup>U</sup>		

9-2. 문화다양성 분류체계에서 '소득', '전통예술', '지역', '기호와 취향' 등을 추가하자는 의견 이 있었습니다. 이 항목을 추가했을 시 각 대상별로 우선적으로 필요한 정책을 3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책방안	소득	전통 예술	지역	기호· 취향
1. 관련된 시설의 건립이나 운영				
2. 관련된 활동이 밀집된 지역 보전 및 육성				
3. (예술)활동 촉진 지원 사업				
4. (예술)활동 촉진 인력양성 시업				
5. 시민 간 교류 및 이해 증진사업				
6. 소수문화 접촉 기회 확대사업				
7. 시정 내 다양성 보호 증진 반영 시업				
8. 문화다양성을 고려한 도시디자인 및 시설 개선				
9. 기타(세부내용: )				

9-3. 서울시 여건을 고려하여 어떤 대상의 정책이 가장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중 요성과 시급성을 3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대상	중요성 순위 (1~3순위)	시급성 순위 (1~3순위)
민족인종		
장애		
- 종교		
성		
<u></u> 나이		
성적 지향		
비주류 예술		
 소득		
 전통예술		
지역		*6
 기호취향	201	.itUlt
-		- 64

- 9-4. 서울시 다양성 정책을 시행하는 데 있어 우선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업을 2순위까지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1순위: , 2순위: )
  - ① 조례개정
  - ②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 ③ 문화다양성 위원회 등 관련기구 구성
  - ④ 시민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실시
  - ⑤ 다양성 집단 대상 사업 시행
  - ⑥ 기타(사업내용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Abstract**

### Seoul Cultural Diversity Agenda and Policy Direction

Do-Sam Na · Yun-Jung Cho · Jung-Hyun Lee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future directions for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ultural diversity policy. Cultural diversity is a basic principle of 'Cultural Democracy' and it refers to the phenomenon where all class and group cultures are reflected equally in the culture, as opposed to there being one dominant culture. While the n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itially emerged from the process of globalization, in particular during the Uruguay Round, in reality, the term has its roots in the influx of migrants and the expression of 'gender' as well as other forms of self-identity. That is cultural diversity helps create an environment that allows everyone to freely express their personal values and philosophies.

In an effort to embrace cultural diversit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enacted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Ordinance on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in 2017. However, this ordinance contains elements that have the potential to harm, rather than protect, cultural diversity, such as limiting the scope of cultural diversity to 'established social morals and customs'. Hence, through an expert survey, this study examines potential future directions of the policy as well as amendments of the ordinance on cultural diversity. We conclude that the current ordinance should be amended to ensure that cultural diversity is protected and additionally argue for the need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such as forming cultural diversity commissions comprised of target groups of cultural diversity.

This study proposes the policy vision of 'Seoul City of Culture and Citizens, where discrimination based on differences does not exist and differences are respected' and suggests 'City of Culture and Citizens where all citizens are respected' and 'Civic culture that embraces and celebrates people's differences' as policy objectives. To implement this vision, we selected seven target areas including 'disability', 'ethnicity·race·nation', 'gender·sexual orientation', 'age', 'region', 'religion·beliefs', and 'subculture', and set the main policy directions as  $\triangle$ protecting and promoting minority culture,  $\triangle$ creating a civic culture of coexistence, and  $\triangle$ establishing a foundation for cultural diversity policies.



# **Contents**

#### 01 Introduction

- 1\_Background and Objective of the Study
- 2 Main Content and Research Methods

#### 02 Concept and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 1\_Emergence and Development of Cultural Diversity
- eoul Institute 2 Concept of Cultural Diversity and Policy Areas

#### 03 Current State of Cultural Diversity Policies

- 1 Legal Foundation of Cultural Diversity
- 2\_Status of Governmental Cultural Diversity Projects
- 3\_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ultural Diversity Policies

# 04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Cultural Diversity Agenda and Policy Development

- 1\_Expert Forum
- 2\_Delphi Survey Results

# 05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Policy Agenda for the Protection and Promotion of Cultural Diversity

- 1\_Basic Direction and Vision
- 2\_Main Tasks and Action Plan

서울연 2017-PR-52

서울시 문화다양성 의제와 정책방안

**발행인** \_ 서왕진

**발행일** \_ 2018년 8월 26일

**발행처** \_ 서울연구원

ISBN 979-11-5700-394-5 93300 10,000워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본 출판물의 판권은 서울연구원에 속합니다.